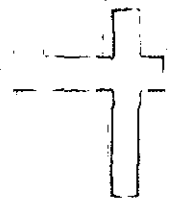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 **현안분석**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OECD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논의

● **정책연구**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자원조정에 관한 연구 외

● **정책토론포트**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 **정책흐름**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 부총리 발표문 외

●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

C O N T E N T S

권두칼럼

ㄹ 조세의 날 그리고 조세와 하루 /노영훈

현안분석

ㄴ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 정부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장근호

ㄷ OECD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논의 /홍범교

정책연구

ㄹ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 재원조정에 관한 연구 /박정수

ㄹ 소유구조와 자본구조의 관계 /김건우

ㄹ 조세혜택으로 인한 내재적 조세의 실증연구 /이준규·이태희

정책토론포트

ㄹ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정영현·전영준

정책흐름

ㄹ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 부총리 발표문

ㄹ 19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ㄹ 199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ㄹ 1996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

재정통계

ㄹ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

조세의 날(Tax Day) 그리고 조세와 하루(Taxes in a Day)

노영훈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지난 3월 3일은 우리나라의 제31회 '조세의 날'이었다. 세무관서 앞에는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붙었으며,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자 및 세무관련 우수 공무원에 대한 훈·포장 및 표창이 있었다. 우리나라든 어느 나라든 일반국민 눈에 비춰진 조세의 날이 갖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하고 한번 생각해 본다. 아마 한 국가의 국민들이 조세에 대해 갖는 이해 및 견해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을 것이고, 이는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의 영향을 받아 오랜 기간 형성되어 왔을 것이다.

영국의 장상인 찰스 타운센드가 식민지시대에 미국 내에 반입되는 모든 차에 대해 조세(duty)를 부과하였을 때, 당시 영국의 대중 정치인이었던 에드먼드 버크는 "(그는) 모든 사람들을 두루 즐겁게 하는 것이 평생의 목적이었지만, 세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즐겁게 한다는 것은 마치 사랑하면서 우둔해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처럼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미국의 독립전쟁 중 대표적인 구호인 "대표 없이는 과세도 없다"라는 표현과 함께, 미국이라는 국가의 성립과정에서부터 조세가 수행한 역할 및 이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잘 나타내 주는 말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미국에서의 조세의 날(Tax Day)은 연방소득세 신고 마감일인 4월 15일이다. 미국 국세청이나 재무성의 기념식행사가 언론의 각광을 받는 날이 아니고, 시민단체나 조세협회(Tax Foundation)가 미정부(Uncle Sam)가 얼마만큼 세금을 거두어 어떻게 지출하고 있는지에 대해 납세자들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군중집회를 여는

날인 것이다. 물론 대부분의 일반납세자들은 마감시한에 쫓겨 세무대리인을 방문하거나 세무계산프로그램을 수행하는 PC 앞에 앉아 있기도 한다.

이날 조세협회는 우리나라 국민의 시각에서 보면 매우 흥미로운 수치를 매년 발표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일간지인 월스트리트 저널의 올해 보도기사를 보자.

"미국의 평균적인 근로자는 올해 하루 8시

간의 근무시간 중 약 2시간 47분은 모든 종류의 세금을 납부하는데 필요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한다. 미국인은 음식비, 의류비, 주거비를 모두 합한 것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세금으로 납부한다……"

미국조세협회의 이러한 발표는 우리나라에서는 조세 부담률이라는 용어로 국민들에게 알려져 있다. 동 협회가 이러한 통계자료를 왜 하필이면 연방소득세 신고서 발송 마감일인 4월 15일에 공개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동 협회의 발표는 미국의 여러 조세들 중 세수 비중이 3분의 1 정도인 연방소득세가 주된 문제의 대상이라는 인식을 일반국민에게 줄 수 있으므로 잘못되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또한 동 협회가 평균(average)의 개념을 사용했는데, 미국의 대표적인(typical) 납세자의 소득액과 납세액을 잡으려면 중위치(median) 개념을 사용해야 했다고 비판받기도 한다.

필자가 지적하고 싶은 점은 미국조세협회가 발표하는 수치의 적정성이나 정확성의 문제가 아니다. 조세의 날이 소득세 신고납부 마감일 당일이라는 것, 이날 동 협회가 발표하는 수치가 조세를 바라보는 미국 일반국민의 입장에서 보다 쉽게 이해가 되도록 발표하는 표현

국가의 살림살이를 구성하는 큰 부분인 조세를 적정하게 내는지, 세금을 내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부과된 세금은 제대로 거두어지는지,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을 챙기는 일이 어찌 세계·세정당국 및 국회의원들만의 몫이겠는가.

방법인 것이다. 즉 조세에 관한 한 1년중 가장 관심을 가져야 할 신고·납부 마감일을 즈음하여, 9시에 출근한 근로자가 11시 47분까지는 세금납부를 위해 일하고 그 이후부터의 수입이 자기 수중에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알리는 조세의 일상생활화된 모습인 것이다.

국민이 낸 조세로 운영되는 한국조세연구원에서 월급을 받으며 조세분야를 연구하는 필자는 조세의 날이 3월 며칠인지를 항상 기억하지는 못한다. 반면 유행기간중 조세분야만을 연구한 것도 세금을 특별히 많이 낸 것도 아니었지만, 매년 4월 15일 자정 12시까지는 연방소득세 신고서를 우체국에 보내야 한다는 것은 항상 기억하고 있었다. 그렇다. 조세의 생활화인 것이다. 싫든 좋은 납세는 국민의 의무요 권리이며, 연초가 되면 지난해 귀속소득을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라는 안내서와 신고서가 집으로 배달되며 4월 15일까지는 이를 마쳐야 한다는 세무달력이 국민들의 머리에 자인되어 있는 것이다. 국가의 살림살이를 구성하는 큰 부분인 조세를 적정하게 내는지, 세금을 내면서 불편한 점은 없는지, 부과된 세금은 제대로 거두어지는지, 거둔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는지 등을 챙기는 일이 어찌 세계·세정당국 및 국회의원들만의 몫이겠는가.

세금문제에 관한 한 뾰뚱하게 바른 소리를 낼 수 있는 납세자들이 많이 나와, 다른 국민들도 세금에 대해 보다 더 관심을 갖도록 시민단체 활동에 참가해 주기를 기대해 본다. 너무 지나친 기대일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낸 세금을 생각해 보자.

07시 : 이 닦고 세수한다. 치약과 비누에는 부가가치세가 10% 부과되어 있다.

08시 : 자동차로 출근한다. 매일 시동도 걸기 전에 면허세와 자동차세로 1,670원을 내며, 차값에 포함된 특소세·교육세·부기세와 취득시 납부한 등록세·취득세를 5년으로 나누어 매일 2,280원, 운전중 사용하는 휘발유 특소세로 1,760원, 총 5,710원 이상을 매일 내고 있다.

09시 : 책상 앞에서 첫 커피를 마시며 담배에 불을 붙인다. 커피에는 20%, 설탕에는 10%의 특소세가 그리고 담배에는 갑당 460원의 담배소비세가 붙어 있다.

정오 : 점심으로 칼국수를 먹는다. 이 식당은 파특자인지 일반파특자인지 모르지만, 지불한 식대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는 내고 있는지?

14시 : 월급봉투를 전해 받는다. 근로소득세와 주민세로 오늘도 4,500원을 납부했구나.

22시 : 퇴근하며 직장 동료와 술 한잔. 소주는 주세율 35%와 주세액의 10%인 교육세를 내니 그래도 조금 절세를 했는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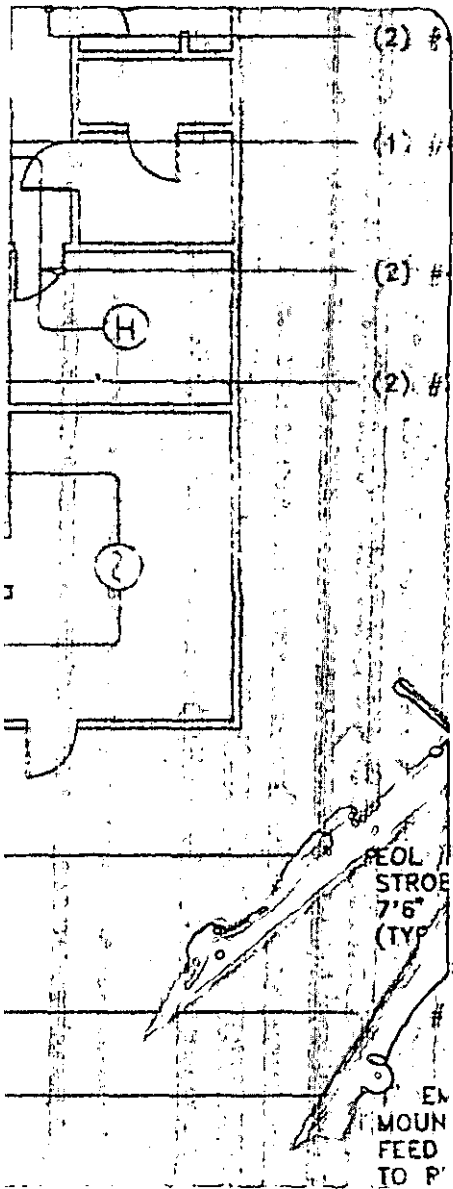
23시 30분 : 귀가. 아파트 살 때 낸 취득세·등록세를 10년간 분할해 매일 1,100원을, 매년 내는 재산세·종토세 등으로 매일 600원을 내니 오늘도 1,700원은 이 집과 관련하여 내고 있구나.

24시 : 세금부담에 지쳐 쉬고 싶은 마음에 TV를 보는데, 구입시 낸 15%의 특소세는 얼마였더라?

01시 30분 : 지면서 꿈을 꾸다. '나는 오늘 아침 출근하여 과연 몇 시까지 세금납부를 위해 일을 했나? 근무시간이 많으니 점심시간 이후까지일까?' **다**

1) To please universally was the object of his life, but to tax and please, no more than to love and be wise, is not given to men - Edmund Burke(1776)

현안분석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 정부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 장근호

OECD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논의 / 홍범교

EX
MOUN
FEED
TO P'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 정부역할에 관한 실증분석 -

장 근 호 /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서론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선진국들에서 국제무역기구(WTO)의 부패라운드를 통하여 비리를 규제하자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부정부패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작년 말 『아시안 월스트리트 저널』은 독일 괴팅겐(Goettingen)대학교와 국제투명성사회(Transparency International)가 조사한 국가별 청렴도를 소개하면서 비리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여러 경제학자들의 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¹⁾.

부정부패에 대한 국내 여론의 부정적 시각은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은 비리가 사회 전반에 만연된 문제이며 이의 척결이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²⁾. 부정부패에 관한 국민적 관심은 한보사태 이후 절정으로 치달고 있어 앞으로 비리가 발생하게 되는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부패방지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우리 사회 내에서 폭넓게 전개될 전망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신임 총리도 비리의 원천으로서 정부규제를 지목하면서 “과도한 규제가 특혜를 낳고 부패의 온상이 되며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주

1) "Does Corruption Stunt Growth?,"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6. 10. 22.

2) 「부정부패」, 『한국경제신문』, 1996. 11. 22.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장한 바 있다³⁾.

규제완화와 부패근절에 관한 논의는 갈수록 심화되는 무역적자와 고비용-저효율구조 그리고 WTO 체제 출범 등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보다 건실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논의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화두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듯 정부규제 또는 부정부패가 국내외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데 비하여 규제와 비리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일천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본고는 각종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1차자료를 이용하여 정부운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명한다. 구체적으로는 신발전론(new development theory)에 의거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정부예산이나 보조금, 이전지출과 같은 양적 정부규모뿐만 아니라 관료주의와 같은 질적 정부운영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 밖에도 소득수준, 관료주의(bureaucracy) 그리고 정부지출 등이 부정부패에 미치는 영향, 즉 부패도의 내생성(endogeneity)에 대하여 검토한다. 본고는 특히 예산지출과 정부규제가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에 어떠한 '상대적'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분석을 통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본고는 경제성장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거시적으로 규명하고 정부운영에 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는 정부정책이 아직까지 우리나라 경제의 큰 흐름을 결정짓고 있고 따라서 건실한 성장을 위해서는 건전한 정부운영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Ⅱ. 정부운영과 국가별 청렴도

1.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문제점: 국제적 인식

가. 우리나라 정부부문의 평가

정부운영에 관한 실증분석에 앞서서 우리나라 정부의 효율성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간략하게나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물론 국제 민간연구기관이 작성한 경쟁력 평가는 자의적일 수 있고 그 작성방법도 비과학적일 수 있다⁴⁾.

규제완화와 부패근절에 관한 논의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개혁논의와 함께 우리 사회 전반의 화두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3) 『한겨레신문』, 1997. 3. 5.

4) 국제보고서의 문제점은 『재정포럼』 1997년 3월호 「우리나라 국가경쟁력과 정부운영」에서 자세히 검토하였다.

WEF와 IMD는 우리나라 재정정책과 정부지출 규모를 우수하게 평가한 반면 정부개입과 관료주의에 있어서는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큰 흐름을 조명하고 외국의 정부운영과 차이점을 비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국제적 평가는 나름대로 의의가 있다.

〈표 1〉과 〈표 2〉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WEF)과 국제경영연구원(International Institute for Management Development: IMD)이 작성한 우리나라 정부의 평가요인과 그 순위를 인용하고 있다. WEF는 우리나라 정부운영을 9위로 평가하였다. 반면 IMD에서는 그 순위가 18위(1995년)에서 33위(1996년)로 급락하여 IMD와 WEF간의 정부효율성에 대한 평가기준의 상이성이 돋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 기관이 우리나라 정부운영에 있어서 평가한 내용은

〈표 1〉 WEF: 우리나라 정부의 경쟁력 결정요인과 그 순위(1996)

종합순위	정부규모	재정정책	조세정책	정부개입도	관료주의
9	8	7	8	42	29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유사하다. 즉 WEF와 IMD는 우리나라 재정정책과 정부지출 규모를 우수하게 평가하였고, IMD는 국채부문에서 WEF는 조세정책에서 우리나라가 경쟁력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개입과 관료주의(투명성)에 있어서는 두 기관 모두 우리나라의 경쟁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정부 개입도는 평가 대상국 가운데 하위권으로 분류되어 규제완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에서도 IMD는 우리나라 정부개입이 평가 대상 46개국 중에서 가장 열악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2〉 IMD: 우리나라 정부의 경쟁력 결정요인과 그 순위(1996)

종합순위	국채	정부지출	정부의 경제개입도	정책효율성과 투명성	재정정책	사회·정치적 안정성
33	7	13	46	38	9	31

자료: International Management Development Institute, *The World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이렇듯 WEF와 IMD가 우리나라 정부의 효율성에 있어서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질적 개선이다. 즉 양적인 측면에서의 우수성에 비하여 민간경제에 대한 정부간섭, 관료주의, 정책의 투명성 등 정부운영의 실질적 내용에서는 아직 우리가 매우 열악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⁵⁾.

이러한 평가는 다른 국제보고서인 『경제적 자유(Economic Freedom)』나 『유러머니(Euromoney)』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부규제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그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시급한 과제라 하겠다.

나.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세부적 평가

IMD가 평가한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요인별 장·단점을 살펴보면 정부지출(9위), 국제(9위), 재정수지(11위) 등 예산 및 조세정책이 장점으로 나타나고 기업환경(46위), 물가통제(45위), 노동시장의 탄력성(41위)과 독과점정책(40위)이 취약점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평가는 WEF에서도 마찬가지로, 일반 정부지출과 재정수지(7위), 공공저축(5위)이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상위를 차지하고 있으나 경쟁촉진정책(36위), 물가간섭(46위), 민간투자정책(44위)에서는 하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가 자신의 고유영역인 재정부문에서는 절제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반면에 노동시장과 제품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하고 시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모습은 부족하다는 인식이 국제사회에 널리 유포되어 있는 것이다. 정부의 경쟁촉진정책이 부실하다는 국제기관의 주장은 매우 중요한 지적이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WTO와 OECD 가입과 함께 갈수록 첨예화되는 무역경쟁에서 우리나라가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경쟁촉진정책을 통하여 현재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타파하고 국내산업의 효율성을 배양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중인 국가경쟁력 10% 강화운동이나 금리 1% 인하와 같은 정책운용은 고지가, 고금리 등 산적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치유책이 될 수 없다.

단순히 고비용을 억제하고자 하는 정책은 장기적으로 또 다른 경제적 왜곡을 조장하기 때문이다. 지금 정책담당자에게 요구되는 국가정책이란 고비용 경제구조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조망하고 이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을 마련하

우리나라 경제발전을 위해 시급한 과제는 정부규제 등에 대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5) 평가내용의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두 기관의 종합적 평가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IMD가 정부규제 등에 대한 가중치를 WEF에 비하여 높게 설정하였기 때문이다.

문제는 치열한
무역경쟁이나
고비용구조가 아니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운영의 유연성이다.

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그리고 이러한 개선책의 기본방향은 시장이 자원배분을 결정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다. 경쟁적 시장체제의 확립이 야말로 생산활동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최근 노동법 개정과 한보사태를 둘러싼 논란에서 우려되는 것은 이러한 일련의 사태 그 자체보다도 여기에서 표출된 국가운영의 미숙함이다. 노동법 개정과 한보문제에 따른 경제적 피해는 경제학적으로 풀이하면 일순간적인 충격(one-time shock)이므로 이는 우리 경제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다. 하지만 IMD가 지적한 바와 같이 정부의 투명성(36위)과 정치제도의 선진화(41위)가 결핍되어 있는 상황에서 경제논리에 기초한 제도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곡된 경제구조가 고착화될 것이며 궁극적으로 성장의 감퇴를 피할 수 없다.

환언하면 문제는 치열한 무역경쟁이나 고비용구조가 아니라 이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운영의 유연성이다. 난관에 직면하였을 때 이를 숙지하고 합리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제도의 성숙함이 없이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기대하기에는 우리 경제가 이미 너무 많이 국제화되어 버렸다. 국가경쟁력이라는 개념을 굳이 정의한다면 노동법이나 한보사태와 같은 국가적 난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고 이의 재발을 방지하는 장치를 도입할 수 있는 정치·사회제도의 탄력성이 아닌가 한다.

Ⅲ. 경제성장과 정부운영: 실증분석

1. 부정부패와 경제성장

가. 국가별 청렴도

우리나라 정부운영에 대한 상기의 논의를 바탕으로 국제투명성사회가 조사한 국가별 청렴(부패)지수와 소득수준 및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국제투명성사회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청렴도에 있어서 27위를 차지하고 있다(부패도는 반대로 계산하여 28위). 뉴질랜드는 1980년대 중반의 정부개혁으로 1위를 차지하였고 일본·미국은 각각 17위와 15위를 차지하고 있다. <표 3>을 살펴보면 부패하지 않은 나라일수록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는데

〈표 3〉 주요국가의 청렴도와 관료주의 순위 및 기타 경제지표

(단위 : 달러, %)

	청렴도	관료주의	1인당 GDP(1995)	1인당 실질GDP 평균성장률 (1990~1995)
싱가포르	7 (8.80)	4 (4.52)	26,110	6.61
홍콩	18 (7.01)	3 (4.60)	24,436	4.48
뉴질랜드	1 (9.43)	2 (4.78)	16,627	1.30
미국	15 (7.66)	21 (2.79)	27,532	0.80
룩셈부르크	- (-)	1 (5.00)	48,259	4.56
스위스	8 (8.76)	9 (3.70)	42,968	-0.91
노르웨이	6 (8.87)	5 (4.04)	33,548	3.03
캐나다	5 (8.96)	13 (3.29)	19,354	0.39
대만	29 (4.98)	15 (3.25)	12,192	5.78
말레이시아	26 (5.32)	16 (3.23)	4,211	6.31
호주	10 (8.60)	11 (3.31)	19,036	1.26
일본	17 (7.05)	35 (2.34)	40,830	1.01
태국	37 (3.33)	19 (2.94)	2,797	7.10
영국	12 (8.44)	12 (3.30)	18,983	0.80
한국	27 (5.02)	32 (2.43)	9,995	6.42
독일	13 (8.27)	22 (2.61)	29,504	1.59
프랑스	19 (6.96)	29 (2.51)	26,980	0.75
인도네시아	45 (2.65)	39 (2.12)	1,024	6.03
필리핀	44 (2.69)	44 (1.86)	1,097	0.17
스페인	32 (4.31)	34 (2.36)	14,345	1.15
멕시코	38 (3.30)	46 (1.74)	2,541	-1.24
중국	50 (2.43)	48 (1.57)	553.8	10.45
이탈리아	34 (3.42)	45 (1.77)	19,372	1.53
인도	46 (2.63)	40 (2.03)	346	2.20
브라질	40 (2.96)	32 (2.43)	4,079	0.78
러시아	47 (2.58)	47 (1.59)	2,749	-12.67

부패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생산자가
시장에서 버젓이 생존
하면 시장의 가격조절
기능이 마비되어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파괴된다.

주: 1. 관료주의 지수는 WEF자료에 의거한 순위임.

2. () 안의 수치는 지수로서 그 수치가 클수록 청렴하고 덜 관료주의적인 국가임.

자료: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6, 10, 22.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정부규제로 발생하는 특권은 열린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일시불로 배분되지 않으므로 비리가 시장기능을 수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청렴도와 1인당 국내총생산의 상관관계를 보면 그 상관계수가 0.80에 이른다.

이를 두고 한 국내 여론은 개도국이 경제발전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도한 바 있다⁶⁾. 부정부패의 폐해를 강조하는 논자들은, 부패를 통하여 비효율적인 생산자가 시장에서 버젓이 생존하면 시장의 가격조절기능이 마비되어 시장경제의 효율성이 파괴된다고 주장한다. 또한 경제주체들은 지대추구(rent seeking)를 위한 정치적 투자에 몰두하게 되고 거래비용(transaction cost)이 증가하여 자원이 낭비될 수 있다. 이러한 비용은 사회 전체적 입장에서는 비효율적인 낭비이므로 비리는 경제발전을 저해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더욱이 부정부패는 개인의 창조성이나 노동 의욕을 감퇴시키게 되고 사회구성원간의 신뢰성을 저하시켜 대외경쟁력을 감소시킨다고 단언한다.

이와 반대로 소득이 높은 국가에서 부패가 적은 현상은 이들 국가의 경제·사회제도가 정착됨으로써 나타나는 '부산물' 일 뿐이며 부패가 저개발국가에서 '경제활동의 윤택'적인 기능을 할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⁷⁾. 즉 각종 사회·경제제도가 완성되지 않은 저개발국가에는 필연적으로 자의적인 정부규제 또는 관료주의가 존재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정책운용에 있어서 자의성이 개재된 상황에서는 적당한 부패가 가격의 자원배분기능을 대체함으로써 총생산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 예로서 동사무소의 민원서비스가 선착순으로 제공되고 이를 대리하여 받을 수 없다고 가정하자. 서비스 대상자인 주민들 가운데는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도 있다. 만약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이 매수를 통하여 빨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면 시간의 기회비용이 높은 사람은 다른 생산활동에 투입될 수 있으므로 총생산은 증대될 것이다⁸⁾. 이러한 의미에서 매수는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수료 역할을 수행하고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촉진한다고 할 수 있다(Lui, 1985).

이론적인 측면에서 볼 때 특혜가 시장에서 경매될 수 있다면 기회비용이 가장 큰 사람이 특권을 향유하게 되어 자원배분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부패가 엄정하게 이러한 시장기능을 수행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시 말하면 면허권 따위의 정부규제로 발생하는 특권이 현실적으로 열린

6) 「뇌물 많은 나라 경제도 엉망」, 『한국경제신문』, 1996. 10. 24.

7) "Does Corruption Stunt Growth?,"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6. 10. 22.

8) 여기서 민원처리를 위하여 여러 명의 동사무소 직원이 있거나 일을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주민이 줄을 서서 기다릴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러한 동사무소의 효율성이나 설비의 충분함이 선진사회에서 비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의 완숙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시장에서 경매를 통한 일시불(lump sum)로 배분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특혜는 학연·지연·혈연 등으로 연결된 폐쇄적인 집단 내에서 배분되기 쉽다. 그 이유는 특권의 시혜자와 수혜자가 특혜로 발생한 접촉 이외의 지속적이고도 구속적인(binding)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면 비리가 사후 폭로될 가능성이 낮고 따라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한 비용이 상대적으로 작을 것이기 때문이다.

비리가 성장에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특혜의 많은 부분이 비생산적인 정치적 투자로 낭비되고 시장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도 정부규제와 특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또한 비리가 사회적으로 횡행하면 생산활동을 통한 이윤추구보다는 지대추구에 국가자원이 동원된다는 점에서도 부정부패는 효율성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상기의 논의에 따르면 비리가 경제성장을 증진할 수 있는가에 대한 해답은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들 변수들의 상관관계는 실증적 분석을 통하여 검증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 절에서는 부패의 내생성을 살펴보고 부패와 관료주의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다.

나. 청렴도와 경제성장: 단순 상관관계

부정부패는 소득수준과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실제로 소득이 높은 나라에서는 사회제도와 시장기능에 의한 자원분배가 확립되어 있으므로 독직이나 청탁이 성립하기 어렵다. 그러나 경제성장률과 부패도는 앞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그 관계가 매우 모호하여 자료분석을 통하여 검증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성장률과 청렴도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소득수준과 부패도의 관계를 검토하는 것보다 더 경제적인 의미가 있다. 왜냐하면 소득수준이 지속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성장률이 높아야 하기 때문이다.

청렴지수와 각종 지수의 상관관계는 <표 4>에 나타나 있는데 이 표에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경제성장률과 부패도의 상관계수가 -0.03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두 변수는 서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결론은 물론 성장률 결정요인들을 감안한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표 4>에 의하면 청렴도와 IMD와 WEF가 발표하는 국가별 경쟁력지수의 상관관계도 매우 밀접하여 청렴한 나라일수록 경쟁력도

특혜의 많은 부분은 비생산적인 정치적 투자로 낭비되고 시장제도의 도입을 위한 제반 여건이 조성된 이후에도 정부규제와 특혜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부정부패와 소득수준은 강한 것으로 나타난다.

부(-)의 상관관계에 있으나 경제성장률과 부패도는 관계가 모호하여 자료분석을 통하여 검증해야 한다.

〈표 4〉 청렴지수와 경쟁력지수, 1인당 국내총생산, 경제성장률과의 상관관계

	1인당 GDP	경제성장률	WEF	IMD	Economic Freedom
청렴지수	0.80	-0.03	0.73	0.77	0.47

주: IMD에서의 경쟁력지수는 지수순위(ranking)를 의미함.

〈표 5〉는 성장률과 부패도와와의 연관성에 대하여 단순한 일반최소자승식(ordinary least square method)을 적용한 분석결과이다. 이 표의 첫번째 열은 청렴도와 1인당 국내총생산(소득수준)과의 상관관계를 추정한 결과로 부유한 나라일수록 청렴하고 모형의 설명력(R^2)에서 보듯이 소득이 청렴도의 상당 부분을 설명한다.

두번째 열은 성장률에 대하여 청렴(부패)도와 1인당 GDP로 설명하는 모형인데 기존 연구결과와 같이 1인당 국내총생산이 높은 나라는 성장률이 낮다. 본절의 주된 관심은 부패가 적은 나라가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는가인데 청렴지수가 높은(부패가 적은) 나라가 성장속도가 빠르기는 하지만 이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 모형의 설명력도 낮은 편이다.

〈표 5〉 경제성장률과 청렴도의 상관관계 추정

	청렴지수	성장률	성장률
상수	3.76(11.90)	1.55(1.42)	-0.19(-0.15)
청렴도지수	-	0.25(1.02)	-
(비)관료주의 지수	-	-	1.15(2.33)
1인당 GDP	0.0002(9.05)	-0.0001(-1.90)	-0.0001(-2.79)
R^2	0.64	0.09	0.17
표본수	46	46	46

주: 1. 종속변수인 성장률은 1990~1995년 실질평균 1인당 GDP 성장률이고 1인당 GDP는 1990년 값이며 관료주의는 WEF 설문조사자료로 수치가 높을수록 비관료적인 사회임.

2. () 안의 수치는 t값임.

자료: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6. 10. 22.

부패가 경제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가정하에서 청렴도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이유를 추측하면 다음과 같다⁹⁾. 우선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모형에서 사용된 청렴도에 관한 수치는 같은 설명변수인 1인당 GDP와 0.80이라는 높은 상관관계에 있다. 따라서 변수간의 다중선형성(multicollinearity)은 추정의 偏倚(estimation bias)를 유발할 수밖에 없다. 두번째로 <표 5>에서 사용된 추정모형은 R^2 의 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완전한 모형이 아니므로 추정식의 偏倚(specifica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청렴도는 소득 이외에 여러 경제·사회요인의 내생변수(endogenous variable)로서 모형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부패도의 내생성이나 모형설정(model specification)에 관한 문제는 여러 설명변수를 포함하는 이단계 최소자승식(two stage 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우선 이단계 최소자승식을 이용한 결과를 살펴보면 추정계수의 유의도는 약간 증가하지만 통계적인 의미는 없다. 따라서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설명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이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다중선형성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므로 '리지' 회귀분석(Ridge Regression)과 같은 모형의 교정을 요한다.

본고에서는 이 밖에도 부패도를 결정짓는 요인(들)을 검토한 이후 이를 대변수(instrumental variable)로 하여 부패지수 대신에 통계모형에 포함시켜 보았다. 이는 부패와 관련 있는 요인이 부패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관계를 검토함에 있어서 특히 비리와 관련 있는 요인은 관료주의이다. 왜냐하면 완전한 시장체제하에서는 가격이 균형상태에 있으므로 경제적 지대(economic rent)가 발생할 수 없고 정부규제나 간섭으로 인한 시장왜곡이 존재할 때 지대와 비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부정부패를 은폐하고 특권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많은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관료주의가 부정의 원인이자 결과로 나타나고 이들이 서로 작용하여 확대재생산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는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의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료주의는 비리에 직접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부

부정부패를 은폐하기 위해서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만들 필요가 있으므로 관료주의와 부정부패의 상관관계는 매우 높다.

9) 본고에서는 국제투명성사회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도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라고 가정한다.

부정부패 척결이 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요불가결한 과제라면 부패도의 내생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패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이를 검증하여 볼 필요가 있다.

〈표 5〉의 세번째 열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WEF 보고서에 수록된 관료주의 자료를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다¹⁰⁾. WEF 자료는 관료주의가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는지를 설문조사한 것으로 그 수치가 높을수록 비관료주의적인 국가이다. 중요국가의 관료주의의 지수는 〈표 3〉에 나타나 있는데 1인당 GDP와의 상관계수가 0.54로서 청렴지수(0.80)에 비하여 소득수준과의 상관관계가 낮다. 반면에 청렴지수와의 상관계수는 0.71에 달하여 부패도를 대리하는 변수로 상당히 유효하다.

분석결과는 〈표 5〉에서 알 수 있듯이 비관료주의적인 사회일수록 그리고 1인당 GDP가 낮을수록 경제성장이 빠르다. 두 설명변수가 청렴지수모형에 비하여 통계적 유의성도 높고 모형의 설명력(R²)도 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 절에서 관료주의와 부패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다중회귀분석하는데 그 전에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정부운영의 개선 방향을 모색한다.

다. 부정부패와 정부운영: 회귀분석

정부운영이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기에 앞서서 부정부패 척결이 경제 및 사회발전에 필요불가결한 과제라면 부패도의 내생성에 대하여 면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투명성사회가 발표한 국가별 청렴지수를 종속변수로 하고 부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독립변수를 사용하여 청렴도의 내생성을 검토하였다. 회귀분석모형을 식으로 표시하면 아래의 식 (1)과 같은데 여기서 Z_i는 국가별 청렴도를 의미하고, 설명변수 X_i는 WEF가 조사한 관료주의의 지수와 세계은행 등 각종 국제연구기관이 공표한 국가별 정부소비비율, 교육 및 소득수준과 보조금비율을 포함한다.

$$Z_i = \alpha + \beta X_i + \epsilon_i \quad (1)$$

〈표 6〉은 식 (1)의 회귀분석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정부가 덜 관료주의적일수록 부패도가 낮으며 추정계수도 통계적으로 매우

10) 〈표 3〉에 나타나 있듯이 WEF에 따르면 관료주의는 홍콩(3위), 대만(15위), 미국(21위), 한국(32위), 일본(35위), 중국(48위) 순으로 심하게 나타난다. 한편 IMD에서의 관료주의 순위는 홍콩(2위), 미국(15위), 대만(16위), 한국(33위), 일본(36위), 중국(46위) 등으로 WEF 순위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그 상관계수가 0.96에 달한다.

유의하다. 따라서 각종 규제나 관료주의가 횡행하는 나라일수록 공직자의 비리도 심각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데 그 인과관계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상호적일 수 있다. 즉 비리를 존속시키기 위해서는 정부규제를 유지 또는 강화하여 기업들로부터 로비대상이 되어야 한다. 예상대로 소득 및 교육수준과 청렴도는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며 R^2 도 0.81에 달하여 국가별 청렴성 변화의 상당 부분을 위의 5개 변수가 설명한다.

정부가 국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심하지는 않으며 소득과 관료주의가 통제되면 정부지출과 청렴도는 정(+)의 관계에 있게 된다.

〈표 6〉 청렴지수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상수	-1.26(-1.45)
(비)관료주의	1.02(4.11)
정부소비지출/GDP	0.09(2.46)
보조금·이전지출/GDP	-0.002(-0.08)
교육수준	0.29(2.65)
1인당 GDP(1990)	0.0001(3.64)
R^2	0.81
표본수	46

주: 1. 변수 관료주의의 수치가 높을수록 비관료적인 사회이며 교육수준은 초·중등 평균 교육연수임.

2. () 안의 수치는 t값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199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본 실증분석에서 특기할 점은 다른 요인이 일정할 경우, 국내총생산에서 정부가 소비하는 비중과 부정부패가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관측이다. 즉 정부가 국내 경제에서 외양적으로 차지하는 비율이 크다고 해서 부정부패가 심하지는 않다. 오히려 소득과 관료주의가 통제되면 정부지출과 청렴도는 정(+)의 관계에 있게 된다. 다만 정부지출 가운데 보조금이나 이전지출과 같이 비교적 비경직적인 정부예산이 늘어나면 부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보조금과 이전지출비율(GDP 대비)을 추정식에 포함하였는데 이의 추정계수가 양의 부호를 나타내고 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이전 재정이 많으면 부패가 심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관료주의를 통제하면 정부소비규모가 부패도와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것

관료주의는 자원배분의 비효율성, 경제주체의 성장욕구 저하를 초래하므로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된다.

으로 나타난다는 점은 매우 흥미로운 사실로, 이는 부패가 적은 사회일수록 정부가 경제에서 차지하는 외양적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만약 정부가 국가 경제에 관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 정책수단으로서 국회나 여론의 감시를 받는 예산집행이 이용된다면 부패의 소지가 그만큼 적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정부규모가 제어된 상황에서는 관료주의와 청렴도는 부(-)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정부가 경제를 통제함에 있어서 재정정책 대신 규제와 같은 관료주의적인 수단이 사용될 경우 필연적으로 정부관리의 자의성이 정책에 개재되어 비리가 유발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대외적으로 드러나는 정부예산 이외에 관료주의를 통한 경제개입을 감안하여야 정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위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이론적으로는 제도의 미비로 야기될 수 있는 정부규제가 비리를 유발하게 마련이지만 비리 자체의 가격기능으로 인하여 경제의 효율성이 증진될 수 있다. 그러나 비리가 지연이나 학연 등 폐쇄적인 시장에서 독과점형태로 매매된다면 부정부패의 시장기능은 마비되게 마련이다. 이때 발생하는 경제·사회적 폐해는 정부예산을 통한 간접적인 규제보다 더욱 심각할 수 있다. 왜냐하면 정부예산을 통한 경제개입은 최소한 시장의 자율적 가격조정기능을 유지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관료주의는 비리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정부규제나 간섭이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부패를 통하여 경제주체의 성장욕구를 저하시키고 지대추구의 동기를 부여한다면 더욱 그러하다. 관료주의가 실제로 경제성장을 감퇴시키는가에 대한 결론은 물론 실증분석을 거쳐야 할 문제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관료주의와 청렴도가 경제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토하는데 그 결과는 이제까지의 추론을 대체적으로 뒷받침한다.

위의 논의를 종합하면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정부예산과 같은 양적 정부규모의 팽창을 통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필요한 것은 관료주의를 통한 음성적인 정부간섭의 배제이다. 이는 정부규제의 경우 그 규모나 해악을 예측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자의적으로 집행될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

문이다. 그러므로 정부가 민간경제에 관여할 필요가 있는 부문은 행정간섭이나 규제보다는 비교적 객관성을 떨 수 있는 재정이나 조세정책으로 양성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있어서 매우 시급한 것은, 무조건적인 예산 또는 정부인원의 감축이 아니라 다양한 정부규제 중 정부개입이 필요한 부문은 예산이나 조세정책으로 편입하고 그외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일이다¹¹⁾. 정부가 경제에 간여할 필요가 있을 때 재정정책을 통하여 당당하게 개입하고 또한 시장의 가격조정기능을 존중하는 태도야말로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부, 나아가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동시에 성취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있어서 시급한 것은, 정부규제 중 정부개입이 필요한 부문은 예산이나 조세정책으로 편입하고 그외의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일이다.

2. 정부운영과 경제성장

가. 경제성장 결정요인: 회귀분석

본절에서는 내생적 성장이론(endogenous growth theory) 등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주요 국가들에 대한 성장률을 추정하였다. 특히 위에서 언급한 바 있는 관료주의를 포함하여 여러 성장요인을 검토함으로써 정부규모뿐만 아니라 그 실제운영이 경제성장과 어떠한 상관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한다.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현재의 1인당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그리고 잠재적 규제상태에서의 1인당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은 높다. 식 (2)와 같이 현재 소득수준(Y_i^t)과 성장률(r)이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 까닭은 생산요소의 한계생산력 체감법칙(the law of decreasing marginal productivity)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간이 흐르면 성장률은 일정수준으로 수렴하게 마련인데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기술진보나 인적 자본의 개발과 같은 생산성 향상이 필요하다.

$$r_i = a + b_1 Y_i^t - b_2 Y_i^* + e_i \quad (2)$$

잠재적 소득수준 Y_i^* 는 이러한 효율성 증대에 도움이 되는 교육열, 정부정

11) 정부인원이 축소되면 규제 자연적으로 감소하리라 주장하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될 수도 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인한 정책의 부실화를 유발할 수 있다. 중요한 것은 합리적인 정책의 입안과 수행을 제도화하는 일이다.

시간이 흐르면 성장률은 책 또는 투자행태에 따라서 결정된다. 회귀분석에서 사용되는 설명변수들은 일정수준으로 식 (2)에서 잠재적 국민총생산을 대리할 수 있는 변수들이다. 변수들은 1990 수렴하므로 지속적인 년 또는 그 이전의 수치로서 이는 물론 각종 독립변수의 내생성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다만 변수, 교육수준은 1995년 15세 이상 인구에서 평균 초·중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등교육 수료연수를 이용하였고 물가상승률은 1986~1990년까지의 평균치를 기술진보나 인적 자본의 사용하였다¹²⁾. <표 7>은 본고의 추정식에서 언급된 주요 지표와 변수의 평균 개발과 같은 생산성 및 기타 통계치를 참고로 제시한 것이다.

<표 7> 각종 지표와 변수의 평균 및 기타 통계수치

(단위 : 달러, %, 년)

	평균	표준편차	최소치	최대치
1인당 GDP(1990)	10,731	9,592	299.4	33,560
경제성장률(1990~1995)	1.73	3.41	-12.7	10.5
청렴도지수	5.89	2.42	2.43	9.43
(비)관료주의지수	2.82	0.87	1.54	5
정부소비/GDP	15.27	5.81	5.6	28.8
물가상승률(1986~1990)	55.97	152.59	0.4	690.2
총투자/GDP	23.63	6.56	10.2	39.5
보조금·이전지출/GDP	13.5	9.8	0.9	37.2
출산물(1990)	2.41	1.03	1.3	6.3
교육수준	7.23	1.99	3.63	10.44

주: 경제성장률은 1인당 실질 국내총생산 평균성장률이고 교육수준은 초·중등 평균 교육연수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199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The Asian Wall Street Journal*, 1996. 10. 22 and Others.

12) 1990년 물가상승률을 변수로 사용하여도 결과는 비슷하게 나타난다. 물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나타나는 점(lagging effect)을 고려할 때 1990년 이전의 평균물가가 더 의미 있는 변수라고 판단된다.

<표 8>은 추정식 결과를 나타낸 표이다. 이 표에서 첫번째 열 추정식(모형 I)은 관료주의를 감안한 회귀분석으로 기존연구결과와 마찬가지로 투자율이 올라갈수록 그리고 출산율이 떨어질수록 경제성장률이 증가한다. 한편 교육수준은 성장률과 부(-)의 상관관계에 있는데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문맹률이나 1인당 공공교육비를 대신 설명변수로 포함시켜도 이들 변수가 성장률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지 않는다. 이 밖에도 배로(Barro, 1996)의

추정결과와는 달리 물가상승률도 경제성장과 유의한 상관관계에 있지 않는데 1990년 물가상승률을 대신 포함하여도 분석결과에는 변화가 없었다.

한편 경제성장에 대한 사회간접자본의 영향력을 검토하기 위하여 이를 대표할 수 있는 요인, 예컨대 도로포장률과 같은 변수를 추정식에 포함하여 보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다.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연구들도 사회간접자본이 경제발전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하여 서로 다른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는바¹³⁾, 이는 첫째, 사회간접자본을 대리할 수 있는 변수의 정확성이 결여되어 있고 둘째, 사회간접자본과 민간투자가 밀접한 관련이 있어 회귀분석에서 투자율이 사회간접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¹⁴⁾

재정지출은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조세 징수를 전제하므로 조세왜곡과 생산위축 효과를 감안하면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

〈표 8〉 경제성장률에 대한 회귀분석결과 비교

	모형 I	모형 II	모형 III
상수	1.71 (0.59)	2.86 (1.01)	2.73 (0.91)
(비)관료주의	0.77 (1.76)	-	-
청렴지수	-	0.32 (1.34)	0.82 (1.98)
총투자/GDP	0.13 (2.36)	0.12 (2.31)	0.11 (2.89)
정부소비/GDP	0.04 (0.59)	0.02 (0.26)	-0.03 (-0.34)
보조금이전지출/GDP	-0.12 (-2.43)	-0.12 (-2.58)	-0.11 (-2.27)
출산율	-1.07 (-2.35)	-1.09 (-2.37)	-1.01 (-2.07)
교육수준	-0.09 (-0.45)	-0.13 (-0.59)	-0.33 (-1.23)
물가인상률	0.002 (0.86)	0.002 (1.08)	0.003 (1.15)
1인당 GDP(1990)	-0.0001(-1.96)	-0.0001(-2.00)	-0.0001(-2.41)
R ²	0.50	0.49	0.48
표본수	46	46	46

주: 1. 모형 III은 이단계 최소자승식을 응용한 결과임.

2. 추정식에 이용된 각종 변수는 1990년 수치인데 교육수준은 1995년 15세 이상 인구에서 평균 초등·중등교육 수료연수를, 물가인상률은 1986~1990년까지의 평균인상률을 의미함.

3. () 안의 수치는 값임.

자료: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92*, 1994: World Economic Forum, *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1996*, 1996 and Others.

13) Easterly and Rebelo(1993)에 따르면 국민총생산에 대비한 사회간접자본 지출의 확대는 성장을 촉진한다. 그러나 Devarajan, Swaroop and Zou(1996)에 의하면 정부소비지출이 고정된 상태에서의 사회간접자본의 증가는 후진국의 경우 성장을 둔화시키고 선진국에서는 성장을 촉진한다.

14) 한편 대외개방도가 2차세계대전 이후에 각국의 경제 성장에 기여하였다는 연구가 있는데 대외개방도가 투자비율과도 자료상 밀접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기존 연구들은 대외개방도에 대하여 혼합된 결론을 내리고 있다(R. Levine and D. Renelt, 1992).

보조금이 사양산업에 쓰여지거나 정치적 로비에 따라 자의적으로 배분된다면 성장률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

본고에서의 주된 관심은 정부생산성인데 정부소비가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증가한다고 성장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변화하지 않는다. 정부지출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전술한 바와 같이 비선형적(nonlinear)일 수 있으므로 추정식에 정부지출의 자승치를 포함하여 보았으나 변화가 없었다. 이는 재정지출이 자원배분의 왜곡을 초래하는 조세징수를 전제로 하므로 비록 재정지출이 생산적이라 하여도 정부소비에 따른 조세왜곡과 생산위축 효과를 감안하면 성장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음을 뜻한다¹⁵⁾.

그런데 조세징수에 의한 왜곡이 일정한 경우 따라서 정부지출도 고정되었을 때 정부지출의 구조변화가 경제성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한정된 정부예산의 많은 부분이 복지증대 등 정치적 고려에 의한 비능률적인 소비보다 연구개발이나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된다면 성장률이 증가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국민총생산에서 보조금과 이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을 독립변수로 따로 본 추정식에 포함하였다. 그 결과 성장률은 보조금 등과 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복지확충에 주로 쓰여지는 이전지출은 성장둔화적인 측면이 강하다. 그러나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지출되는 보조금은 효율적으로 사용된다면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지출이다. 따라서 위의 변수가 혼합된 결과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추정결과에서는 이전지출효과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만약 보조금과 이전지출내역에 대한 통계를 분리할 수 있다면 좀 더 명확한 결론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추측건대 보조금이 성장유망 산업에 투입되지 않고 사양산업에 쓰여지거나 정치적 로비에 따라 자의적으로 배분된다면 보조금 등은 본 추정식에서 보여지듯이 성장률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질 것이다¹⁶⁾.

이 밖에도 정부재정구조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하여 정부투자비율을 회귀분석에 포함하였는데 공공투자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성장률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GDP 대비 총투자비율이 정부투자비율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공공투자는 최종 추정식에서 삭제되었다.

위의 실증분석에서 흥미로운 점은 비관료주의적인 국가일수록 성장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선진 제국에서는 관료주의나 부패 정도가 낮다. 한편 소득이 올라갈수록 성장률은 낮으므로 관료주의 및 부

15) Devarajan, Swaroop and Zou(1996)도 이러한 추정결과와 유사한 관측을 하고 있는데 Barro(1996)에 의하면 국방비와 교육비를 제외한 정부지출은 성장을 둔화시킨다.

16) 특히 보조금과 이전지출이 자의적으로 분배된다면 부패도 심각할 수 있는데 앞 절에서 보듯이 보조금 등의 지출비율이 높을수록 청렴도도 떨어지지만 이러한 관측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패도와 성장률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한데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변수들을 감안한 본고의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이러한 일 반적 추측을 뒤엎는 것이다¹⁷⁾. 이와 같이 관료주의가 경제성장을 감퇴시키는 이유는 관료주의가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왜곡할 뿐만 아니라 비 생산적인 비리를 조성함으로써 경제적 동기에 의한 성장욕구를 저해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정부소비가 정부의 양적 규모를 대표하는 변수라면 관료주의는 질적인 측면을 대리하는 변수이다. 따라서 위의 추정결과는 비록 양적인 측면에서의 정부 운영이 조세왜곡을 동반하므로 경제성장에 혼합된 결과를 유발할 수 있지만 정부의 건전한 운영은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과도한 정부규제는 경제성장을 감퇴시킬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보조금과 이전 지출 등 지출구조의 변화가 성장에 크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건전한 정부운영이 성장에 미치는 역할은 지대하다고 판단된다.

나. 경제성장과 정부운영: 종합평가

본고에서는 규제와 정부예산이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표 9>에 요약된 바와 같이 관료주의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경향이 있으며 국가별 청렴도에도 부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 한편 정부규모는 성장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대신 부패도와는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즉 청렴한 나라일수록 정부지출이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높은 정부비중이 경제성장을 저해하지는 않고 다만 이전 지출과 같은 복지성 예산이 성장을 감퇴시킬 수 있다. 반면 관료주의적인 사회일수록 성장률도 낮고 부패도 심하다.

<표 9> 정부운영이 경제성장과 부정부패에 미치는 영향: 종합평가

	경제성장	부정부패
정부소비	?	-
관료주의	-	+
이전지출	-	?

주: <표 6>과 <표 8>의 분석결과를 요약함.

정부의 건전한 운영은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고 과도한 정부규제는 경제성장을 감퇴시킬 수 있다.

17) 본고에서 사용된 변수(비)관료주의와, 소득수준 그리고 경제성장률과의 단순상관계수(Simple correlation coefficient)는 각각 0.54, 0.18에 달한다. 따라서 단순히 논한다면 관료주의적 풍토가 미약한 나라일수록 성장률이 높기는 하지만 두 요소의 관계는 관료주의와 소득수준의 관계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다.

비리는 관료주의라는
온상 안에서
확대재생산되면서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을 수 있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 싶은 사실은 자본주의 역사가 오랜 나라일수록 덜 관료주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선진국들은 역사적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규제의 폐해를 잘 인식하고 있고 따라서 간접적 정책수단이기는 하지만 시장기능을 보존하고 비리의 가능성이 적은 예산과 조세정책을 선호하여 정부규모가 팽창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한 예로서 정부가 개입할 필요가 있는 부문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정책수단으로서 정부는 행정지침과 같은 정부규제를 선택하거나 또는 예산과 조세를 통한 정책유도를 피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규제의 경우 신속하고 확실한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그 자의성으로 인하여 비리를 잉태할 수 있다. 더욱이 일단 부패가 유발된 후에는 부정을 은폐하고 존속시키기 위해서 관료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장통제나 행정의 불투명성을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게 된다. 다시 말하면 관료주의와 비리의 인과관계는 쌍방적인 것이고 비리는 관료주의라는 온상 안에서 확대재생산되면서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정부개혁은 정부규모 축소와 같은 외양적인 개선이 아니라 규제나 간섭이 요구되는 부문은 예산과 조세정책으로 양성화하고 그 외의 규제는 과감히 폐지하는 일이다. 관료주의는 정부소비와는 달리 부패에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성장에도 걸림돌이 되기 때문이다. 관료주의 개선과 규제완화를 통한 청렴한 정부운영이 수반될 때 경제성장도 더욱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교훈을 위의 두 회귀분석이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관료주의가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논의하였다. 관료주의가 청렴도 대신 경제성장을 결정짓는 요인으로 사용된 주된 이유는 청렴도가 내생적일 수 있고 또 다른 독립변수인 소득수준과 다중선형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었다. <표 8>의 두번째 열은 관료주의를 대신하여 청렴도지수를 회귀식에 직접 포함한 후 일반 최소자승식을 사용한 결과이다. 예상한 대로 청렴도의 추정계수는 비리가 적을수록 성장률이 올라감을 보여주고 있으나 추정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청렴지수의 내생성을 극복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이단계 최소자승식

(two stage least squares)을 이용하여 청렴도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것이다. <표 8>의 모형 Ⅲ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청렴한 나라일 수록 경제성장이 빠르게 진행되고 통계적으로도 추정계수가 유의하다. 앞 절에서 부정부패는 가격기능을 복원함으로써 자원배분의 왜곡을 교정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논하였다. 그러나 정부규제나 간섭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특권이 완전경쟁하의 경매에 의하여 배분되지 않으면 비리의 가격기능이 오히려 비효율적일 수 있다. 위의 추정식은 부정부패가 장기적으로 효율성을 증진하기보다는 성장에 걸림돌이 된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고 있다.

생산함수추정을 통한 일련의 연구는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이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일회적인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

다. 기존 연구결과와 정책적 시사점

지금까지 본고는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우리나라 정부운영의 국제적 인식을 소개하고 청렴지수와 관료주의의 상관관계 그리고 이들 변수들과 경제성장률과의 관계를 회귀분석하였다. 경제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로는 본고에서와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거나(Barro, 1996) 또는 생산함수추정(production function estimation)을 사용하여 성장률을 분석하는 연구가 있다(Young, 1994).

회귀분석은 경제성장론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인데 이를 주로 사용하는 학자들은 동아시아에서의 경제성장을 긍정적인 시각에서 보고 있다. 그 예로 배로는 우리나라가 향후 2000년까지 연평균 GDP성장률이 세계 최고수준인 6.2%를 기록하여 세계평균 성장률 2.5%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금융시장의 불완전성을 강조하고 있는 스티글리츠(Stiglitz, 1996)도 동아시아 국가가 변화하는 경제상황에 따라 정부정책을 신속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정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고 효과가 없는 정책은 주저없이 폐지하였다고 주장하였다¹⁸⁾.

이와 반대로 동아시아의 경제성장이 결코 반복될 수 없는 일회적인 성장(non-repetitive one time growth)이라는 주장도 있다. 크루그만(Krugman, 1994)이 *Foreign Affairs*에 기고한 그 유명한 「아시아 기적의 신화(The Myth of Asia's Miracle)」를 필두로 한 일련의 연구는 생산함수추정을 통한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제성장을 추적한 결과 다음의 두 가지 결론을 맺고 있다. 첫째,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급속한 성장은 각종 생산요소 특히

18) 이 밖에도 Stiglitz는 동아시아 국가가 정부에 의한 금융시장과 금융제도 확립, 저축증진, 부족한 자원을 수출지원에 집중하여 투자 의욕을 고취하였다고 논하고 있다.

성장회계론자들은
신흥공업국의
경제성장이 생산요소의
단순한 증가로 이루어져
왔음을 지적한다.

물적자본의 급증에 인한 것이다. 둘째, 이들 국가의 경제성장은 효율성, 즉 단위당 생산량 증가가 아닌 생산요소의 증대로 인한 것이므로 지속될 수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동양적 사회규범에 바탕을 둔 정부 주도의 시장 개입, 강력한 무역과 산업정책이 서양의 자유주의에 기초한 시장경제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다는 것은 신빙성이 없는 추론이다.

체제논쟁까지 불러일으킨 크루그만의 주장을 영(Young)의 연구결과가 실증적으로 뒷받침한다. 영은 생산요소의 산출탄력성(output elasticity, 실제로는 각 생산요소의 소득점유율)과 이들의 성장률로 총생산 성장률을 설명하는 성장회계방식(growth accounting method)으로 동아시아 성장을 분석하였다. 이에 의하면 동아시아 제국의 총요소생산성(total factor productivity)¹⁹⁾은 한국이 1.6%, 대만 1.9% 홍콩 2.3% 등으로 일본(4.1%), 독일(3.7%)보다 낮고 미국(1.4%), 영국(1.9%)과 비슷한 수준이다²⁰⁾. 그러므로 영은 이들 국가의 성장이 투자, 노동참가율, 교육률의 증가로 인한 '일시적' 성장이며 신고전 발전이론은 신흥국가의 발전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고 단언한다.

성장회계론자들의 주장처럼 신흥공업국들(NICS)이 경제성장의 많은 부분을 생산요소의 단순한 증가로 매워 온 것은 사실이다. 물론 이들이 사용한 자료의 정확성이나 규모의 경제의 일정성(constant returns to scale)과 같은 가정의 문제점을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본고에서 주목하고 싶은 점은 내생적 성장이론에 바탕을 둔 물적 자본의 내생성이다. 루카스(Lucas, 1993)에 의하면 투자율과 성장률은 정(+)의 상관관계에 있게 마련인데 여기서 발전론의 학문적 역할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경제성장이 수치화할 수 없는 인적 자본에 의하여 결정된다 하더라도 인적 자본의 증가에 대응하는 물적 자본에 대한 투자는 필요하다. 한 예로 직장 또는 경험에서의 학습효과(learning effect)에 의한 외부효과가 존재한다고 하자. 이러한 외부효과는 측정하기가 어려운 변수로서 만약 물적 자본이 이 변수와 상관관계에 있는 경우 관측의 동일성(observational equivalence)으로 인하여 경제성장이 단순히 물적 자본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오측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함수모형은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인과관계를 간과할 수 있다.

19) 총요소생산성은 각 생산요소가 두 비교 연도 사이에 변화하지 않았을 경우 효율성 증대로 발생한 생산량 증가를 추정할 수치이다.

20) 동아시아 국가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은 1966~1990년 사이의 증가율이며 선진국 수치는 주로 1950~1973년 증가율이다(Young, 1994).

루카스에 따르면 경제성장의 동인은 인적 또는 지적 자본의 축적이다. 물질 자본은 필요하지만 부수적 요소이다. 특히 중요한 것은 외부효과를 갖는 '직장에서의 배움(learning on the job)'이며 이를 바탕으로 경제가 계속 성장하려면 신상품의 개발과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배움에 기반을 둔 성장은 특화될 수밖에 없고 이는 무역의 신장을 의미한다. 따라서 통계적으로 보면 성장률과 무역규모 그리고 투자율은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게 된다²¹⁾.

이와 같이 성장회계론의 한계 —인과관계의 증명—는 분명히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론의 학문적 업적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 기술개발과 제도개혁을 통한 효율성 제고가 없는 경제성장은 지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인적 자본이 경제성장의 동인이라는 루카스의 이론을 우리가 수용한다 하여도 경제규모가 어느 수준에 이르면 동원가능한 노동력이 고갈될 것이며 교육의 한계생산성도 떨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끊임없는 경제성장을 유지하려면 각종 제도개선을 통한 인적 자본의 축적과 기술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크루그만의 주장을 우리가 겸허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정책의 투명성·일관성과 같은 양질의 정부운영이 성장을 촉진하고 부패를 근절한다는 본고의 결론은 매우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적 자본의 개발에 있어서 두 가지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과 창의력이 보답받는 시장체제의 확립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을 선도할 위치에 있는 정부가 규제와 간섭으로 국가경영에 임한다면 지속적인 경제성장은 요원할 것이다.

특히 관료주의와 정부개입이 만연되어 있는 우리나라 정부운영에 있어서 정책입안자들의 과감한 사고의 전환이 매우 절실하다. 이러한 체질개선은 현재 진행중인 임금동결을 통한 경쟁력 10% 올리기 운동이나 또는 금리 1% 인하와 같은 단기적이고도 강압적인 정책운용이 아닌 구조적 접근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요청한다. 현재의 고비용·저효율구조, 무역수지의 악화 그리고 OECD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 압력 등 수많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더욱 그러하다.

국가경영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진정한 변화가 용이하며 올바른 개혁은 오히려 도약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현시점에 있어서 시장체제의 강화

인적 자본의 개발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요소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환경과 창의력이 보답받는 시장체제의 확립이다.

21) 기존의 많은 연구가 투자율과 무역규모 사이에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하며 이로 인하여 두 변수의 추정계수가 독립적이지 않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본고의 회귀분석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

올바른 정책은
고비용구조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를 근간으로 각종 제도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가 스스로 기득권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 민간부문에서도 경쟁과 창의를 존중하는 시장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노력하는 자가 정당한 보답을 받는 사회의 확립이야말로 진정한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IV. 결론

본고는 우리나라 정부운영에 관한 국제적 인식을 소개하고 정부운영의 규모와 그 내용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였다. 각종 국제보고서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정부지출과 같은 양적 정부운영에서 우수하게 평가받고 있으나 관료주의와 비정상적인 행정관행 등 정부운영의 효율성은 열악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 밖에도 국제보고서에서 지적하고 있는 우리나라 경쟁촉진 정책의 부재와 일관되지 못한 정책운동은 향후 경제성장에 상당한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현재의 고비용-저효율구조를 근본적으로 타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자의적 시장개입이 아니라 경쟁적 시장체제에 입각한 자원배분으로 국내산업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데 있기 때문이다. 국가경쟁력 10% 강화운동과 같이 단순히 고임금 또는 고금리를 억제하는 정책은 또 다른 경제적 부작용을 조장하게 마련이다.

다시금 강조한다면 올바른, 그리하여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정책이란 고비용구조가 발생하게 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시정하는 노력에서 비롯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고비용구조나 개방압력이 아니라 이러한 난관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국가운영의 유연성이다. 왜냐하면 무역적자나 한보사태와 같은 어려움은 일과적인 충격으로서 발생원인을 제대로 규명하고 왜곡된 경제구조를 시정할 수 있다면 우리 경제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어려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난관에 봉착하여 일시적 미봉책에 급급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상실한다면 지속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현재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자세는 국가적 난관을 숙지하고 이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정치·사회제도를 성숙하게 만드는 일이다. 특히 갈수록 첨예화되고 있는 무역경쟁 속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와 국가 체제도 경쟁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가경쟁력을 굳이 정의하자면 노동법이나 한보사태와 같은 난제를 합리적이고도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제도의 탄력성이 아닌가 한다.

국가 체제의 유연성을 확보함에 있어서 정부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정부가 경제의 큰 흐름을 결정짓는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개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내상황과 관련해서도 정부규제와 부정부패의 폐해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들이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국내외에서 일천하다.

그러므로 제Ⅲ장에서는 국제보고서에 나타난 국가별 부패(청렴)도를 소개하고 부정부패와 정부운영과의 연관성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이전지출이나 정부소비와 같은 양적 정부운영과는 달리 관료주의 등의 질적 정부운영이 부패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이는 규제정책이 재정이나 조세정책에 비하여 자의적이고도 음성적으로 수행되는 까닭에 비리가 조장될 여지가 많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앞에서의 회귀분석에 따르면 소득수준 등 다른 요인이 일정한 경우 정부지출의 증가는 부패를 감소시킨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매우 흥미스러운 관측으로 향후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는 것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게 된 원인으로서 정부개입이 필요한 경우에 국회와 여론의 감시가 용이한 예산정책이 사용된다면 그만큼 비리의 소지가 적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한편 제Ⅲ장 제2절에서는 관료주의와 정부예산 등 정부운영이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반면 정부지출은 성장과 특정한 관계가 없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따라서 관료주의는 정부예산과는 달리 부패를 유발하고 이를 통하여 경제성장에 직·간접적인 폐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수치화하기 어려운 제도적인 측면에서의 정부운영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는 것이다.

특히 전술한 바와 같이 각종 국제보고서가 한결같이 주장하고 있는 우리나라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는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반면 정부지출은 성장과 특정한 관계가 없고 오히려 비리와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

정책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라 정부부문의 문제점은 그 운영의 열악성이다. 그러므로 앞에서의 분석결과는 제도적 개혁을 통한 정부운영의 투명성 제고가 정부개혁뿐만 아니라 경제 개혁을 위해서도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임을 증명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관료주의가 부정부패와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반면 정부 지출은 비리와 부(-)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점은 우리나라 정부개혁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상기의 논의가 모든 정부개입을 무조건적으로 철폐하라는 주장은 물론 아니다. 정부개입이 꼭 필요한 부문에 있어서는 행정규제보다 예산과 조세정책을 통하여 민간경제를 규제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재정정책은 첫째, 국회와 여론의 감시를 받는다는 측면에서 정부관리의 자의성과 비리가 개제될 여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둘째, 예산과 조세를 통한 정부개입은 시장의 자율적인 가격조정기능을 보존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부가 시장간섭을 자제해야 한다고 하여 정부의 역할을 무조건 축소하라는 말은 아니다.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시장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은 오히려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현재의 고비용-저효율구조는 국내 생산요소 및 제품시장이 독과점적으로 운영되는 데서 기인한 면이 많다. 따라서 국내 산업의 효율성을 증진하고 WTO 및 OECD 가입에 따른 대외개방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면 경쟁력 있는 기업이 시장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불공정한 경쟁을 규제하고 비효율적인 정부지원을 철폐하여야 한다. 노력하는 자가 정당한 보답을 받는 사회의 확립이야말로 진정한 국가경쟁력이기 때문이다.

본고의 가장 핵심적인 연구결과는 청렴한 정부운영이 성장을 촉진하고 부패를 방지한다는 것이었다. 이 밖에도 정책운용에 있어서 투명성의 확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일이다. 민주화된 사회에서는 이익집단이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정치적 로비를 하게 마련이다. 따라서 건전한 정부운영을 위해서는 이익단체간의 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 만약 이러한 균형체제가 정립되지 못한 까닭에 정부가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정치적 논리에 따라 국가정책을 유명무실화하거나 급작스럽게 정부입장을 선회하면 정부와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확립되기 어렵다. 그 결과 경제주체들은 미래의 불확실한 예측에 의존하여 자원배분을 결정하고 나아가서 탈법적이거나 편법적인 행위를 일삼게 된다. 특히 불투명한 정치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횡행

하고 이에 따라 정부정책이 뒤바뀌게 되면 이익집단은 정부방침에 순응하기보다는 이에 대한 조직적인 반발과 무분별한 로비로 대응하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민주사회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정부가 일관된 정책기조하에 미래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정부를 믿고 따르면 이득이 된다는 신념을 국민에게 심어주는 것이다.

어려운 시기에 국가경영을 책임맡은 정부는 이 난관을 일시적 미봉책으로 넘기려고 해서는 안된다. 오히려 적극적인 개혁을 통하여 현재의 어려움을 발전의 계기로 삼는 슬기로우미 필요하다. 이러한 현명함은 작금의 난관을 사익에 이용하려는 특정 이익집단의 유혹을 과감히 뿌리치고 고통이 따르는 구조개선을 경제 전분야에 걸쳐서 공정하게 수행하는 데 있다. 바꾸어 말하면 정부는 하루바삐 투명한 정치를 위한 각종 제도를 정립 내지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불필요한 정부규제를 철폐할 수 있어야 올바른 경제개혁이 가능하다. 부정부패야말로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함으로써 필연적으로 고비용과 저효율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더욱이 비리는 그 특성상 시장메커니즘이 자율적으로 고비용구조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성장을 유지하는 데 커다란 걸림돌이 된다는 점에서도 비리척결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시급한 과제이다. 이러한 주장은 단순한 추론이나 가설이 아니며 <표 8>의 회귀분석결과 실증적으로 표출된 사실임을 정치가와 정책담당자들은 명심할 필요가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난국에 직면하여 여야를 막론한 정치가들은 현재 진행중인 부정부패 척결이나 규제완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을 성취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부정부패방지법(가칭)을 도입하여 비리의 구조적 먹이사슬을 과감히 제거하여야 한다. 깨끗한 정치와 정부운영이 선행될 때 진정한 개혁이 가능할 것이며 건실한 경제성장도 이러한 개혁 속에서만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기 때문이다. **KIP**

부정부패 척결이나
규제완화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노력함으로써
실질적인 개혁을
성취하여야 한다.

OECD의 금융산업 규제완화 논의

홍 범 교/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세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금융규제 완화는 선진 금융센터들의 경쟁과 국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에서 비롯된 것이다.

I. 서론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완화와 개방화는 전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금융개혁위원회를 중심으로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개혁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불과 10~20년 전만 하더라도 소위 선진국이라고 불리는 대부분의 OECD 국가들에서도 금융기관 진입규제, 이자율 및 외환규제 등 금융산업에 있어 많은 제한이 있었다. 그러나 1970년대부터 이들 국가에서 부분적으로 시작된 규제완화는 1980년대에 들어와 금융혁신의 움직임과 함께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현상은 어떤 국가적인 원대한 계획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선진 금융센터들의 경쟁과 국내외 거시경제환경 변화에 대한 적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정책당국은 외환규제, 이자율규제, 대출규제, 진입규제 등에 의한 개인적·공공적 복지수준의 저하를 점진적으로 인지하고, 시장중심의 의사결정에 따르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점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우리나라도 1980년대 말부터 금융자유화와 시장개방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OECD에 가입한 현 시점에서 앞으로 우리나라 금융서비스산업의 규제완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화를 논하는 데 있어서 국제적 정합성은 그 우선순위가 매우 높은 고려사항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 글은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규제완화 방향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생각되는 OECD 자료¹⁾를 정리한 것이다.

이 자료는 OECD국가들의 금융산업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규제개편(자유화, 규제완화, 재규제)의 단계와 이러한 공공정책의 변화가 가져오는 효과를 살펴보고, OECD 자유화규약, EU의 단일시장안,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GATS),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의 구조적 움직임을 배경으로 앞으로 금융산업에 있어서의 규제완화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 것인가 등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다만 현재 규제완화가 선진국보다 덜 이루어진 국가들의 경우, 규제완화의 속도와 범위 등은 각국의 금융산업 및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결정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

일찍부터 국제적인 압력과 금융시장의 국제화 등이 선진각국의 국내 금융시장 자유화를 촉진시켰다.

II. 금융산업 규제완화와 감독의 필요성

일찍부터 국제적인 압력과 금융시장의 국제화 등이 선진각국의 국내 금융시장 자유화를 촉진시켜 진입, 소유 그리고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거래 등에 있어서 많은 자유화 조치가 이루어졌다²⁾. 과거 이 분야의 자유화에 대한 반대논리는 국내산업이 '외국인'에 의해 지배되는 데 대한 거부감과 국내 금융정책의 독립성 상실에 대한 우려에 근거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에 유러달러시장이 발전하면서 금융서비스 및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진전되었고 이에 따라 각국의 정책당국과 국내 금융산업 전반은 차츰 경쟁적인 비교열위에 있게 됨을 자각하면서 자유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인플레이에 따른 불확실성의 증가와 경기순환적인 변동도 보다 유연한 금융시장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쟁적 규제 완화의 움직임은 몇 가지 장애요인에 의해 복잡한 양상을 띠게 되었다. 국가별로 서로 다른 금융구조의 차이(예: 겸업주의 대 분리주의), 외국기관에 대한 진입규제, 자율감독기관이자 이익집단인 협회(Self Regulatory Organization)의 반경쟁적인 과점적 행위(예: 외국인에 대한 증권거래소 회원 불인정, 주식거래에 있어 고정 수수료, 고정 신용이자율)

1) "Regulatory Reform in the Financial Services Industry: Where Have We Been? Where Are We Going?," OECD document DAFFE/CLP/WP2(96)9/02, Nov. 14, 1996.

2) 일본의 금융규제완화에 대한 국제적 압력에 대해서는 K. Osugi, *Japan's Experience of Financial Deregulation Since 1984 in an International Perspective*(Basle: BIS, January 1990)를 참조할 것.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등을 이러한 장애요인의 예로 들 수 있다.

일종의 독점권을 행사하게 되고, 그 결과 개혁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감독당국과 피감독자간의 정보의 비대칭성에 의하여 감독당국이 금융서비스 산업의 반경쟁적인 움직임에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³⁾. 예를 들어 협회측은 우월한 정보를 가지고, 개방 및 자유화에 따른 '최악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 감독당국을 설득하기도 한다. 이렇듯 정보비대칭으로 인해 금융산업의 많은 부문에서 금융기관들은 독자적인 영역을 갖게 됨으로써 일종의 '독점권(property right)'을 행사하게 되고, 그 결과 개혁과정이 상당히 어려워졌다. 북미, 영국, 일본 등에서 이러한 현상이 많이 나타났으며 독일, 프랑스 등 정부소유의 기관이 많은 나라에서는 정보의 비대칭성 문제가 덜 심각하였다.

금융산업의 규제완화가 이루어지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 첫째, 금융시스템의 '안전과 건전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건전경영감독(prudential supervision)의 정도 둘째, 금융서비스 산업에의 진입과 소유문제: 정부당국에 의해 허용되어야 하는 금융서비스의 국제적 거래의 정도와 은행, 증권 및 여타 서비스와의 겸업의 정도 셋째, 체계적인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과도함(excesses)의 회피, 국가적인 금융기관의 육성등과 같은 정책당국의 '계획규제(regulatory planning)'⁴⁾의 필요성 여부이다.

3) Stephen L. Harris, "The Politics of Financial Market Liberalisation: The Case of the Canadian Investment Dealer Industry," A paper presented to the 1996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San Francisco Hilton, San Francisco, California, August 29~September 1, 1996 참조.

4) Richard Schultz, "Regulatory Agencies and the Dilemmas of Delegation," in *The Administrative State in Canada*, ed. by O. Dwivedi(Toronto: The University of Toronto Press, 1982), pp. 89 ~106 참조.

우선 금융 시스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건전경영감독의 형태로는 자기자본비율유지, 위험관리 시스템의 운영, 공시의무 등을 들 수 있으며,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도 강조된다.

둘째 측면과 관련하여 금융산업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전통적으로 국제적인 경쟁에는 적극적이나, 자국시장에서의 과점적인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업무영역의 경계가 허물어짐에 따라 더욱 심화되었고, 정책당국은 부득이하게 영역별 재규제에 의존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금융규제는 업무영역을 제한하는 대신 국내시장과 기관을 국내외의 경쟁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금융시장의 국제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러한 단절적인 규제는 예를 들어 국내저축이 부족할 경우 자금부족으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초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별 산업의 입장에서는 국제화와 개방을 수반하는 규제완화에 대해

서는 지속적으로 반대입장을 취해 왔다.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금융서비스 산업은 일반적인 공정거래법(또는 독과점 금지법)의 예외로 인정받아 왔다. 미국, 영국, 일본, 네덜란드, 스위스, 핀란드 등에서 대형은행의 합병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합병은 공정거래법에 의하여 법률적인 규제나 제한을 받기보다는 공공 이익에 기초하여 허용되었다.

Ⅲ. 금융규제 완화의 편익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편익으로는 생산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가격의 하락,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완화의 편익을 평가하는 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모든 편익을 직접적으로 평가하기는 힘들며, 평가하더라도 정확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다. 둘째, 규제완화의 명시적인 효과를 금융부문의 혁신이나 다른 변화에 의한 효과와 구분하여 측정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1. 효율성의 증가

규제완화는 금융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줄인다. 첫째, 규제를 제거함으로써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가장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혁신의 자유를 준다. 예를 들어 예금이자에 대한 규제가 없어지면 은행들은 방대한 지점조직을 유지하기보다는 가격경쟁에 의하여 예금을 유치할 수 있게 된다. 둘째, 규제완화는 경쟁을 촉진시켜 한계기관의 도산이나 합병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⁵⁾.

이러한 가격하락과 생산성 증가의 예를 <표 1>~<표 3>에서 볼 수 있다. <표 1> 및 <표 2>에는 주식시장 및 단기자금시장에서의 거래비용 감소추세가, <표 3>에는 OECD 회원국 은행들의 인건비 감소추세가 나타나 있다⁶⁾.

1980년부터 1993년까지 미국의 금융서비스분야 생산성 증가율은 연 4%에 이르러 전체 경제성장률의 3배에 이르렀다. 이러한 생산성의 증가를 전적으로 규제완화 때문이라고 하기는 어려우나, 규제완화가 없었다면 그만큼 성장했을 것인가는 의문시된다. 더욱이 미국의 소매은행업무가 다른 나라보다 월등히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편익으로는 생산성 및 서비스의 질 향상, 서비스 가격의 하락,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한 경제의 효율성 제고를 들 수 있다.

5) 경쟁의 심화는 금융기관의 수를 줄임으로써 소수의 기관이 시장을 장악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나 가격 및 업무영역에 있어서의 규제완화는 효과적인 경쟁(effective competition) 또는 '경쟁성(contestability)'을 증가시킨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론은 은행의 수가 줄어들어도 불구하고 은행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실에 의해서도 뒷받침된다고 하겠다.

6) 보다 자세한 것은 Malcolm Edey and Keil Hviding, "An Assessment of Financial Reform in OECD Countries,"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154 (Paris:OECD, 1995) 참조.

규제완화는 금융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 효율적인 업무 수행과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한계기관의 도산이나 합병을 통해 효율성을 증가시킨다.

〈표 1〉 런던증권거래소의 평균 거래수수료

(단위 : %)

	1980	1985	1987	1990	1992
수수료율	0.6	0.4	0.3	0.3	0.2

자료: 런던증권거래소

〈표 2〉 3개월 유러커런시 예금의 매매 스프레드

(단위 : 베이스스 포인트)

	미국 달러	영국 파운드	프랑스 프랑	독일 마르크	일본 엔
1980 ~ 1982	12.6	66.7	49.0	12.8	17.0
1987 ~ 1989	12.6	12.0	13.4	12.9	11.8

주: 평균 일별스프레드임.

자료: OECD(1996), *op. cit.*

높은 생산성을 보이는 것은 규제완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잠재적 생산성 증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⁷⁾.

금융서비스의 질 향상, 다양성, 새로운 상품 및 서비스의 등장 등도 규제완화의 산물이라고 하겠다. 예금이자에 대한 상한, 최소 잔액유지, 계좌간 이체 등에 대한 규제가 완화됨으로써 시장금리에 근접하는 금리를 지급하는 다양한 저축계좌(savings account)가 개발되었다. 주택 및 소비자 신용의 공급도 규제완화와 함께 증가하여 주택보유율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금융기관, 비금융기관 모두 증권시장으로부터의 자금조달이 원활해졌고, 은행, 보험 및 다른 중개기관으로부터 다양한 자금조달수단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파생금융상품의 발달도 위험 배분 및 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다양한 상품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였다.

그러나 규제완화에서 오는 편익이 모든 분야에서 똑같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최소잔액유지 조건 때문에 저소득층은 고소득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새로운 고수익 상품인 money market mutual funds 등을 이용할 수 없어 규제완화의 편익을 누리지 못한다⁸⁾. 대기업들이 소기업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서비스의 혜택을 많이 입는 것도 그러한 예

7) McKinsey Global Institute, *Service Sector Productivity*(Washington DC, October 1992)에 의하면 미국 소매은행업의 생산성이 독일이나 영국보다 3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다른 나라에 비하여 가장 효율적인 기술 사용과 관행 때문으로 생각된다.

〈표 3〉 OECD국가 은행들의 총수익 대비 인건비 비율

(단위 : %)

	대상은행	1979~1984	1985~1989	1990~1992
미국	상업은행	35	31	29
	저축은행(mutual saving banks)	69	27	28
일본	대형 상업은행	40	28	30
독일	모든 은행	42	41	41
프랑스	상업은행	46	42	40
이탈리아	상업은행	48	48	45
영국	상업은행	45	38	37
캐나다	상업은행	39	34	36
벨기에	상업은행	54	45	46
	저축은행	37	33	38
덴마크	상업은행과 저축은행	38	40	43
핀란드	상업은행	42	33	32
그리스	대형 상업은행	59	61	46
네덜란드	모든 은행	42	40	39
노르웨이	모든 은행	41	33	34
스페인	모든 은행	46	43	37
스웨덴	상업은행	38	30	24
	저축은행	28	24	25
스위스	대형 상업은행	41	37	37

금융규제 완화의
편익은 소득계층이나
기업의 규모에 따라
다르게 배분될 수 있다.

자료: OECD, *Bank profitability*, 1995.

에 속한다고 하겠다.

2. 효율적인 자원의 배분에 의한 이득

금융규제에 의하여 인위적으로 자금의 흐름을 조절하면 자금이 생산성이 높은 부문에서 낮은 부문으로 흘러 전체적인 효율성이 낮아질 수 있다. 대부분의 OECD 회원국에서 차별적인 신용할당은 제한적으로만 사용되어 왔다.

8) N. Jianakoplos and F. Irvine, "Did Financial Deregulation Help Consumers: Access to Market Yield Instruments," *Applied Economics*, 24:8, 1992, pp. 813~832 참조.

규제완화에 따른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증가는 세계적인 자원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

Junk bond시장이나 venture capital이 고수익-고위험 프로젝트의 자금조달을 가능하게 한 데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새로운 수단이 미국과 같이 가장 자유화된 금융시스템하에서 개발되었다는 사실은 앞으로도 규제완화에 의하여 얻을 수 있는 편익이 상당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개인이나 개별 기업이 그들의 소비나 자금수요를 시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 것도 규제완화에서 오는 커다란 편익의 하나이다. 예금이자에 대한 상한 철폐와 함께 금융긴축시 기업에 대한 자금경색이 완화되었으며, 신용접근이 용이해짐에 따라 가계들의 소득변동에 따른 소비탄력성이 줄어들었다⁹⁾.

규제완화에 따른 국제적인 자본이동의 증가는 가장 효율적인 사용처로 자본을 이동시킴으로써 세계적인 자원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효율성을 상당히 제고시키고 있다. 기술이전 및 다른 생산성 향상 요소들을 고려하면 해외자본의 유입에 따른 잠재적 편익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자본이동의 증가는 선진국에도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그들의 투자에 대한 기대수익률이 국내보다는 국제시장에서 높고, 개별적인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각 국별로 국내금융기관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가 아직 많이 남아 있어, 완전한 의미에서 국제적 포트폴리오의 구성은 어렵고, 만일 이러한 규제가 완화된다면 추가적인 편익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3. 거시경제정책에 미치는 효과

금융산업의 규제완화는 또한 금융 및 거시경제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수 있다. 역사적 경험에 의하면 규제완화는 국내 저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그 효과는 개별 환경에 따라 다르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개발도상국들의 경우, 규제완화는 저축의 급격한 증가를 가져왔다¹⁰⁾.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신용공급의 증가는 내구재 구입을 위하여 저축 유인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 실제로 영국과 북유럽국가에서는 이자율규제의 철폐 이후 몇 년 동안 저축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에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과 같이 규제완화가 저축률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도 있다.

규제완화에 따른 금융시장의 변화는 통화, 재정정책에도 영향을 미친다. 일

9) A. Blundell-Wignall, F. Browne and S. Cavaglia, "Financial Liberalisation and Consumption Behavior," *OECD Economics Department Working Paper No. 81*, March 1991 참조.

10) Edward Shaw, *Financial Deepening in Economic Development*,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73 참조.

본과 유럽의 몇몇 국가들의 경우 증권시장의 발달은 국공채의 시장성을 향상 시킴으로써 공공 부채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였다. 신용규제와 같은 양적 수단 에 의존하기보다는 이자율, 환율과 같은 시장가격변수에 의존함으로써 금융정책 상의 변화가 실질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보다 광범위하고 균질적이 되었다.

그러나 규제완화가 거시정책을 보다 복잡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 신용 (credit) 및 다른 지표와 금융정책 목표간의 관계가 무너짐으로써 전통적인 지수를 과거만큼 믿을 만한 지표로서 사용할 수 없게 되었고, 금융정책에 대한 평가도 어렵게 되었다¹¹⁾. 장래에 기대되는 사건에 대한 시장탄력성이 민감 해지고, 때로는 이러한 민감성이 과도한 반응으로 나타나 혼란을 가중시킬 가 능성도 있다¹²⁾.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국제시장과 국내시장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 었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환율을 국내외 경제정책의 차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국제적인 상호 의존관계를 심화시켰다. 고정환율을 유지하 기 위해서는 금융정책의 독자성을 포기하여야 하고, 반대로 금융정책의 독자 성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환율의 높은 변동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대국의 경우 에는 환율을 자유변동(float)시키고도 어느 정도 국내정책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으나, 소국개방경제의 경우에는 환율의 변화가 국내정책이 의도하는 정 책효과를 상쇄시키거나 정책목표의 불일치를 가져올 수 있다.

IV. 금융자유화의 현황

지난 30년 동안 금융서비스산업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개혁은 시장 중 심 의사결정(market based decision-making) 체계가 구축된 것이다¹³⁾. 이 자율에 대한 규제 철폐, 자산 운용 및 신용 할당에 대한 규제 폐지, 안정화를 위한 신용팽창 물량에 대한 규제 제거 등의 개편에 있어 OECD가 상당한 역 할을 하였고 1980년대 이후로는 국제결제은행(BIS)과 국제증권감독기구 (IOSCO)의 공조가 큰 역할을 하였다. 특히 겸업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 과 분리주의를 택하고 있는 나라들간에 금융산업구조의 개혁 방향에 있어 수 령현상을 보이고 있다. 소비자들을 위한 'one-stop shopping'이 바로 이들 국가들이 지향하고 있는 목표인 것이다.

자본이동의 자유화는 환율을 국내외 경제정책의 차이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만들어 국제적인 상호 의존관계를 심화시켰다.

11) F. Mishikin, "Symposium on the Monetary Policy Transmission Mechanism,"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9:4, Fall 1995, pp. 3~10 참조.

12) N. Funke, "Vulnerability of Fixed Exchange Rate Regimes: The Role of Economic Fundamentals," *OECD Economic Studies*, 1996, pp. 157~176에서 이러한 시장의 과민 반응이 1992년 EMS의 환율위기를 불러왔다고 설명하고 있다.

13) Malcolm Edey and Ketil Hviding(1995), *op. cit.* 와 OECD, *Competition in Banking*(Paris:OECD, 1989) 참조.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의
원인으로는
유러달러시장의 발달,
국제은행서비스에 대한
수요증가, 1970년대
선진국들의 경제불안
등을 들 수 있다.

자유화와 함께 건전경영감독에 있어서도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다. 자본을 정의하고 평가하는 방법의 개선, 자기자본의 충분도를 계산하는 공식의 개발, 최소자기자본 비율의 설정, 증권중개기관에 대한 자본기준 설정, 증권의 청산과 결제 제도 개선, 회계 및 감사 기준의 개선, 내부자 거래를 비롯한 시장 조작에 대한 감독 강화 등이 이루어졌다¹⁴⁾.

한편 금융산업을 소비자 위주로 개편하는 과정에서 합병 등을 통하여 금융서비스의 공급이 소수의 대형금융기관에 집중되는 현상이 아울러 나타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선택권 향상과 금융서비스의 집중이 가져오는 종합적인 효과는 사회적 후생의 증가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1. 세계적 금융자유화의 발단

세계적인 금융자유화의 움직임을 가져온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첫째, 유러달러시장의 발달이다. 유러달러시장에서는 Regulation Q¹⁵⁾가 적용되지 않아 이자율에 대한 규제가 없으므로 이를 이용하여 미국의 은행들이 규제를 회피하였으며, 다른 나라의 은행들도 자국에서는 금지된 금융활동을 영위할 수 있었다. 둘째, 다국적 기업의 산업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국제은행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다. 셋째, 브레튼우즈 시스템의 붕괴와 석유파동에 의해 1970년대 선진산업국들의 거시경제가 불안정했던 것도 국제화를 촉진시킨 요인이다. 자금이동에 대한 환율의 탄력성이 커졌고, 석유달러를 순환시키는 데 은행이 주도적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공공부문 및 국제수지에 있어서 불균형이 나타나 국경을 넘어 자금의 조달 및 공급이 이루어지게 하였다.

2. 각국의 금융자유화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걸쳐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은 은행의 이자율 관리를 철폐하였다. 이들을 필두로 다른 나라에서도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었다.

1975년 5월 1일 미국 뉴욕 증권거래소는 주식거래의 고정수수료를 폐지하

14) William D. Coleman, *Financial Services, Globalization and Domestic Policy Change: A Comparison of North America and the European Union*(London: Macmillan Press Ltd, 1996) 참조.

15) Regulation Q는 미국의 대공황기에 은행의 도산이 만연하자 그 원인이 경쟁적인 고율의 예금이자 지급에 있다고 보고 예금이자 지급에 상한을 둔 규정이다.

였다. 이는 주식을 대량 거래하는 기관투자자들의 반발과 거래소간의 경쟁, 감독당국의 노력의 결과이다. 이어서 1980년대에 Regulation Q를 점진적으로 폐지함에 따라 미국내에서 종합적인 금융혁신이 일어났고, 그 여파로 북유럽, 오세아니아를 시작으로 유럽, 일본에서도 금리자유화가 진전되어 1990년대 들어서서는 거의 모든 이자율규제가 철폐되었다.

1933년에 제정되어 은행업과 증권업을 엄격히 분리하던 Glass-Steagall법의 완화추세도 나타나기 시작하여 1987년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는 3개의 은행지주회사에 증권발행업무를 허용하였다. 1989년초에는 5개의 은행지주회사에 허용하였고, 1995년 봄 현재 30개의 국내외은행 자회사들이 증권발행업무를 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1970년대 중반부터 금융서비스의 자유화가 추진되었으나 매우 늦은 속도로 진행되다가, 1984년 미국과의 협의에 의해 엔·달러위원회가 구성된 후 본격적으로 진전되었다. 구체적으로 국제은행업무, 해외채권발행, 외환거래, 해외채권매수, 외국금융기관의 일본시장진입, 예금 이자율 상한 철폐, 단기 자금시장의 육성, 은행과 증권업의 구분 완화 등의 측면에서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1988년부터는 증권거래법의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 개정을 통하여 새로운 주식의 발행과 등록을 쉽게 하고 공시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내부자 거래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였다. 1992년의 금융개혁법의 개정에 의하여, 승인된 증권회사가 증가하였고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의무가 면제되어 기관투자자의 사모사채 발행이 쉬워졌다. 또한 은행과 증권딜러의 기능에 대한 구분이 완화되었다.

영국에서는 1986년에 런던증권거래소의 고정수수료 철폐에서 비롯된 '빅뱅'이라 불리는 금융산업 개편이 있었다. 그 내용으로는 런던증권거래소에 전산거래시스템 도입, 다수의 외국 기관을 포함하는 영국 증권시장의 구조 재조정, 단일자격제도(single capacity dealer)의 폐지 등을 들 수 있다. 투자 및 보험업의 규제, 증권상장 및 비상장주식의 발행, 합병, 내부자 거래, 공시제도, 외국과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상호주의 등을 포함한 금융서비스법(Financial Service Act)도 1986년부터 발효되었다.

캐나다에서는 1986년 중반부터 금융서비스 업종간의 업무영역 구분을 철폐하고, 증권회사의 소유에 대한 제한을 폐지하였으며, 1992년에는 자회사나

1960년대 중반에서
1970년대 초반에 걸쳐
독일, 프랑스, 캐나다,
영국을 필두로 각국에서
이자율에 대한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산업에서의
경쟁이 촉진되었다.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통합안, GATS, NAFTA 등의 국제협약은 시장통합 및 자유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네트워킹을 통한 겸업은행의 설립을 허용하였다. 프랑스는 1987년부터 금융개혁('le petit bang')에 착수하여 감독권의 재편, 국내의 금융기관의 증권회사 주식보유 허용, 파생상품시장의 도입, 전자거래 및 결제제도의 도입, 국제시장의 정비, 국유은행의 사유화 등을 진행시켰다.

3. 자유화와 국제협약(양자간, 다자간 및 지역간 거래협약)

유럽연합의 단일시장 통합안, GATS, NAFTA 등의 국제협약은 개별 국가들이 독립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할 때보다 시장통합 및 자유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다.

EU에서 금융서비스에 있어서의 단일시장에 대한 진전된 논의를 보여 주는 것은 1988년의 '제2차 은행지침(Second Banking Directive: SBD)' 이다. 이 지침의 주요 내용은 '모국 통제(home country control)' 로서 은행감독의 일차적인 책임은 그 은행의 모국 감독기관에 있다는 것이다. 또한 '설립의 자유(freedom of establishment)' 원칙도 그 주요 내용인데, EC내에 설립된 어떠한 금융기관도 허용된 동일한 서비스를 다른 EC국에서 영위할 수 있다는 원칙이다. '상호 인정(mutual recognition)' 의 원칙은 모든 회원국들이 다른 회원국들의 은행법과 규정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모든 회원국들의 은행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금융서비스의 교환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의 경우는 외국증권회사의 진출, 자산관리 및 투자자문에 대한 원칙을 제시한 '투자서비스지침(Investment Services Directive: ISD)' 이 있다. ISD의 경우도 SBD와 같은 원칙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 밖에 EU는 1985년 11월 '공동투자증권지침(Directive on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을 설정하여 mutual fund 및 양도가능증서에 대한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¹⁶⁾.

GATS의 경우, 최혜국대우(MFN Treatment), 시장접근성 규정, 내국민대우(National Treatment) 원칙을 통하여 금융서비스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최혜국대우 규정은 서비스 제공에 대해 대상국과 다른

GATS 회원국간의 차별을 금지한다. 시장접근성 규정은 소비자와 공급자가 국외에 근거지를 갖지 않으면서 월경(cross-border)거래를 하는 경우, 수요자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국외로 나가는 경우, 공급자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외에 상업적 근거지를 설립하는 경우, 공급자가 국외에서 자연인으로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의 4가지 경우에 회원국들이 시장접근을 허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내국민대우는 GATS국가가 자국의 금융기관에 적용하는 기준을 똑같이 다른 회원국의 금융기관에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미국과 캐나다의 금융시장은 NAFTA 이전부터 긴밀히 연관되어 있었으나, 금융중개기관에 대해서는 캐나다의 규제가 심한 편이었다. NAFTA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에 설립권과 월경거래를 통하여 소비자에 대한 동일한 접근을 제공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회사 및 금융상품의 등록을 요구하고 있다. 감독권은 EU와 달리 주재국에 있으며, 협정에는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 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GATS는 최혜국대우, 시장접근성 규정, 내국민대우 원칙을 통하여 금융서비스의 교환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V. 규제완화의 잔존 장애요소

지금까지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규제완화에 있어 아직도 다음과 같은 많은 장애요소가 존재하고 있다. EU의 경우 외국(EU 비회원국) 금융기관의 지점 설립은 단일취급조항(single passport provision)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각 회원국의 개별적인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은행 외에는 외국은행의 프랑스 자회사만이 프랑 표시 증권발행의 주간사 회사가 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 mortgages나 지방채 발행, 투자펀드관리, 위탁서비스 등은 그러한 목적으로 허가받은 특수은행만이 할 수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은행 이외의 기관이 증권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증권회사를 별도로 설립해야 한다. 네덜란드에서는 EC 회원국에서 설립된 회사만 암스테르담 증권거래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그리스, 덴마크, 벨기에, 스페인 등은 자국에서 설립된 회사를 통해서만 증권거래를 할 수 있다.

특히 국제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 앞으로 해결되어야 할 잔존 장애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공식적인 규제에 의한 장벽 둘째, 사업관행 등에 따른 비공식적인 장벽 셋째, 투자자금에 대한 각국별로 상

16) OECD, *International Trade in Services (Securities)* (Paris: OECD, 1987) 참조.

국제투자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있어서는 공식적인 규제로 인한 장벽, 사업관행 등에 따른 비공식적인 장벽, 투자자금에 대한 각국별로 상이한 과세제도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이한 과세제도가 그것이다¹⁷⁾. 공식적인 규제로 인한 장애요소로는 조직상의 차이(organisational issues), 내국인 관리자의 채용과 내국인 소유 의무, 자기자본 기준, 공시 및 등록 등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의 결여 등을 들 수 있다. 조직상의 차이의 예로서는 미국과 영국의 mutual funds의 법적 형태가 다른 것을 들 수 있다. 영국은 신탁 구조를 갖고 있는 데 비하여, 미국은 일반법인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투자자보호를 위해 독립적인 이사회조직을 요구하는 등의 규정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 미국 및 독일의 공시 및 등록제도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까다롭다. 미국에서는 SEC와 CFTC의 두 감독기관간의 공조가 충분하지 않음으로써 파생상품의 월경거래가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규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은데, 특히 신상품분야에서의 규제가 모호하며 연금관리에 외국인의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사업 관행의 차이에서 오는 장애요소로는 회계제도, 외국인에게 지급되는 배당세의 원천과세, 구식시스템을 사용하는 데서 오는 행정적 부담, 상이한 수익률 성과 측정 방법, 시장원리에 따르지 않는 거래 수수료 등을 들 수 있다.

투자자금에 대한 상이한 과세제도의 예로는 mutual funds 수익에 대한 과세처리를 들 수 있다. mutual funds의 수익에 대한 조세처리가 나라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적인 표준의 결여는 개인들로 하여금 주로 자기 나라의 펀드에 투자하게 만들어 국제적 거래에 대한 중요한 장애요소의 하나가 되고 있다.

Ⅶ. 금융규제 완화에 따른 문제점과 교훈

OECD 회원국들의 금융규제 완화와 더불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금융시장이 보다 불안정해질 수 있고, 가계부문의 부채가 급증하며, 부동산 및 주식 가격의 등락이 심해질 수 있고, 은행 부실채권 문제의 만연, 멕시코가 경험한 바와 같은 자본유입 후의 부채위기 등을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들은 자유화에 따른 내재적인 결과라기보다는 자유화 과정에서 다른 경제문제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생기는 결과라고 생각된다.

17) 이러한 장벽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Working Party on Barriers to International Portfolio Management, *Barriers to International Portfolio Management*(Paris:ICC, September 1994)에 나와 있다.

1. 금융시장 변동성의 증가

1980년대 초반 이래 달러를 비롯한 주요국 통화가치의 등락, 1992년 EMS의 환율위기, 주식 및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품현상 등은 규제완화와 더불어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증가한 듯한 인상을 주고 있다. 그러나 실증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증권시장의 변동성이 규제완화에 따라 증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¹⁸⁾. 채권시장의 변동성은 1980년대에 가장 컸다가 1990년대에는 다시 감소하였고,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1980년대에 그 이전보다 증가하였으나 그 후 그다지 큰 변동이 없었다. 1987년에 있었던 세계적인 주식시장의 폭락에도 불구하고 파생금융상품의 발달은 기초시장의 평균 변동성을 감소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다.

Proctor & Gamble사나 오렌지군, 베어링은행 등이 막대한 손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규제완화나 파생금융상품 때문이라기보다는 내부 위험관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개별기업들의 문제는 규제완화 이전에도 있었으며, 다만 변화하는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반적 문제로 볼 수 있는 것으로는 1980년대와 1990년대 초의 은행 부실 채권 문제를 들 수 있겠다.

규제완화가 체계적으로 위험을 증가시킨다는 실증적인 증거는 아직까지 없다. 다만 드물기는 하지만 잠재적으로 그 여파가 매우 큰 시장혼란(market disruption)이 규제완화에 의하여 발생할 위험성이 증가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단정적으로 말하기 힘들다고 하겠다.

2. 개인 채무 증가와 자산가격의 '거품현상'

대부분의 OECD국가들에서 1980년대에 금융자유화과정을 통하여 개인 및 개별 기업의 부채/소득 비율이 증가하였다. '금융 심화(financial deepening)'의 과정에서 금융상품이 다양해지고 편리해짐에 따라 개인 및 기업의 금융자산 소유 비율이 상승하였고, 이렇게 소득에 대한 금융자산의 비중이 높아지자 부채를 얻을 수 있는 능력도 커졌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 불황이 닥치자, 이러한 부채의 누적은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규제완화가 금융시장의 변동성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는 없다.

18) P. Anderson and W. White, "The Macroeconomic Effects of Financial Sector Reforms: An Overview of the Industrial Economies." A paper presented at the OECD Conference on Interactions between Structural Reform, Macroeconomic Policies and Economic Performance (January 1996)와 Edey and Hviding(1995), *op. cit.* 등 참조.

1980, 90년대 OECD 국가들이 경험한 은행 부실채권 문제는, 호황이 장기간 지속될 때는 건전 경영감독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미쳤다. 1980년대에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핀란드 등의 국가에서 투기적인 부동산 투자의 증가가 이루어졌고, 1990년대 들어 거품이 걷히고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기 시작하자 이자율 상승과 동반하여 불황의 골이 더욱 깊어졌다. 미국, 프랑스, 호주 등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금융규제 완화에 전적으로 그 원인을 돌릴 수는 없고, 조세유인과 함께 과도하게 팽창적인 거시정책이 지나친 차입(leveraged) 투자를 부추긴 결과라고 하겠다.

3.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

1980년대와 1990년대 들어서면서 대부분의 OECD국가에서 은행의 부실채권 문제가 만연하였다. 미국의 저축대부조합 위기(S&L crisis)를 위시하여 미국, 영국, 일본, 북유럽국가, 스페인, 호주 등의 상업은행들도 1990년대 초반 부동산 담보부 대출의 부실화에 의한 어려움을 겪었고, 이러한 위기는 대형은행의 결제능력을 손상시키고 몇몇 국가에서는 정부에서 금융기관을 인수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예금보험 및 인수 처리에 소요되는 정부의 지출이 미국, 노르웨이에서는 GDP의 3%, 스웨덴과 핀란드의 경우는 GDP의 5~7% 정도에 이르고, 일본의 경우도 납세자의 부담이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규제 완화는 이러한 사태에 부분적이며 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근본적인 원인은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차입 투자인데, 규제완화가 이러한 투자재원의 조달을 쉽게 만들어 준 측면이 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은행들이 부동산 가격이 이미 최고수준에 달한 단계에서도 왜 계속해서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 주었는가 하는 점이다.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와 'Too big to fail' 이론이 이 문제를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사태를 과거의 경험과 함께 고려해 볼 때,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하고 개별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스스로의 위험을 평가·관리하도록 하는 건전 경영감독이 호황이 장기간 지속될 때는 제대로 기능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4. 국제적 자본이동

개발도상국의 외채 위기 이후 1980년대 후반부터 개발도상국으로의 국제적인 자본이동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1993년에 자본이동이 정점에 이르러 개도국에 대한 순자본유입액이 그들의 총GDP의 3%에 육박하였다. 그러나 1994년의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에 이러한 자본이동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성, 특히 핫머니(hot money)라 불리는 단기성 자금의 위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최근의 국제부채 문제는 1980년대 초의 부채위기 때와 마찬가지로 국제자본시장에의 접근이 그만큼 쉬워졌음을 부각시키고 있다. 부채의 증가는 대체로 팽창적인 국내거시정책과 은행에 대한 당국의 불충분한 감독에 기인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금융시스템은 나름대로 외부충격에 대한 복원력을 갖고 있어 위기가 지나면 서서히 제 기능을 회복한다. 이러한 복원력은 규제완화에 근거한 시장 혁신에서 오는 것으로서 증권화, 개도국 주식시장의 발달,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멕시코 외환위기 이후 국제적 자본이동의 지속 가능성 여부와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위험성, 단기성 자금의 위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5. 다른 정책과의 연계성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규제완화에서 비롯되는 비용과 위험은 그 편익에 의해 충분히 상쇄된다. 다만 이러한 편익의 효과가 극대화되고, 비용이 극소화되기 위해서는 다른 정책과의 보완적인 관계가 고려되어야 한다. 금융규제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일부 부정적인 효과는 사실상 다른 분야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유인(incentive)의 왜곡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인플레이율이 높거나 정부가 지나치게 팽창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을 경우에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극단적 금융화 현상(financial excesses)'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규제완화가 많이 진척된 나라(예를 들면 미국)에서 발생하는 금융문제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성이 규제완화가 덜 이루어진 나라의 경우보다 적다는 데서도 찾아볼 수 있다. 즉 규제완화의 정도와 금융문제의 경제적 파급효과는 비례하지 않는다.

규제완화는 동시에 금융시스템의 안정성과 시장의 효율적인 기능을 위한 감

금융규제 완화가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다른 분야의 개혁이 동시에 진행되지 않음으로써 경제적 유인의 왜곡이 일어나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독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특히 도덕적 해이는 규제완화가 과도한 위험을 불러올 기회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고려해야 할 문제이다. 또한 호황기에 과도한 투자가 일어나는 경향이 있고, 이러한 시기에는 감독 당국이 건전경영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경험이 여러 차례 있다. 감독당국은 보다 복잡한 금융상품과 전략들을 대하게 되었으며, 정보력에 있어서도 피감독자보다 떨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규칙과 지침보다는 시장 유인에 의하여 개별 기관이 스스로의 위험을 평가하고 관리하게 하는 건전경영감독의 방향이 강조되어야 하며, 감독기관간의 공조체제의 구축이 필수적이다.

Ⅷ. 요약 및 결론

OECD국가의 금융산업에서 많은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 이자율에 관한 직접적인 규제, 신용할당에 대한 규제, 금융기관 판매상품에 대한 규제 등이 거의 제거되었으며, 국가전략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직접 투자를 제외한 OECD국가간의 자본이동이 자유로워졌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장애요소들이 남아 있는데, 금융기관별로 영위할 수 있는 영업의 종류에 대한 제한, 국가별로 서로 다른 과세체계, 외국금융기관의 진입제한(부분적)과 중복감독의 경우 감독기관간의 협조부족으로 발생하는 진입규제 등이 그 예이다.

금융산업의 규제완화는 국내외 금융환경에 돌이키기 힘든 변화를 가져왔다. 규제완화가 가져온 주요한 이득으로는 금융부문의 생산성의 증가, 비용 절감, 금융상품과 서비스의 다양화 등이 있다. 그러나 금융규제 완화는 동시에 예전의 간단하고 통제 가능한 정책의 입안과 집행을 어렵게 만들었다. 역사적으로도 불안정한 거시경제 환경과 생산물 및 요소시장에서의 심각한 왜곡현상이 있을 경우, 금융개혁은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음을 보아 왔다. 금융개혁은 물가안정, 재정적자 축소, 생산물 및 요소시장에서의 왜곡현상을 시정하는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충분한 시장관리, 개별 기관의 위험관리, 공시제도의 개선, 부문별 감독의 조화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의 분석에 의하면 금융개혁 자체가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만들지는 않으나, 다른 정책들과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금융개혁과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다.

OECD에서 제시하는 추가적인 금융산업에서의 규제완화를 위한 지침(guidelines)은 다음과 같다.

① OECD국가들의 경험은 신규회원국이나 기존의 회원국 그리고 비회원국에 있어서도 규제완화를 통하여 상당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점을 알려 준다. 이는 가장 효율적인 금융체제는 가장 자유화된 체제에서 나오는 경향에서 확인된다.

② 금융개혁이 상당한 수준으로 이루어진 나라에서도 잔존하는 제한 규정들을 완화하여 외국기관의 국내진출과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포트폴리오 투자를 허용하면 추가적인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

③ 정보망과 컴퓨터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구조와 경쟁의 문제가 규모와 장소의 문제보다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기관들로서는 금융서비스 산업에 있어서 컴퓨터 및 통신기술에 의한 시장접근과 경쟁에 따른 집중의 결과에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④ 금융시장의 구조와 경쟁적 환경을 변경시킬 책임이 있는 당국으로서는 그러한 정책의 산물과 다른 정책 특히 건전경영감독과의 필수적 연관관계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수한 인적자본을 공공부문에서 확보할 필요가 있다.

⑤ 금융시장이 지속적으로 진화·발전함에 따라 건전경영감독에 적응하고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과 금융시장의 유인이 근본적인 경제적 조건과 확실한 조화를 이루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금융서비스산업의 감독자들이 극단적인 현상을 미리 인식하지 못하는 일이 과거에 반복하여 발생하였다. 금융감독당국의 책임은 항상 기본적인 경제상황 속에서 금융시장을 파악하는 데 있으며, 자유화의 결과가 오히려 문제를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미리 인지할 수 있는 조기경보체제를 개발해야 할 것이다.

OECD 회원국들의 금융산업 규제완화의 경험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교훈을 주며, OECD가 제시한 규제완화의 방향에 대한 지침도 기본적으로 우리 나라에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겠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있어서는 과거 우리의 금융산업 전반에 걸친 법규, 제도 및 관행 등이 구미 선진국과는 다른 측면이 많았던 사실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즉 앞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해 나가

금융개혁은 물가안정, 재정적자 축소, 생산물 및 요소시장에서의 왜곡현상을 시정하는 다른 정책들과의 연계 속에서 조화를 이루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

금융산업에서의 규제 완화와 진전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건전경영감독과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는 데 있어서 우리의 고유 상황과 국제적인 정합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것이 정책당국과 금융산업 전반이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하겠다.

금융산업에서의 규제완화가 진전됨에 따라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기하기 위한 건전경영감독과 체계적인 감독 시스템의 중요성은 재삼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감독시스템이 발달되어 있는 선진국에서조차 장기간의 호황기에는 건전경영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던 사례는 감독당국이 반드시 명심해야 할 교훈이다. **KDI**



정책토론투리포트

○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 이 원고는 1997년 3월 28일 은행연합회 2층 국제회의실에서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을 주제로 한국조세연구원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의 요약입니다. - 편집자 주 -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정영현/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전영준/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I. 금융실명제의 목적과 주요내용

1. 금융실명제의 목적 및 취지

○ 금융실명제는 경제주체의 많은 경제행위 중 금융거래, 그것도 공적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에 있어 거래자의 실지명의로의 사용을 의무화한 제도임. 따라서 개인상호간, 기업상호간, 개인과 기업간의 금융거래와 실물거래는 금융실명제의 대상이 아님.

○ 금융실명제의 목표는 금융거래의 투명성 확보와 조세의 형평성 제고를 통한 경제정의의 실현이라 할 수 있음.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경제정의의 실현이 나타나게 되는 경로는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경제적 신분의 세습억제, 불로소득 및 투기의 원천적 봉쇄, 부정부패의 감소 그리고 금권정치의 청산과 깨끗한 정치풍토의 조성으로 요약될 수 있음.

○ 금융실명제는 무기명이나 가명이 아닌 본인의 실지명의로 거래하게 하여 필요한 경우에 거래

자를 밝혀 음성적인 금융거래와 비공식적인 자금관리로 오랜 세월을 걸쳐 흐트러진 우리나라의 금융질서를 바로잡는 데서 출발함. 이렇게 하여 사회형평의 기틀을 마련하면서 경제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금융실명제의 주된 의의가 있음.

○ 금융실명제는 자본주의 경제운영과 관련된 하나의 중요한 경기규칙(rule of game)임. 금융실명제가 포함되지 않은 경기규칙으로 운영된 우리 사회전반의 경기운영 결과가 사회적 비리 또는 대형금융사고의 빈번한 발생 등의 문제를 야기시킨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금융실명제가 포함된 새로운 경기규칙을 도입하여 사회전반을 운영해 보자는 것이 원래의 도입 취지임.

○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경제정의의 실현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은 아님. 관행에 의해서든 법률 등에 의해서든 금융실명제가 실시 정착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경제정의가 더 잘 실현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음으로써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경제정의의 실현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

는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경제정의 실현의 하나의 필요조건이지 충분조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식할 때, 즉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경제정의 실현을 자동적으로 보장해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금융실명제 실시와 더불어 경제정의 실현할 수 있는 각종 제도와 정책을 별도로 강구해야 경제정의가 실현됨을 인식해야 함.

○ 따라서 금융실명제는 반드시 정착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금융실명제의 근본 목적을 훼손하는 어떠한 정책도 수용되어서는 안됨. 금융실명제의 원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조세제도, 공정거래법, 정치자금법, 자금세탁방지법, 공직윤리법, 형법 등 관련제도를 금융실명제를 보완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조화시키고 제정·정비하는 것이 필요함.

2. 금융실명제 추진의 역사

○ 정부는 1993년 8월 12일 20시를 기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재정경제명령」(이하에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으로 함)에 의하여 금융실명제를 전격 실시하였음.

- 1982년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도 격렬한 찬반 대립 속에 금융실명제는 10여년 이상의 오랜 기간 동안 실시되지 못하고 논란만 진행되어 왔음.

- 금융실명제는 고도성장 과정에서 왜곡되어 왔던 우리 경제 사회구조의 본질을 개혁하기 위한 제도로써 이의 실시가 초래하는 긍정적 또는 부정적 파장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에 몇 차례 실시가 유보되었음.

○ 많은 시행 착오와 우여곡절 끝에 실시된 금융실명제 추진과정의 역사는 다음과 같이 정리될 수 있음.

- 1961년 7월 : 「예금 적금 등의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실명이든 비실명이든 모든 예금 적금 등에 관한 거래내용에 대하여 명문으로 비밀을 보장함.

- 1982년 7월 : 「금융실명거래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방침」을 발표(7·3 조치)

- 1982년 12월 : 「금융실명거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그 실시는 유보

- 1983년 7월 :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단계별 차등중과세 실시

- 1988년 10월 : 1991년 1월부터의 전면 실시 계획 발표

- 1989년 4월 : 재무부에 금융실명거래실시준비단 설치 등 행정준비

- 1990년 4월 : 경제여건 악화를 이유로 실시 유보발표

- 1992년 10월 : 금융실명제 실시를 대통령선거 공약으로 약속

- 1993년 8월 12일 :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 실시

3. 금융실명제(긴급재정경제명령)의 주요 내용

○ 1993년 8월 12일에 실시된 금융실명제를 뒷받침하는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자세한 내용은 <부록 1> 참조).

- 첫째,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 사용의무를 규정
- 둘째,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를 규정
- 셋째,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을 강화

가.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 사용의무

○ 1993년 8월 12일 이후에는 은행을 비롯하여 증권·보험·투자신탁·투자금융·농협 등의 단위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등 모든 금융기관과 거래를 할 때 반드시 실지명의를 사용해야 함. 그러나 실명사용의 대상이 되는 거래는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에 국한됨.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은 개인간의 거래까지 실명거래 의무를 부여하지 않은 이유는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금융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규정만으로도 소기의 목적달성이 가능하고,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 개인간의 사적거래까지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는 것은 계약자유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임.

○ 실지명의 사용 여부는 금융기관이 실명확인 증표를 이용하여 확인토록 하였는데 개인은 성명

과 주민등록번호에 의해 그리고 법인은 법인명과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로 실명임을 확인 받음. 실명확인증표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등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증표이며, 법인이나 각종 단체의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발급한 사업자등록번호(납세번호증) 또는 고유번호 발급사실 통보문서 등이 해당됨.

○ 이와 함께 실명거래 의무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이를 위반한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위반행위가 발생한 해당 금융기관에 대해서도 이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나 감독을 하지 않은 때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나. 기존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 금융실명제는 미래지향적인 취지에서 실시된 것으로서 과거의 잘못을 들춰내어 책임을 묻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음. 다만, 지금까지 성실하게 세금을 부담해 온 선량한 예금주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기존 비실명자산에 대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음.

(1) 비실명에 의한 자금인출 금지

○ 금융실명제 실시일 현재 계좌가 개설되어 있는 모든 금융자산의 명의인에 대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최초로 금융거래를 하는 때에 그 명의가 실명인지의 여부를 확인받도록 하고 실명확인절

차를 거치지 않았거나 비실명으로 확인된 자산은 인출을 금지함.

(2) 실명전환 의무기간의 설정

○ 금융실명제 실시일로부터 2개월간의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년 8월 12일~1993년 10월 12일)을 설정하여 기존 비실명자산의 거래자가 이 기간중에 그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도록 하였음.

(3)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실명전환된 금융자산에 대한 조치

○ 실명전환 의무기간 동안 기존 비실명자산의 실명전환을 유도하기 위하여 동 기간중 실명전환되는 금융자산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였음.

○ 첫째, <표 1>에서 보듯이 실명전환 계좌별로 다음 금액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함.

<표 1> 자금출처조사 면제기준

대상	간금명령 제6조
20세 미만(미성년자)	1,500만원 이하
20세 이상 30세 미만	3천만원 이하
30세 이상	5천만원 이하

○ 둘째, 실명전환으로 인하여 상법, 증권거래법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을 위반하게 되어 벌칙 또는 행정제재의 대상이 되는 경우 1년 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시정한 때에

는 해당 법률에 의한 벌칙이나 행정제재규정의 적용을 1년간 면제함. 예를 들어 실명전환으로 증권거래법상의 주식소유제한규정인 상장 당시 비율 또는 10% 대량소유규제의무를 위반하게 되는 경우에도 1년 내에 당해 위반사항이 시정되는 때에는 처벌을 면제함.

○ 셋째, 종전의 실명형태, 예를 들어 차명으로 예입된 금융자산의 거래자가 종전 명의를 본인의 실명으로 전환할 때에는 과거 5년간 부족하게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추징함. 즉 일반저축의 경우에는 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20%(주민세 포함 21.5%)와 비실명 금융자산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60%(주민세 포함 64.5%)의 차이만큼, 세금우대저축의 경우 비과세 또는 5%의 세율을 적용하므로 동 세율과 20%(주민세 포함 21.5%)의 차이만큼 소득세를 추징함. 이는 소득과세의 형평성 제고를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4) 실명전환 의무기간 경과 후에 실명으로 전환하는 자에 대한 조치

○ 첫째, 경과기간에 따라 금융실명제 실시일로부터 매년 10%씩 최고 60%(증여세 최고세율 수준)의 과징금을 부과함. 과징금은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에 기존 비실명자산의 명의를 실명으로 전환하는 거래자에 대해 부과되는데, 금융기관이 당해 금융자산가액에 <표 2>에 제시된 징수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후 원천징수하고 이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토록 하였음.

〈표 2〉 과징금 징수비율

경과일수	징수율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1년까지	금융자산가액의 10%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1년 초과~2년 이하	금융자산가액의 20%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2년 초과~3년 이하	금융자산가액의 30%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3년 초과~4년 이하	금융자산가액의 40%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4년 초과~5년 이하	금융자산가액의 50%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일로부터 5년 경과 후	금융자산가액의 60%

주 : 과징금은 당해 금융자산에서 원천징수함.

○ 둘째, 실명전환 의무기간 경과 후(1993년 10월 13일 이후) 비실명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배당소득에 대한 차등과세율을 종전 64.5%(소득세 60%, 주민세 4.5%)에서 96.75%(소득세 90%, 주민세 6.75%)로 인상하여 적용함.

(5) 고액 현금인출 등의 국세청 통보

○ 첫째, 실명전환 의무기간중 현금(자기앞수표 포함) 순인출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의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여 특별관리함으로써 자금이 불필요하게 유동화되는 것을 억제함.

○ 둘째, 실명제 실시일 이전에 발행된 채권, 수익증권 및 양도성예금증서 등을 금융기관에 예탁하지 않고 실물로 직접 보유하는 자가 금융기관과 매매, 원리금 상환 등의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점포별 월거래금액이 5천만원 이상인 때에는 그 내용을 국세청에 통보하여야 함. 단, 3개월 이상 금융기관에 예탁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실물거래를 하는 경우는 제외함.

다. 금융거래정보의 비밀보장 강화

○ 실명제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금융거래정보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아 긴급재정경제명령에서는 그 제목에서도 나타나듯이 비밀보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음. 또한 금융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금융기관은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않고서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할 수 없도록 하였음.

○ 이러한 금융기관의 금융거래 비밀준수의무 조항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음(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1항). 첫째,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둘째,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질문 조사를 위하여 소관관서의 장이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와 조세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을 제공하는 경우 셋째, 재정경제원 장관과 은행감독원장, 증권감독원장 및 보험감독원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검사에 필요한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넷째, 동일 금융기관 내부 또는 금융기관 상호간에 업무상 필요한 정보 등을 제공하는 경우 다섯째,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가 의무화된 것으로서 당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 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임.

○ 그러나 예외적으로 정보제공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정보 제공을 요청하도록 제한하고, 문서에 의해 점포별로 요구하도록 하는 등 절차를 명확히 하여 자의적인 정보제공 요구가 불가능하도록 하였음(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2항). 또한 부당한 정보제공을 요구받은 경우 금융기관 직원이 이를 거부하도록 의무화하고(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3항) 제공받은 금융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였음(긴급재정경제명령 제4조 제4항).

○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으로서 정보를 누설한 금융기관 임직원, 부당한 정보제공 요구자 및 업무상 지득한 정보의 누설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는데, 이 처벌은 병과가 가능함. 또한 행위자를 벌하는 것 이외에 사용주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해서도 벌금부과가 가능

하도록 하였음.

4.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

○ 1996년 12월 말 현재 실명예금의 실명확인율은 98.3%에 달하여 실명전환 의무기간이 종료된 1993년 10월 12일에 비해 17.0% 포인트 상승하였으며, 가명예금의 실명전환율은 98.8%에 달하고 있는 등 실명전환 의무기간 이후에도 실명확인 및 실명전환 실적이 꾸준히 높아져 거의 대부분 실명확인 또는 전환된 것으로 판단됨.

○ 1996년 12월 말 현재 실명예금 중 미확인액은 3조 2천억원이고, 가명예금 중 실명미전환액은 344억원임.

II. 금융실명제 보완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

○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해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어 약 3년 반이 지난 오늘까지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관련하여 성공여부와 보완여부를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음.

- 금융실명제가 외형적으로는 확실히 정착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각계 각층에서는 서로 다른 근거에 의해서 상이한 내용으로의 보완을 주장하고 있음.

- 주로 기업인과 정치권은 현행 금융실명제가 그 내용이 지나치게 강하므로 상당수준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여 온 반면 일부 식자층은 현행 금융실명제가 내용상 허점이 상당히 많으므로 좀더 강화

〈표 3〉 실명확인 및 전환실적

	단위	확 인 시 점				증감 (B-A)	
		1993.10.12 (A)	1994.8.12	1995.12.31	1996.6.30		1996.12.31 (B)
실명예금 :							
대상금액	조원 (백만좌)	405.4 (175)	405.4 (175)	405.5 (175)	405.5 (175)	405.5	
실명확인금액	조원 (백만좌)	329.5 (105)	382.9 (136)	396.6 (149)	398.0 (151)	398.7	+ 69.2
확인율 : 금액	%	81.3	94.5	97.8	98.2	98.3	+ 17.0
계좌	(%)	(59.7)	(77.6)	(85.0)	(86.0)		
차명예금의 실명전환	억원 (천좌)	34,755 (415)	34,932 (852)	35,136 (3,220)	35,210 (3,556)	35,922	+ 1,167
실명예금의 미확인액	조원 (백만좌)	72.4 (70)	19.0 (38)	5.4 (23)	4 (21)	3.2	- 69.2
가명예금 :							
대상금액	억원 (천좌)	28,342 (631)	28,342 (631)	28,417 (630)	28,417 (630)	28,417	
실명전환금	억원 (천좌)	27,604 (480)	27,808 (598)	28,046 (600)	28,059 (600)	28,073	+ 469
전환율 : 금액	%	97.4	98.1	98.7	98.7	98.8	+ 1.4
계좌	(%)	(76.1)	(94.8)	(95.2)	(95.2)		
미전환액	억원 (천좌)	738 (151)	534 (33)	371 (30)	358 (30)	344	- 394
가·차명예금의 실명전환총액	억원 (천좌)	62,379 (895)	62,740 (1,450)	63,182 (3,820)	63,269 (4,156)	63,995	+ 1,616

주 : 1996년 12월 31일에 작성된 통계에서는 계좌수에 대한 자료는 집계되지 않음.
 자료 : 재정경제원

계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여 왔음.

- 상당수 국민의 경우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경제정의가 실현되리라 기대했는데 현실에서는

크게 바뀐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음.

- 심지어는 구체적인 논리나 증거의 제시 없이 현재의 어려운 경제상황이 모두 금융실명제의 실시 때문에 야기되었다는 주장도 있음.

○ 금융실명제 보완 논의의 배경과 필요성을 다음의 여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음.

- 금융실명제 실시와 경제위기
- 금융실명제 실시와 과소비·저축감소
- 금융실명제와 국민 불편 및 비현실적 행정요소
- 금융실명제 실시에 의한 세무관련 불안감
- 지하자금의 양성화 및 산업자금화
- 한시적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항구적 법제화

1. 금융실명제 실시와 경제위기

○ 최근에 우리 경제는 성장둔화 및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라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바, 일부 사람들은 오늘의 경제위기가 금융실명제 실시에서 야기되었다고 주장하고 있음.

○ 1993년 8월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이후 1995년까지 우리 경제는 실명제 실시에도 불구하고 경기위축을 겪지 않고 지속적인 성장을 견지하여 왔음.

-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소폭의 물가상승과 무역량 증가세의 일시적인 하락이 있었으나 단기간에 안정된 수준으로 복귀함.

- 고용과 임금수준은 금융실명제와 관련하여 특별한 변화없이 기존의 경기변동경로를 따른 것으로 보임.

-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총통화에서 현금통화가 차지하는 비율이 일시적으로 증가한 바 있으나 지금은 원상으로 회복되어 8%의 수준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금리 또한 다소의 기복이 있었으나 최근에 와서는 안정적인 수준을 보임.

○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소폭의 경기하락을 초래하였으나 단기간에 경제가 정상의 경기변동경로로 회귀한 사실을 감안하건대, 금융실명제가 최근의 경제상황 악화의 요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움.

○ 성장 둔화, 물가 불안,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로 요약되는 최근의 우리 경제상황은 지난 3년간의 호황에 뒤이은 경기후퇴, 주력수출상품의 가격폭락과 엔저현상이라는 단기적 요인, 그리고 흔히 '고비용·저효율'로 표현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 등의 세 가지 요인이 일시에 작용한 데 기인한 것이지 금융실명제의 실시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 호황에 뒤이은 경기후퇴는 자본주의 경제의 내재적 현상으로 믿어지는 경기변동의 한 국면으로서 다분히 불가피하고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임.

- 주력수출상품의 가격폭락과 엔저현상이라는 단기적 요인 역시 상당부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외생적 요인임.

- '고비용·저효율'로 표현되는 우리 경제의 구조적 요인이야말로 우리 경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이며 향후 우리 경제가 극복해 나가야 하는 가장 큰 과제임.

○ 현재 우리 경제의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근본적 원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

- 지난 30여년간 성장 일변도의 경제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사회 전반에 깊숙이 뿌리내린 비실명 금융관행은 계층간 소득 및 세부담의 불균형을 심화시켜 근로의욕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임금인상요구를 유발하였음.

- 정부의 많은 개입과 규제는 시장의 의사결정 기능을 왜곡시켰으며 기업활동의 외부비용(external cost)을 유발하여 경제활동 의욕을 저하시킴과 동시에 경쟁력을 약화시켰음.

- 음성적 자금거래의 확대는 금융거래를 왜곡하여 높은 이자율을 초래하여 기업의 투자욕을 저하시켰음.

- 또한 정당하지 못한 자금이 부동산투기에 이용되어 부동산가격의 폭등을 초래하여 서민들이 내집마련 꿈을 포기하고 월세에 살더라도 자가용이나 사고 보자는 식의 좌절적 소비를 조장하였으며 기업의 고정비용을 증가시켰음.

○ 결론적으로 '고비용·저효율'로 표현되는 경제위기는 금융실명제 실시에서 비롯되었다기보다는 금융실명제가 과거에 보다 더 일찍 실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시장질서의 왜곡으로 초래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됨.

2. 금융실명제 실시와 과소비 저축감소

○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과소비가 조장되고 저축률이 감소되고 있다는 주장이 있는바, 이

에 대한 자세한 검토가 필요함.

○ 국내 총저축률은 경기순환에 따라 등락을 반복하면서도 꾸준히 증가세를 지속하였으나, 1987년 39.2%를 정점으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34.9%인 1992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음. 1996년의 경우 저축률이 다시 낮아져 34.6%를 시현하고 있는데 이는 금융실명제에 그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1995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경기부진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됨.

- 1988년 이후의 총저축률의 하락은 경제성장의 둔화 및 피부양인구비율의 하락에 기인함.

-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민간저축률의 하락이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소폭 하락하였으나 단기간내 안정세를 보였음.

○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는 자금이 제도금융권에서 이탈하여 부동산 투기자금 혹은 사채자금으로 사용되거나 해외로 도피할 가능성이 우려되었으나,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금융기관의 수신이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으며, 금융저축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에 반응·대응하여 이동한 자금은 미미한 규모임. 제도 금융권 내에서의 자금이동을 제외하고는 실물시장 등 금융권 밖으로의 자금이탈 혹은 자금의 해외도피도 거의 없었던 것으로 평가됨. 결론적으로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금융시장 및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었다고 판단됨.

- 1996년부터 발생하는 금융소득에 종합과세가 실시됨으로써 자금이동이 일어났다면 1995년 말과 1996년 초이었을 것임. 1995년 말~1996년 2월의 기간중 6조 5천억원 정도로 추정되는 규모의 자금이동이 있었으나 이러한 이동자금의 규모는 자금순환표 기준 1995년 9월 말 현재 개인보유 금융자산 잔액 442조원의 1.5%, 우리나라 금융시장 규모(비금융부문보유 금융자산 약 900조원)의 0.7%에 불과한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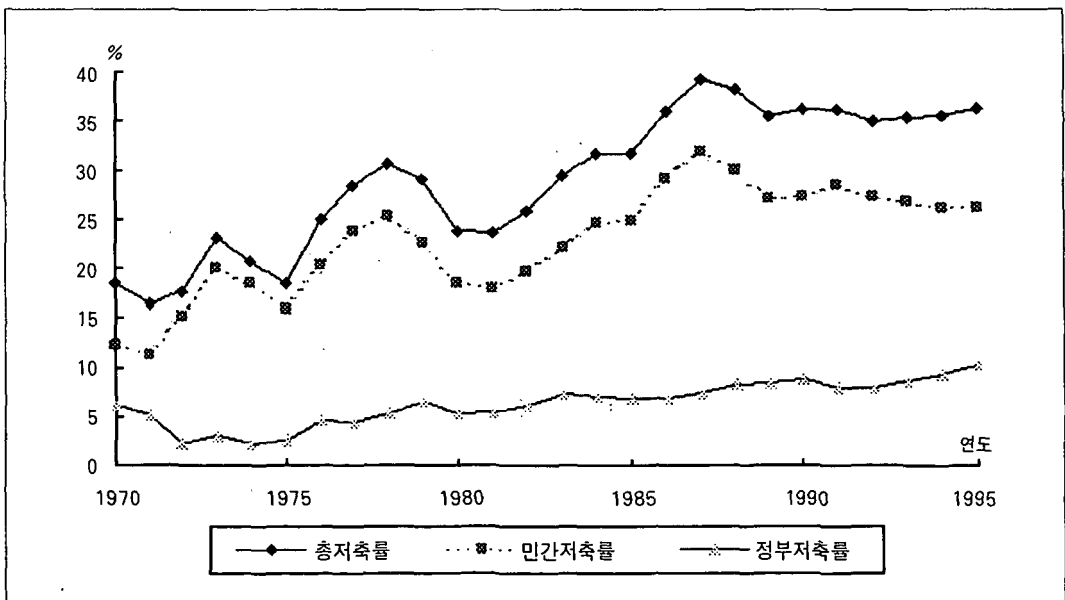
○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된 이래 줄곧 정부는 저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금융실명제 실시 이전에도 금융저축에 대하여 세제상 각종 혜택을 부여하여 왔는데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됨에 따라 금융상품에 대한 세제상의 특혜가 강

화되어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 금융상품은 내용과 종류가 확대되고 있음.

○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으로는 개인연금, 장기주택마련저축, 가계장기저축, 근로자 주식저축 등이 있고 분리 과세되는 것으로는 장기채권, 그리고 각종 세제우대저축이 있음.

○ 여기에 추가하여 정부는 새로운 세제지원 저축상품의 도입(근로자 우대저축, 상속증여세 면세 저축)과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 가입대상자를 확대하고 불입기간을 단축하는 안을 제시한 바 있음.

(그림 1) 저축률 추이(1970~1995)



○ 현행 제도하에서 비과세 상품의 구입한도는 근로자의 경우 월 383만원(연 4,600만원)이고 비근로자의 경우는 월 300만원(연 3,600만원)임.

- 비과세 상품 이외에도 세제지원이 이루어지는 금융저축의 내용은 <표 5> 참조.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조세유인이 가계저축을 부양하기 위해 사용되더라도 국민저축 증대효과는 미미하며 유인책으로 발생하는 정부 조세수입의 손실이 공공저축을 감소시켜 가계저축의 증가를 상쇄시킬 수 있다는 보고가 있었음.

<표 4> 금융소득 종합과세 관련 자금이동 내역

(단위 : 10억원)

자 금 유 출				자 금 유 입			
	1995 년중	1996. 1~2	계		1995 년중	1996. 1~2	계
은행 정기예금	500	50	550	은행 타익신탁	400	200	600
은행 CD	1,300	400	1,700	은행 특정금전신탁	600	200	800
투금 CP	1,500	400	1,900	투신 장기공사채형 수익증권	870	130	1,000
신용금고 정기예수금	400	50	450	증권 장기채권형 저축	1,200	200	1,400
기타(투금 CMA 등)	1,300	600	1,900	보험 장기저축성 보험	1,100	400	1,500
				채권 직접매입	830	370	1,200
합계	5,000	1,500	6,500	합계	5,000	1,500	6,500

자료 : 한국은행, 『자금순환』, 각 호.

○ 분리과세 장기채권의 경우 현행제도상으로 개인당 구입한도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

○ 최근 들어 금융실명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실시로 저축이 감소하고 소위 '과소비'가 촉발되고 있다는 주장은 이론적으로 타당성이 없으며 OECD 국가의 조세정책과 저축과의 관계에 관한 수많은 실증적 연구 결과도 세제가 저축에

-저축에 대한 조세유인이 가계저축 수준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는 반면 저축상품의 자산구성에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결론적으로 최근 민간소비가 바람직하지 못한 양태를 보이는 측면이 있으나 이는 우리 국민의 과시적 의식구조가 소득의 급증과 결부되어 나타난 것으로 이러한 현상을 금융실명제 혹은 금융

〈표 5〉 비과세 또는 세금우대가 되는 금융저축의 현황 (1997. 3 현재)

	1994.9.30 이전 가입자	1995년 말 이전 가입자	1996년 이후 가입자	가입한도
근로자장기저축	비과세 (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비과세	10%	월 50만원
근로자재산형성저축	비과세, 세액공제	20%	15%	월 12만원
근로자주택저축	소득세, 상속세 비과세폐지(1993.1.31)	주택자금상환액의 10% 세액공제	15%, 소득공제	월 15만원
주택청약저축	비과세(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비과세	10%	월 10만원
장학적금	비과세(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비과세	10%	200만원
국민주신탁	비과세(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비과세	10%	월 60만원이하
근로자장기증권저축	비과세(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비과세	10%	월 50만원
근로자증권저축	비과세, 세액공제	" , 세액공제	10%	연 216만원
소액가계저축	5% (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5%	10%	1,800만원
노후생활연금신탁	5% (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5%	10%	2,000만원
노후생활연금투자신탁	5% (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5%	10%	2,000만원
소액채권저축	5% (3년까지)	1995년 불입분까지 5%	10%	1,800만원
우리사주저축	5%, 세액공제 (")	" , 세액공제	10%	1,800만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장려금	비과세, 장려금	비과세, 1999년부터 10%	월 12만원
단위농·수·축협 ¹⁾	비과세	비과세	1997~1998 : 비과세	예탁금2천만원
신용협동조합 ¹⁾	비과세	비과세	1999 : 5%	출자금1천만원
새마을금고 ¹⁾	비과세	비과세	2000년이후 : 10%	출자금1천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비과세	비과세, 소득공제	월 100만원
개인연금저축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월 100만원
가계생활자금저축			10% 분리과세	1,200만원
가계장기저축			비과세(1996.10~)	월 100만원
근로자주식저축			비과세, 세액공제	1,000만원
계	23			

주 : 1) 예탁금 및 출자금, 분리과세 장기채권은 제외.
 자료 :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

소득 종합과세와 연관시키는 것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3. 금융실명제 실시에 의한 세무관련 불안감

○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 상당수의 국민들이 본인의 모든 금융거래 내역이 국세청에 통보되어 관리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불안해함으로써 금융기관을 통한 거래를 기피하는 등의 문제가 야기되고 있음.

○ 금융실명제는 문자 그대로 금융기관과의 금융거래시 실지명명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조치를 규정함과 동시에 금융거래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탈세 및 부정·비리 방지는 개별 세법 및 자금세탁방지법과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해 달성할 필요가 있음.

- 편법 상속·증여 및 과세자료 누락 등을 통한 탈세는 개별 세법의 규정을 통하여 차단하고

- 부정·비리의 방지를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자료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위한 금융소득 자료에만 국한하도록 하여 일반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는 조치가 필요함.

4. 금융실명제와 국민 불편 및 비현실적 행정요소

○ 금융실명제 실시 1년에 즈음하여 한국조세

연구원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금융실명제 실시로 인한 불편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아주 많았다고 응답한 사업자는 전체 응답자의 6.7%에 불과하고 몇 번(19.8%), 한두 번(16.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편 및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57.2%로 나타났다.

○ 또한 저축자를 대상으로 한 같은 설문에서는 불편이나 불이익을 경험한 적이 아주 많았다고 응답한 저축자는 전체 응답자의 3.0%에 불과하고 몇 번(26.1%), 한두 번(24.3%)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불편 및 불이익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한 사람이 무려 46.7%나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정부는 국민의 금융거래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명거래관행의 정착 정도를 참작하여 실명확인 절차를 지속적으로 간소화하여 왔음.

- 1994년 8월부터는 무통장입금(송금)의 경우 입금금액에 관계없이 입금의뢰서에 대리인의 실명과 본인의 실명(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기재하도록 하고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에 의하여 대리인의 실명만 확인하도록 하였음.

- 1995년 9월에는 변칙적 운용소지가 적은 1일 30만원 이하의 소액 송금시에는 본인의 실명(대리인에 의한 경우는 본인 및 대리인의 실명, 본인의 연락처, 관계 등) 기재와 본인의 서명에 의하여 실명확인에 갈음하도록 하였음.

- 그 이후 실명확인 절차를 더욱 간소화하여 지로고지서에 의한 납부금액이 30만원 이하로서 납부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가 인쇄된 경우에는 실명확인을 생략하도록 하였음.

○ 결론적으로 금융실명제로 인한 국민의 불편은 거의 없으며 조금 있는 불편도 금융실명제 실시 직후 실명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다소의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이미 그러한 불편은 상당부분 해소되었고 금융기관 이용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것도 이미 자연스러운 일이 된 것으로 판단되나 금융실명제의 근본을 확고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는 실명확인의 실익이 없는 부분에 한하여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이미 경과기간이 지나 적용을 하지 않고 있는 실명전환 의무기간중의 고액 현금인출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전 발행된 5천만원 이상의 채권·증권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하는 제도를 폐지하는 등의 비현실적 행정요소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5. 지하자금의 양성화 및 산업자금화

○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제도금융권 밖으로 이탈하여 경색된 소위 '장롱 속의 뭉치돈' 과 사채시장에서 운영되는 자금 등을 가능한 한 양성화하여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등 산업자금으로 활용되도록 유도할 필요성이 있음.

○ 소위 '장롱 속의 뭉치돈' 과 사채시장에서 운영되는 자금들은 속성상 외부의 노출을 꺼리는 자금임.

- 현금으로 퇴장되어 경색된 자금은 사치성 소비행위에 사용되거나 다른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되기 때문에 이를 제도권 금융으로 유입하여 산업자금화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충분한 유인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채시장에서 운영되는 자금들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로 사용되어 고수익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유인이 제공되지 않는 한 제도권 금융으로 유입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여신전문 금융기관을 신설하는 등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지하자금을 양성화하여 산업자금으로 활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기할 필요가 있음.

6. 한시적 긴급재정경제명령의 항구적 법제화

○ 금융실명제를 국회에서 법개정을 거쳐 실시할 경우 그 논의과정에서 실명을 꺼리는 음성자금을 중심으로 대규모 자금이탈이 발생하여 경제적 위기가 초래되고 그렇게 되면 금융실명제 실시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가 많았음.

○ 따라서 금융실명제 실시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실시가 불가피했음.

-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한 금융실명제 실시는

무엇보다도 비실명에 의한 자금인출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어 대규모 자금이탈에 따른 경제적 위기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판단되었음.

○ 금융실명제가 실시된 지 3년 반이 지난 현 시점에서 여전히 긴급재정경제명령 상태로 되어 있는 금융실명제를 정상 입법화함으로써 범형식상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제도로의 정착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7. 종합의견

○ 성장의 둔화와 국제수지 적자의 확대로 정리할 수 있는 최근 우리 경제의 어려움이 금융실명제 실시에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하고 이러한 측면에서만 금융실명제 보완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미래지향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본질은 유지하면서 금융실명제의 실시로 인해서 초래된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제거하고 실명확인 의 실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하자금을 가능한 한 양성화하여 중소기업지원 관련 자금 등 산업자금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음.

○ 또한 금융실명제가 추구하는 목적의 달성을 위해서는 대체입법을 통해서 항구적인 제도로 정

착시키고 세제 및 자금세탁방지법과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을 통한 공평과세의 실현과 부정 비리를 방지하는 방향으로의 보완이 필요함.

○ 이렇게 함으로써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하여 충분한 소모적인 논쟁을 빠른 시일 내에 적절한 방향으로 마무리하고 현재의 경제난을 타결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국력을 집결하여 국가의 장기적 발전 자체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Ⅲ.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발전방향

1.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의 기본방향

○ 제Ⅱ장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금융실명제의 정착과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확고히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보완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 금융실명제의 보완과 관련하여 1997년 3월 18일 정부가 발표한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음.

- 금융실명제 본질 유지
- 공평과세 구현을 위해서 세제를 중심으로 금융실명제 정비
- 금융저축 등 금융거래에 대한 세무관련 불안감 해소
-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 유도
-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체입법화 추진
- 부정·비리의 방지를 위해서 「자금세탁방지법」

의 별도 입법을 추진하여 금융실명제와 역할 분담

2. 금융실명제 정착과 발전을 위한 세부시행방안

가. 금융저축 등 금융거래에 대한 세무관련 불안감 해소

- 종합과세 최고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 허용
- 금융기관의 과세자료 통보는 금융소득 자료에 국한하고 고액 현금인출통보 및 자금출처조사 관련 규정 삭제
-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엄격한 준수

나.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 해소

- 실명의무화해도 실익이 없는 거래의 실명확인 배제 등 실명거래 대상의 합리적 조정.

다. 지하자금의 산업자금화

- 차명거래자금 및 퇴장현금 등의 양성화가 필요한바, 중소기업 자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관련 출자자금 등에 대하여는 한시적으로 일정 수준의 부담금을 부과한 후 자금출처조사 면제.

라.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체입법화 추진

- 긴급재정경제명령 상태로 되어 있는 금융실

명제를 정상 입법화함으로써 범형식상의 불안정한 상태를 해소하고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을 추진함.

마. 금융실명제 관련 제도의 정비

- 부정·비리의 방지를 위해서 자금세탁방지법을 새로이 제정하여 금융실명제와의 역할을 적절히 조정함.

바. 금융실명제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한 인식 제고

- 금융실명제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해서 일부 국민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이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3. 금융저축 등 금융거래에 따른 세무관련 불안감 해소

가. 최고세율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 허용

- ◆ 현행 5년 이상 장기채권 및 장기저축에 대해서만 분리과세를 허용(5년 이상 채권 및 저축 : 30%, 10년 이상 채권 : 25%)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모든 금융소득(이자·배당)에 대해 소득세 최고세율(40%)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

- 본 정책방안을 제시한 목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대상자가 되면 과세당국(국세청)으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막연한 우려로 인해 금융기

관 이용을 기피하거나 차명거래를 하는 저축자들의 불안함을 해소해 줌으로써 실명에 의한 금융거래를 유도하고 지하자금을 제도권으로 흡수하는데 있다고 판단됨.

○ 그러나 본 정책의 핵심은 이러한 금융상품에 유입되는 자금에 대한 자료를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음.

○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할 경우 : 이 경우에는 최고세율(40%)에 분리과세의 선택을 허용하더라도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어 자금출처조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판단됨.

- 왜냐하면 제도권 밖에서 현금화되어 경색된 자금이나, 차명을 통해서 운영되는 자금이나, 실명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자금(3조 2천억원 : 상당수의 휴면계좌가 포함되어 있음) 중 일부는 자금출처조사를 기피하려는 자금들이기 때문임.

○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 이 경우에는 상당규모의 자금이 이 금융상품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음. 이 금융상품에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자금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가 자신의 전소득이 합산 노출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기존의 금융자산을 분리과세로 선택

- 제도 금융권으로부터 퇴장되어 경색된 자금
- 절세 목적 이외의 차명계좌로 유지되던 자금
-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될 자금

○ 종합과세 최고세율(40%)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하고 해당 금융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지 않을 경우 소득세제상의 공평과세 취지는 훼손이 되지 않음.

○ 그러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40%의 소득세를 부담하면 해당 금융자료가 국세청에 통보되지 않아서 자금출처조사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므로 편법 상속·증여의 수단으로 활용되어 상속·증여세에서 많은 문제점을 노정시킬 것이며 나아가 상속·증여세제의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이 높음.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40%)에 의한 분리과세 선택을 허용하고 자금출처조사를 원천봉쇄하면 세금 없는 부의 세습 등으로 인해 공평과세의 실현에 역행하는 심대한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편법 상속·증여를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임.

- 현재 피상속인에 한해서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하는 것을 상속인으로 확대
- 미성년자의 금융자산을 일괄 조회할 수 있게 함.
-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 일괄 조회 허용

나. 국세청에 통보하는 금융자료는 금융소득 자료에 국한

◆ 종합과세를 위한 금융소득자료 통보 이외에 일체 금융자료의 국세청에의 통보제도를 원칙적

으로 제거함.

○ 현행 제도하에서도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국세청에 통보되는 것은 금융소득자료에만 국한하고 있음.

- 그러나 이에 대한 홍보의 미흡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거래 내용은 모두 국세청으로 통보된다는 등 잘못된 통념이 존재하고 있음.

- 1993년 8월 12일 「긴급재정경제명령」에 의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할 당시 실명전환 의무기간(1993년 8월 12일~1993년 10월 12일)중에 한하여 예금이 제도금융권으로부터 대량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3천만원 이상의 현금(자기앞수표 포함)을 인출하는 경우 이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하였음.

- 그러나 국민들의 정상적인 금융거래까지 위축시키는 등의 문제로 인해 1993년 9월 24일 후속 조치시 이미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인출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하지 않도록 한 바 있음.

○ 따라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금융실명제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 국민들의 막대한 불안감을 최대한 해소하는 노력이 필요함.

다. 고액 현금인출통보 및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관련 규정 삭제

◆ 실명전환 의무기간중의 고액 현금인출 및 긴급재정경제명령 시행 전 발행된 5천만원 이상의 채권 증권거래의 국세청 통보제도 폐지

○ 고액 현금인출 및 채권 등의 거래내용 통보 조항은 이미 그 적용 여지가 사라졌으므로 대체입법시 삭제하고 잘못 알려진 자료통보제도를 확실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자 명의로 실명전환한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 본 방안은 대체입법시 긴급재정경제명령 제6조를 삭제하고 실명전환하는 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와 다른 과세자료에 의해 탈세혐의가 드러난 경우에만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는 방안임.

- 이는 금융실명제 실시 자체를 불평하는 계층의 불만사항을 해소하여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일부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 그러나 이는 이미 실명전환하여 자금출처조사를 받은 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

- 또한 이는 제도권 내에 있는 실명미확인액 3조 2천억원(계좌당 평균 16만 8천원)의 일부분이 실명전환과 동시에 제도권 밖으로 유출되어 현금으로 퇴장될 우려가 상당히 있으며 이 경우 개별 세법의 규정에 의해서 조사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게 됨.

◆ 실명전환에 따른 과징금 최고율(60%)을 하향 조정

○ 본 사항은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조 관련 사항으로, 과징금 최고율을 60%로 한 것은 1993

년 8월 12일 당시에 증여세 최고세율이 60%이었던 것을 참고로 하여 설정되었음.

○ 현재 상속·증여세법이 개정되어 최고세율이 45%로 당시보다 하향 조정되었으므로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체입법화하는 과정에서 과징금 최고율은 이에 상응하게 40% 또는 45%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제1안 : 40%

- 제2안 : 45%

○ 다만 현재까지 40%의 과징금을 물더라도 실명확인을 기피하는 자금(물론 여기에는 상당수의 휴면계좌가 포함되어 있음)에 대하여 과징금의 최고율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규범적 논의는 필요함.

라. 금융거래 비밀보장의 엄격한 준수

◆ 현행 금융거래 비밀보장제도는 지나치게 강하여 범죄수사 및 금융감독 등에 어려움이 많다는 주장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나 비밀보장 규정을 더욱 엄격히 해석하는 등 비밀보장이 잘 지켜지도록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함.

○ 금융실명제는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실명자의 신분 등 관련 정보가 국가기관을 포함한 제3자에게 공개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님.

○ 경제범죄행위의 차단을 위해서는 자금세탁 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고 내용을 충실히 할 필요가 있음.

4. 금융기관 이용에 따른 불편해소

○ 그동안 지침개정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실명확인절차를 간소화하여 불편 사항을 대부분 해소하였으나 추가로 간소화할 사항이 있으면 금융실명제의 취지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간소화할 필요가 있음.

○ 참고로 한국조세연구원이 금융실명제 실시 1주년에 즈음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국민들이 느끼는 불편은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따라서 조그만 불편의 해소를 위해 실명확인 절차를 간소화 또는 제외해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초래하여 금융실명제의 본질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면 다소의 불편을 감수하는 편이 타당할 것임.

○ 보험거래는 기본적으로 성격상 당연히 실명에 의해 계약이 성립되므로 실명법에서 별도로 실명확인토록 할 실익이 있는지에 대한 논란이 있음.

- 현재 보험계약은 대부분 모집인 등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금융거래종사자에 의한 실명확인 절차 이행이 곤란함.

◆ 제1안 : 모든 보험거래를 실명대상에서 제외

◆ 제2안 : 보장성보험에 대해서만 실명대상에서 제외

○ 문제점 : 보험성격상 당연히 실명확인한다면 실명법에서 제외할 실익이 없음. 제1안의 경우 저축성보험은 일반은행의 정기적금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서, 저축성 보험을 실명거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저축성 보험으로의 자금이동이 예상되어 타금융기관과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음. 제2안의 경우 실명법에 따른 실명확인절차의 이행이 곤란한 문제가 해소되지 않음.

◆ 신분증 제시없이 송금 가능한 금액범위를 현행 30만원에서 상향조정

○ 현행 3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50만원 또는 100만원으로 상향조정 혹은 일부에서 제안되는 상한철폐를 고려할 수 있음.

- 제1안 : 50만원
- 제2안 : 100만원
- 제3안 : 상한 철폐

○ 제1안 및 제2안은 변칙적인 운용소지가 상대적으로 적으나 송금자의 불편해소가 충분하지 못한 측면이 있고 제3안의 경우 송금자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할 수 있으나, 비록 송금을 받는 사람의 계좌가 실명일지라도, 송금하는 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의 변칙적인 운영 소지가 상당히 큰 것으로 우려됨.

○ 그리고 금액이 상향 조정되더라도 특정인의 특정계좌에 계속적으로 송금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일정기준을 세워서 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5. 지하자금을 중소기업 관련 자금으로의 양성화 유도

◆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지원 자금을 확충하기 위하여 일정수준의 부담금을 납부한 중소기업투입자금에 대하여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

가.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대상

○ 중소기업에의 출자금
- 법인인 중소기업(조감법 시행령 §2)에 직접 출자한 자금

※조감법 시행령 §2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수업(물류산업과 여객운송업), 어업, 도매업, 소매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영 관련업, 자동 차 정비공장 운영업, 의료기관 운영업, 폐기물 처리업임.

- 벤처자금 :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 중소기업 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조합에 출자한 자금

○ 중소기업지원 금융기관에의 출자금

- 제1금융권 : 중소기업은행, 대동은행, 동남은

행, 국민은행, 지방은행

- 제2금융권 : 상호신용금고, 리스회사, 할부금융회사, 향후 설립될 여신전문 금융회사

나.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의 범위

○ 창업출자 및 증자에 한함

- 기존 지분의 양수 등에 의한 출자는 새로운 자금이 중소기업에 투입되는 것이 아니므로 제외

○ 미성년자 명의의 출자금은 증여가 명백하므로 자금출처조사 면제대상에서 제외

다. 출자 부담금의 부과

○ 부과대상

- 자금출처면제를 선택하는 경우, 출자부담금을 부과. 다만 중소기업에의 직접 출자금 및 벤처자금은 투자리스크가 크므로 출자부담금 면제

- 출자부담금이 부과되었거나 출자부담금이 면제된 당해 출자금에 대해서는 자금출처에 대한 세무조사를 면제

○ 중소기업에의 직접 출자금 및 벤처자금의 경우 출자 위험이 크다는 이유로 출자부담금을 면제할 경우 유령 중소기업의 설립 등을 통해 편법적인 상속 및 증여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이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부과율 : 증여세 부담액과 양성화 유인을 감

안하여 결정

- 제1안 : 10%

- 제2안 : 20%

- 제3안 : 건당 출자액 10억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10%를 부과하고 10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0%를 부과함.

- 단일률로 부과하는 것이 집행상 용이한 점은 있으나 출자규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게 되어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출자액의 규모에 따라 부과율을 달리할 경우 분산출자할 여지가 있음.

○ 부담금 사용용도

- 신용보증기관에 출연하여 중소기업 지원에 사용함.

라. 의무출자기간 : 5년 이상

○ 당해 자금이 자금세탁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중소기업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담보하기 위하여 5년 이상의 의무출자기간을 부여함.

○ 의무출자기간내에 출자금을 회수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함.

○ 다만, 출자자의 사망 또는 법인(조합)의 청산 해산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함.

- 그러나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법인(조합)을 청산 해산하는 경우에는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함.

〈표 6〉 증여가액별 실효세율

(단위 : 억원, %)

증여액	1	5	10	20	30	50	100
증여세액	0.1	0.9	2.4	6.4	10.4	18.4	40.9
실효세율	10	18	24	32	32.7	36.8	40.9

자료 : 재정경제원.

마. 시행기간 : 6개월(필요시 1회 연장)

○ 현행 조세체계에 대한 특단의 조치이므로, 6개월 동안 출자한 자금에 대해서만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필요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연장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신설

○ 지하자금의 양성화를 위해서는 문제의 소재에 직접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하나의 방안으로 여신전문금융기관의 신설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지원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음.

6. 긴급재정경제명령의 대체입법화 추진

◆ 긴급재정경제명령을 대체입법화하여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

○ 현재 금융실명제의 내용을 담고 있는 긴급재정경제명령 형태를 입법화하여 법률 형태로 금융실명제의 내용을 규정하는 방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실시 후 수년이 지났는데도 긴급재정경제명령이 특정 제도를 뒷받침하는 것은 문제라 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대체입법으로 금융실명제를 항구적인 제도로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함. 또한 이러한 과정에서 세법 및 불법·비리 방지를 위한 자금세탁방지법을 반드시 제정하여 각기의 역할 분담을 적절히 조정함으로써 공평과세의 실현과 우리 사회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7. 금융실명제 관련 제도의 정비

가. 기본방향

○ 금융실명제의 실시가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으며 하나의 정책수단으로 정치·경제·사회적 모든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함. 이 시점에서 더 중요한 것은 금융실명제 자체의 보완보다는 금융실명제를 보완할 수 있는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것임.

- 국가전체의 정책적 목표를 두고 세법, 자금세

탁방지법, 정치자금법, 공직자윤리법, 형법 등의 관련 제도와와의 유기적 조화가 필요함.

○ 금융실명제 실시 시점에서 더불어 추진되어야 했던 것으로 그동안 정책당국이 미처 연계하여 생각해 보지 못했거나 등한시하였던 몇 가지 정책들의 시행을 금융실명제와 연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나. 자금세탁방지법의 제정

○ 자금세탁방지법의 목적은 비정상적인 자금거래의 원천을 차단하여 불법경제를 축소하는 데 있음. 이러한 자금세탁방지법의 주요골자는 일정 규모 이상의 현금인출시 이를 금융기관이 국세청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는 것임.

○ 외국에서는 이미 불법경제(마약, 밀수, 뇌물, 매춘)의 축소를 위하여 자금세탁방지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음. 또한 우리나라를 제외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자금세탁방지를 위해서 유기적인 공조체제가 구축되어 있으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 동참할 필요가 있음.

○ 자금세탁방지법 제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함.

8. 1997년 2월에 발표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의 추진 보류

○ 1997년 2월에 발표한 금융실명제 보완대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분리과세 세율인하 및 요건완화
 - 5년 이상 장기채권 및 저축에 대한 30%의 분리과세를 4년 이상의 경우 25%로 하향 조정함.
 -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대한 25%의 분리과세를 8년 이상의 경우 20%로 하향 조정함.
-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는 저축상품을 신설함.
 - 가입대상자 : 20세 미만 1자녀 1통장
 - 저축불입기간 및 한도 : 5년(5천만원), 10년(1억원)

○ 위의 보완대책은 이번에 제시된 전반적인 금융실명제 보완방안과 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므로 이의 추진을 보류하는 것이 바람직함.

9. 금융실명제의 본질 및 내용에 대한 인식 제고

○ 금융실명제 도입과정에서 정부와 전문가들이 금융실명제를 만병통치약으로 잘못 인식시킨 것이 큰 문제이며 일부 국민들은 정부의 정책내용을 구체적으로 모르거나 전혀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로 알고 있음.

○ 금융실명제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인하여 다

음과 같은 잘못된 통념이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왜곡된 정책을 추진하려는 경우가 있으므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모든 형태의 거래가 금융실명제의 대상임.
- 금융기관을 통한 모든 거래는 국세청이 감시하고 있음.
- 금융실명제로 인해서 모든 거래가 투명해져서 세부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시행되면 대부분 국민의 세부담이 증가함.
- 과소비, 사업의욕의 상실 등 많은 문제가 금융실명제로 야기되었음.
-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인출자료를 모두 세무조사에 활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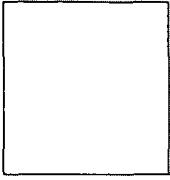
○ 현재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관련하여 금융기관이 국세청에 통보하는 금융자료는 금융소득자료에 한하고 있는데 상당수의 국민들이 모든 금융거래내역이 통보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

- 따라서 이러한 잘못된 인식을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바로잡을 필요가 있음.

○ 금융실명제는 공적 금융기관과의 거래시 실지명의의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으나 금융거래자의 신분 등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비밀보장이 엄격히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국민들이 신분 및 관련 정보가 유출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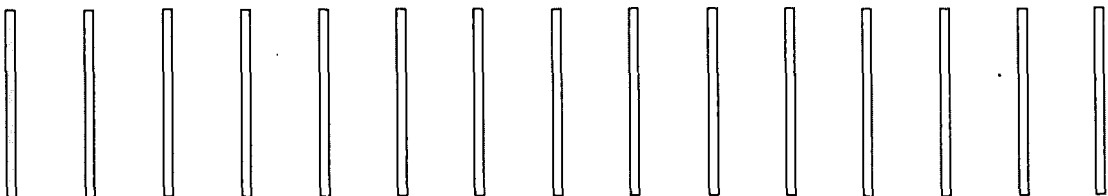
- 따라서 비밀보장 규정이 엄격히 운영되고 있

음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비밀보장제도의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10~~



정책흐름

1. 경제협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 부총리 발표문
2. 19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3. 1996 회계연도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4. 1996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 부총리 발표문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공보관실에서 3월 20일에 발표한 「경제활력 회복과 구조조정을 위한 경제장관 합동기자회견 부총리 발표문」의 내용입니다.

I. 인사말

친애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 경제팀은 하루속히 우리 경제를 정상화시켜 국민 여러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나아가 튼튼한 활력을 회복시키겠다는 막중한 소명감과 책임감을 가지고 그동안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으며, 이를 어떻게 풀어 갈 것인가에 대하여 각계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들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의 논의와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새 경제팀의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과 함께 앞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경제정책방향에 대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II. 현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는 현재 안보관계와 정치상황의 변화요인에 더하여 노동법 개정에 따른 사회적 불안과 한보사태로 인한 금융경색현상 그리고 국제수지 적자 등으로 경제가 크게 위축되어 있는 현실입니다.

전반적인 의욕저하와 불안감·불신감으로 경제위

기의식이 가중되고 있으며, 우리 경제의 장래에 대한 자신감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어려움은 본질적으로 경기순환적인 현상과 여러 해에 걸쳐 누적된 구조적 취약성이 복합된 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의 대처방향에 대한 뚜렷한 공감대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데다가 대통령선거 등 정치계절을 앞두고 경제기조가 흔들릴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도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수년간 정부가 정치·사회분야의 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고비용·저효율' 구조를 뿌리뽑는 경제분야의 개혁은 상대적으로 소홀하였습니다.

이제 어떤 고통과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구조조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새 경제팀의 핵심과제는 당장 당면한 과제들을 해결하여 정부의 신뢰를 회복하면서 그 토대 위에서 '미래지향의 경제의 틀'을 새로 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선진경제의 바탕을 만드는 것입니다.

Ⅲ. 앞으로의 경제정책방향

국민 여러분!

먼저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의 어려움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묘책이 세계는 없습니다.

경제불황으로 겪는 어려움이 크지만 현시점에서 단기적인 경기부양조치를 취할 여유도 없습니다.

우리는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지더라도 이를 감내하고 물가안정과 국제수지 개선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 경제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고쳐 나가는 노력을 해 나가야 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경제정책은 다음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불안요인들을 조속히 해소하여 경제주체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경상수지적자 지속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우리의 씬쌌이를 정부부터 솔선하여 능력에 맞게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새로운 도약을 가능하게 하는 진정한 시장경제로의 구조조정작업을 가속화하겠습니다.

1. 경제불안요인의 해소와 안정노력 강화

가. 한보사태 등으로 인한 불안요인 해소

정부는 한보사태와 삼미부도 등으로 빚어진 경제불안요인을 조속히 해소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들 기업과 관련 중소기업체와 납품업체의 어려움을 지원하고 있는 금융기관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는 등 응급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할 것은 정부는 금융시장의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적절히 강구해 나갈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와 관련 해외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금융시장과 외환시장은 시장기능을 살리는 구조대책도 하나씩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최근 은행의 해외차입 자유화와 금융실명제 보완조치 등은 바로 이러한 구조대책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나. 물가안정

물가안정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물가가 안정되어야 임금안정이 가능하고 구조조정도 가능합니다.

앞으로 물가안정은 실질적인 생활비 안정에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개방에 따른 이익이 물가안정으로 직접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개방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물가수준은 이미 너무 높은 수준에 와 있으며, 매년 4~5%의 상승률도 선진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물가구조나 물가상승률을 개편하고 안정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는 이미 1980년대에 3% 수준의 물가안정을 지속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 물가안정이 가능하였던 것은 임금동결·추곡수매가 동결·예산동결 등 각 경제주체의 고통분담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 모두의 이러한 인내

와 고통분담 없이는 물가구조의 개편이나 선진국 수준의 물가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다. 임금의 안정

올해에는 기업에서 임금을 올릴 여력에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지난해 기업들의 이익률이 대폭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에도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 사정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런 때에는 근로자들도 우선 인내하고, 기업의 이익이 난 연후에 성과급으로 배분받겠다는 자세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임금안정의 고통을 감내하는 근로계층과 봉급생활자들에게 물가안정으로 반드시 보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운 시기이므로 지금은 노사가 서로 다를 때가 아닙니다.

경제부터 살려야 합니다.

많은 대가와 진통을 겪으면서 개정된 노동관계법은 노사쌍방에 의하여 존중되어야 합니다.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계기로 참여와 협력, 화합의 새로운 노사관계가 정착되기를 기대합니다.

라. 고용의 안정

올해에는 임금수준보다도 고용안정이 더 중요한 과제입니다.

경제의 구조조정은 고용면에서는 바로 전업이나 전직이 불가피하다는 뜻입니다. 창업·전업·전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고 정부가 지원가능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전직 등의 과정에서 고용불안이 최소화되도

록 고용안정사업을 확대하고 전직자 훈련의 확대 등 직업훈련체제와 취업알선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교육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수요에 맞추어 길러 내는 교육, 입시위주가 아닌 취직중심의 교육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업에서도 고용안정을 위한 자체노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종업원의 전직이나 창업을 적극 지원해 주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반 확충

고용안정을 위하여는 튼튼한 중소기업들이 경제의 바탕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를 위하여 지역 밀착형 금융기관의 기능을 확충하고, 특히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재래시장과 영세유통업자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장차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는 새싹이 될 기술집약·지식집약형 중소기업들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활동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들은 창업단계에서부터 인력확보·기술개발·생산·유통단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영상의 애로요인을 겪고 있으나 이들 문제를 독자적으로 해결하기는 매우 벅찬 실정입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신규로 기술연구집단지단지(techno-park)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만, 중소기업의 각 사업단계별 애로를 보다 적극적으로 또 종합적으로 풀어줄 수 있는 유기적인 연계기능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창업투자조합과 장외시장의 활성화 등 창업여건도 더욱 충실하게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 국제수지 방어를 위한 긴축재정운영

지난해 경상수지적자가 240억달러 가까이 늘어났고 총외채가 1천억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현 상태대로 간다면 올해도 200억달러에 가까운 적자가 시현될 수 있고 외채는 몇년 안에 1,500억달러, 2천억달러의 시대로 넘어갈지 모릅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반드시 고쳐야 합니다.

경상수지적자가 늘어나고 외채가 느는 원인은 우리 경제가 실력 이상으로 쓰는 데 있습니다. 실력을 늘리는 데는 시간이 걸리므로 경상수지의 개선을 위하여 당장 할 수 있는 일은 씬씀이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 소비의 합리화 · 과학화

션씀이의 절약에는 모든 경제주체가 심기일전의 자세로 노력해야 합니다.

일부계층의 사치성과소비 억제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소비생활을 합리화하고 과학화하는 노력을 벌여 나가야 합니다.

자원절약과 재활용, 식단개선, 생활쓰레기 줄이기 등 소비생활의 실천적인 바탕이 달라져야 합니다.

민간단체의 소비관련 캠페인도 소비의 합리화 · 과학화쪽에 보다 중점이 두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도 할 수 있는 일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겠습니다.

나. 에너지절약

우리의 에너지소비는 너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상수지 악화의 상당부분이 에너지 수입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에너지절약시책을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에너지소비가 원천적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에너지 가격구조를 고치고 에너지효율을 전반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 재정의 긴축운영

션씀이를 줄이는 데는 누구보다도 정부가 앞장서겠습니다.

성장이 둔화되고 기업경영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으므로 올해의 세수목표를 2조원 규모 줄이고 내년에도 무리한 세수증가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1997년 공공부문예산 중 1조원 이상의 집행을 절감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만 세수목표를 줄이는 만큼 추가로 1조원 이상의 정부예산집행을 유보하겠습니다.

1998년 예산은 긴축기조로 편성하겠습니다. 예산증가율을 한자리수 이내로 낮추겠습니다.

정부 스스로 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불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감축하고 예산지출을 원천적으로 줄여 나가겠습니다.

예산규모증가를 억제함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사업 등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이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SOC사업도 투자효과에 따라 엄선하면서 기존시설의 이용을 효율화하는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3. 규제개혁

우리 경제의 고질인 '고비용 · 저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철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유로운 기업활동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기업 활동의 투명성을 높이는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규제개혁은 바로 '시장경제 만들기'입니다. '법대로' 하더라도 기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규제개혁의 최소한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부주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지나치게 많은 역할과 책임이 정부에 집중되었습니다. 규제개혁은 정부와 민간과의 관계를 시대의 변화에 알맞게 새로 정립하는 것입니다.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가 종전처럼 수직관계인 채 규제의 가짓수를 줄이는 것으로는 그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와 기업과의 관계가 수평관계로 전환되는 것이 바로 규제개혁의 핵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제운영에 정치논리가 끼여들 여지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가. 금융개혁

이번 한보사태에서 보듯이 금융분야는 근본적인 개혁이 매우 시급합니다. 금융산업에는 시장기능이 제대로 작동되도록 해야 합니다. 금융개혁위원회의 활동결과가 나오는 대로 금융개혁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나. 경쟁촉진

경쟁 없이는 경쟁력이 제고될 수 없습니다. '고비용·저효율' 구조의 해소를 위하여는 물론, 물가안정과 기술개발의 관건도 개방과 경쟁의 시장기능을 제대로 작동시키는 것입니다.

경쟁을 제한하거나 반시장경제적인 정부규제를 과감히 철폐하여 경쟁이 촉진되는 자유로운 기업환경을 조성해 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그동안 재정경제원에서 맡고 있던 경제분야 규제개혁작업을 앞으로는 총리실 산하의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전담하여 경쟁촉진정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원칙에 따른 신상필벌이 분명히 되는 기업환경을 만들고 규제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기업과 근로자도 새로운 틀에 적응하는 자기혁신노력이 함께 있기를 당부합니다.

Ⅳ. 맺음말

국민 여러분!

세계는 지금 21세기를 목전에 두고 정치에서의 자유민주주의, 경제에서의 시장경제원리를 양대 축으로 하는 질서로의 전환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러한 세계적 조류를 함께 호흡하지 못하고 구조전환 노력을 게을리한 결과 '고비용·저효율'의 골이 깊어지고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었습니다.

과거 1, 2차 석유파동의 위기가 외부요인에 의한 것이었다면 이번 어려움의 원인은 바로 우리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달라지지 않고는 오늘의 위기국면을 벗어날 도리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경제가 좋아지게 할 묘방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난 연대 쇠퇴징후까지 보이던 미국 경제가 끈질긴 구조조정 노력 끝에 다시 번영하고

있음을 봅니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세계의 찬탄을 받으며 경제발전을 이룩한 실적이 있고 아직도 그런 잠재력이 있습니다. 몇 차례의 어려움을 극복한 소중한 경험도 있습니다. 경제에는 영원한 승자도 영원한 패자도 없습니다.

문제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이 크지만 미래를 열어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미 다른 나라보다 늦었기 때문에 더 이상 주저하거나 기다리고 있을 시간적 여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조조정이 남들처럼 시간을 두고 추진할 중장기과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착수해야 할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저희 경제팀은 대통령선거나 정권 마지막 해라는 정치적 상황에 불구하고 흔들림이 없이 오로지 '경제 살리기'의 소중한 임무에만 전념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의 충정을 이해하시고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 3월 2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 강경식

19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예산실 예산정책과에서 3월 25일에 발표한 「19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확정」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1998년 예산은 국제수지의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편성하고
 - 정부 재정에서부터 긴축을 숭선수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한자리수로 책정하기로 하였음.
- 또한 세출면에서는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개선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방침임.
 - 공무원총 정원의 동결기조를 견지하고 경상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하는 등 재정긴축 노력을 강화
 - SOC는 경쟁력 강화나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되 수요 억제 및 투자의 효율화 방안을 강구
 - 62조원 교육투자, 42조원 농어촌 구조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기본골격을 유지하되, 사업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
- 이와 함께 정부의 조직·인력·예산제도 전반에 걸쳐 효율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 노력을 강화할 방침임.
- 1998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차관회의(3월 20일) 및 국무회의(3월 25일)의 심의를 거쳐 3월 말까지 각 부처에 시달할 예정임(예산회계법 제25조 제2항).

- * 1998 예산편성 일정
 - 정부 예산안 편성
 - 1998년도 예산편성지침 시달 : 3월 31일
 - 예산요구서 접수 : 5월 31일
 - 예산안 심의 : 6월 초~9월 중순
 - 국무회의 의결 : 9월 하순
 - 예산안 국회 제출 : 10월 2일
 - 국회 예산심사
 - 예결위 구성 : 9월 2일
 - 예결위 활동 : 9월 하순~12월 2일
 - 1996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 1998 예산안 심의 : 11월
 - 본회의 의결 : 12월 2일

- 기 위한 세정운영으로 세입증가는 예년에 비하여 둔화될 전망
 - 공기업 주식매각과 공공자금의 여유재원 활용에도 한계
- 반면 국가경쟁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세출소요는 지속적으로 증가
 - 교육, 농어촌, 주요 사회간접자본사업 등 이미 확정된 정책의 추진을 위한 사업비 소요
 - 복지, 환경, 정보화 부문 등에 대한 새로운 투자소요
 - 방위비, 인건비, 교부금 등의 고정적 지출 지속

I. 재정운영 여건

1. 경제 여건

- 우리 경제는 금년중 5.5% 내외의 성장, 1998년에는 5~6% 정도의 성장을 보일 전망
- 1998년중 경상수지는 금년보다는 다소 개선될 것이나 적자규모가 크게 줄어들기는 어려울 전망
- 물가는 4~4.5%의 안정기조 지속이 예상되나 환율 상승의 영향 등 일부 불안요인도 내재

2. 재정운영 여건

- 경제의 안정성장과 기업활동의 어려움을 덜어 주

II. 재정운영 방향

- 1998년에는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
- 정부가 긴축을 출선수범함으로써 사회전반의 근검절약을 유도

- 세입여건을 감안하여 예산규모 증가를 최대한 억제
 -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합친 예산규모증가율은 경상성장률보다 낮은 한자리수로 책정
 - 증시여건을 보아 가며 일부 공기업 주식매각을 반영하고 연·기금의 여유재원도 활용
 - 추가적인 조세감면을 억제하고 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반회계 의존도를 축소
- 재정긴축 노력을 강화하여 사업비 재원을 최대한 확보

(단위 : %, 조원)

	1996 예산	1997 예산	1998 전망
경상성장률	12.3	11.3	10 수준
예산규모증가율	14.8	13.4	9 수준
예산규모	63	71	78 수준

- 공무원의 총정원은 동결기조를 견지
- 청사신축, 국내외 행사 등 행정경비는 최대한 절감
-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개선에 재원을 중점 배분
 - 사회간접자본은 경쟁력 강화 및 생산활동과 직결되는 사업을 중점 지원하고 수요 억제 및 투자 효율화방안 강구
 - 시급한 사회간접자본 투자재원 조달을 위하여 필요시 교통세율 인상 등 재원대책을 검토
 - 62조원 교육투자,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기본 골격을 유지하되, 사업에 따라 투자우선순위와 시기를 일부 조정
 - 에너지소비 절약, 외국인투자 유치 등 국제수지 개선에 기여할 수 있는 부문에 역점
 - 중소기업, 과학기술부문 지원과 초고속정보통신망 등 국가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뒷받침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환경, 문화 등 부문과 통일·외교부문에 대하여도 적정소요를 반영
- 방위비는 재정여건과 안보상황을 고려하여 책정하되 방위력 개선에 중점
- 정부의 조직과 인력, 예산제도 전반에 걸쳐 효율

성과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노력을 강화

Ⅲ. 정부생산성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정지출의 성과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과제를 선정
- 주요 과제별로 실질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부처별 책임하에 추진

1. 정부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정부기능 중 민간이 담당하는 것보다 효율적인 경우 민영화, 민간위탁 등 민간이양을 추진
 - 항만운영, 환경기초시설, 병원, 청사관리, 각종 교육 등
- 정부조직·인력관리체제를 재검토하여 실효성 제고방안을 강구
 - 일선기관의 통합 등 조직 관리의 효율화 추진
 - 정보화·자동화를 통하여 인력·비용을 절감하고 관련 업무처리절차를 단순화
- 지방자치단체 조직과 인력운영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교부세 등 국고지원의 배분기준을 개선

2. 재정지원의 성과관리 강화

- 총사업비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관리방식을 개선
 - 기본계획의 충실화, 설계변경에 대한 책임 강화 등
- 지방자치단체와 보조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시 자율성과 예산집행의 탄력성이 제고되도록 국고지원방식을 개선
- 정부조직의 운영과 재정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생산성지표를 개발하여 적극 활용

3. 예산제도 및 운영방식의 개선

-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원방식을 개선
 - 기금 신설의 억제, 유사기금의 통폐합 및 공공기금과 민간기금의 재분류 추진
- 계속비제도 적용을 확대하여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형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

Ⅳ. 1998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요구지침

1. 일반지침

- 1998년도 예산을 요구하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 국제수지 개선과 물가안정을 뒷받침하는 데 최우선을 두고

- 청사 신축, 국내외 행사 등 행정경비와 외화경비 지출에 있어서 긴축노력을 강화하고
- 경제체질 강화와 구조개선에 재원을 중점 배분하도록 함.
- 아울러 특별회계의 자체세입을 최대한 확보하여 일반회계에 대한 의존도를 축소하도록 함.

- 각 부처별로 정부의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이를 예산요구에 반영토록 함.

- 각 부처가 제출하는 1998년도 예산 요구자료는 예산심의자료로 사용할 계획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 제출토록 함.

- 자료는 모두 전산을 활용하여 작성·제출토록 하고, 제출된 자료는 항구적으로 저장·관리할 예정임.

- 정보화사업의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인력 및 비용의 절감효과를 관련 예산에 반영하여 요구하도록 함.

2. 경비별 요구지침

가. 인건비

- 증원소요는 원칙적으로 예산편성시 일괄 요구하여야 함.
- 증원소요는 각 부처 기존 정원 상계원칙에 의하여 최대한 자체 흡수토록 함.

나. 기준경비

- 기준경비란 각급기관 운영에 기본적으로 소요되는 경비 중 정원 및 정수에 따라 각 부처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예산편성 기준단가를 기초로 하여 편성되는 경비를 말함.
- 기준경비는 1997년 5월 31일 현재의 정원·정수 및 기준단가에 의거 산출내역을 표시하여 요구함.

다. 사업비

(1)경상사업

- 경상사업비란 물건비가 대부분이며 경상지출 성격의 소규모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 재정경제원이 제시하는 부처별 경상사업비 한도범위 내에서 각 부처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사업비를 말함.
- 1998년도 경상사업비는 1997년도 부처별 한도 범위 내의 규모로 요구하되 그 산출내역을 표시함.
- 매년 반복적으로 추진되는 소규모 사업비는 원칙적으로 경상사업비로 전환하여 요구함.
 - 경상사업에 해당되는 신규소요는 기존의 경상사업과의 우선순위 재검토 및 낭비요인 제거 등을 통하여 흡수하고 별도 사업비로 요구하지 아니함.
 - 1997년 예산에서 경상사업비로 편성된 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별도 사업비로 분리하여 요구하지 아니함.

- * 1997년 사업비 중 경상사업으로 전환하여 요구하는 경우에는 부처별 한도에서 추가 인정

(2) 투자사업

- 1998년 완공예정인 사업을 우선적으로 요구하되, 우선순위가 높지 않거나 총사업비 증가 등으로 그 소요가 크게 증가한 사업은 사업추진을 유보하거나 공기연장을 검토함.
- 신규사업은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시급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하여 요구하되, 계속사업 추진소요를 감안하여 최소한도로 요구함.
- 완공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사업 중 실시설계가 완료된 대형사업은 필요할 경우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함.
 - 특히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추진중인 사업은 계속비 사업으로 요구함.
- 사업비 예산 중 토지매입비(보상비 포함)가 소요되는 사업은 토지 매입비를 우선 요구함.
- 1997년 예산편성과정에서 민간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동부담 등의 조건으로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중간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첨부하여 요구함.
-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사업추진 소요예산을 사전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시공 등 사업추진단계별로 구분하여 연차적으로

요구하며, 사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단계별 소요예산을 동시에 요구하지 아니함.

(3) 보조 및 출연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지역의 국고보조금 예산을 1997년 보조금예산 총액대비 30% 증가 범위 내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신청함.
- 자치단체 보조금은 사업별로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되, 이와는 별도로 보조금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내무부 장관에게 제출하고, 내무부 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통보함.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가 신청하지 않은 보조사업은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아니함.
- 신규보조사업은 전문기관의 타당성 조사 실시 및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요구함.
- 지원의 실효성이 작거나 사업성격이 유사한 보조금은 정비·통폐합하여 요구함.
- 출연기관 및 기금의 신설을 위한 출연을 억제함.
- 출연기관의 운영비 및 연구비는 원칙적으로 1997년 수준으로 억제하고 인건비는 결원보충을 유예하는 것을 전제로 요구함.

(4) 출자 및 용자사업

- 출자금은 증자의 필요성과 지출소요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고 자체세입 확충 등을 통하여 정부출자를 최소화하여 요구함.
- 용자사업은 사업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의 저리용자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함.

(5) 수입대체경비

- 예산운영의 탄력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회계법 제41조에 규정된 수입대체경비제도를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수입대체경비 지정대상에 대하여는 그 사유 및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을 첨부함.

3. 요구방식 및 기타사항

가. 협의사항

-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수반하는 사업의 경우 지방비 부담을 확보하기 위하여 내무부장관과 보조사업계획에 대하여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예산사업 중 정원, 차량, 공무원교육훈련, 정부청사 수급 등에 관련되는 경비는 관계부처와 협의절차를 거쳐 요구하여야 함.
- 예산과목을 변경·신설하고자 할 경우에는 1997년 4월 30일까지 재정경제원 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나. 예산 요구양식 및 첨부서류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양식”에 의하여 1998년도 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 예산요구서 양식표준화에 따라 인건비 및 경상경비를 제외한 사업 예산은 “세출예산 사업별 분석 및 설명자료” 양식에 의하여 요구함.
 - 주요 사업비에 대하여는 단위 사업별로 증액사업, 현상유지사업, 축소·폐지사업으로 구분하여 사업별 우선순위가 나타나도록 주요 사업비 분석표를 작성하여 제출함.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예산요구 첨부양식”을 작성하여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 내무부 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금 신청 종합보고” 양식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시·도)의 보조금 신청내역을 종합하여 1997년 5월 31일까지 재정경제원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는 사업별 우선순위가 나타나도록 작성하여야 함.
- 수익자부담이 수반되거나 전환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차별 국고부담 축소계획을 첨부하여 요구함.
- 각급 연구기관(국·공립연구소 및 출연연구소)은 최근 3년간의 연구성과와 활용실적 및 전망에 대한 평가자료를 첨부하여 요구함.

- 중앙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예산 요구시에는 1996년 및 1997년(3월 말 현재) 운영실적을 첨부함.

다. 기타사항

- 재정경제원 장관은 예산안 편성에 관한 세부사항과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음.
 - 추후 재정·경제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환율 및 단위단가 등 기준을 조정할 수 있음.
- 1998년도 예산요구시에는 미화 1달러당 880원의 환율(1997년 3월 말 수준)을 적용함.
- 예산요구서는 예산회계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997년 5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함.

1996 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국고국 회계총괄과에서 3월 11일에 발표한 「1996 회계연도 총세입부 · 총세출부 마감」의 내용입니다.

주요내용

-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997년 3월 10일 11시 30분에 감사원 전세봉 감사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1996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였음.
- 이를 마감하는 의미는 작년 한해 동안 정부의 최종 수입 · 지출 집행실적이 확정되며, 이 시점에서부터 1996 회계연도 정부결산서 작성이 시작됨을 뜻함.
- 마감결과 1996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조 2,758억원 세출결산액은 58조 4,808억원으로 세잉여금은 1조 7,950억원이며, 이 중 1997 회계연도로의 이월액 1조 763억원을 차감하면 7,187억원의 순잉여금이 발생하였는바
 - 이는 조세수입이 당초예산액보다 4,471억원이 증수(0.8%)되고 세출예산에서는 3,071억원이 미집행(예산액 대비 0.5%)된 반면, 세외수입은 355억원이 적게 수납되었기 때문임.
- 한편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22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48조 2,511억원, 세출결산액은 43조 5,590억원으로서 1997 회계연도로의 이월액 2조 9,803억원을 차감한 순잉여금은 1조 7,118억원임.

I.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행사

- 일시 : 1997년 3월 10일(월요일) 11시 30분
- 장소 : 부총리실
- 참석자 : 부총리 겸 재경원 장관, 전세봉 감사위원
- 배석자
• 감사원 : 기획관리실장, 결산담당관
• 재경원 : 기획관리실장, 국고국장, 회계총괄과장

- 근거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46조(총세입부·총세출부의 비치) 제2항 재정경제원 장관은 매년 3월 10일에 감사원장이 지정하는 감사위원 기타 공무원의 참여하에 전년도의 총세입부 및 총세출부를 마감

II.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 개요

- 총세입부·총세출부 : 한 회계연도의 세입 및 세출에 관한 일체의 출납현황을 회계별·소관별로 구분하여 수록한 출납장부
- 총세입부·총세출부 마감의 의의 : 한 회계연도에 속하는 세입·세출의 출납에 관한 사무가 종료되어 국가의 세입·세출 집행실적이 확정됨을 의미하며 이때부터 정부결산서 작성이 시작
- 총세입부·총세출부의 내용
- 총세입부 : 일반회계 1권, 특별회계 1권, 총 2권

으로 구성되며, 회계별·소관별 세입총계와 월별 징수결정액 및 수납실적을 기록

- 총세출부 : 일반회계 2권, 특별회계 1권, 총 3권으로 구성되고 회계별·소관별 세출총계와 월별 지출원인행위액 및 지출실적을 기록

III. 1996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

1. 세입·세출결산

(단위 : 억원, %)

	일반회계	특별회계	합계
세 입			
예산액(A)	588,228	456,113	1,044,341
결산액(B)	602,758	482,511	1,085,269
비율(B/A)	102.5	105.8	103.9
세 출			
예산현액*(D)	598,642	481,053	1,079,695
결산액(E)	584,808	435,590	1,020,398
비율(E/A)	99.4	95.5	97.7
세계잉여금 (C=B-E)	17,950	46,921	64,871
다음연도 이월액(F)	10,763	29,803	40,566
순세계잉여금 (G=C-F)	7,187	17,118	24,305

주 : * 예산현액 = 예산액(A) + 전년도 이월액 등

2. 순세계잉여금 발생원인

일반회계 (7,187억원)	세입증가 (4,116억원)	조세수입증가 : 4,471억원
		세외수입감소 : - 355억원
	세출불용액 (3,071억원)	재정경제원 : 1,005억원 (행정부 전체예비비 942억원 포함)
		국방부(경상경비 등 잔액) : 587억원
		교육부(경상경비 등 잔액) : 294억원
	기타 45개 기관 : 1,185억원	
특별회계 (1조 7,118억원)	세입증가 (1,458억원)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등 10개 특별회계 세입증가 : 1조 8,090 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 세입감소 : - 1조 6,632억원
	세출불용액 (1조 5,660억원)	재정투융자특별회계 : 4,477억원
		철도사업특별회계 : 3,399억원
		지방교육양여금관리 특별회계 등 18개 특별회계 : 7,784억원

IV. 일반회계 세입·세출

1. 세입

(단위 : 억원, %)

	1996 예산액 (A)	1996 결산액 (B)	예산·결산대비	
			차액(B-A)	B/A
조세수입	566,110	570,581	4,471	100.8
내국세	463,079	469,104	6,025	101.3
관세	54,997	53,095	- 1,902	96.5
방위세	330	143	- 187	43.3
교통세	47,704	48,239	535	101.1
세외수입	19,053	18,698	- 355	98.1
경상이전수입	14,718	13,740	- 978	93.4
재확 및 용역판매	2,223	2,471	248	111.2
차관수입	737	887	150	120.4
기타세외수입	1,375	1,600	225	116.4
수입대체경비초과	-	180	180	-
전년도이월금	3,065	13,299	10,234	433.9
합 계	588,228	602,758	14,530	102.5

2. 국세의 예산액 대비 징수실적

(단위 : 억원, %)

	1996 예산액 (A)	1996 조세수입 (B)	비율	
			차액(B-A)	구성
1. 내 국 세	463,079	469,104	101.3	82.2
직 접 세				
소득 세	145,034	147,669	101.8	25.9
법 인 세	92,541	93,561	101.1	16.4
토지초과이득세	112	68	60.7	0.0
상 속 세	12,748	9,665	75.8	1.7
자산재평가세	902	2,167	240.2	0.4
간 접 세				
부 가 가 치 세	166,064	167,895	101.1	29.4
특 별 소 비 세	29,102	31,193	107.2	5.5
주 세	4,584	4,168	90.9	0.7
증 권 거 래 세	3,621	2,896	80.0	0.5
인 지 세	3,577	3,560	99.5	0.6
기 타 내 국 세	4,794	6,262	130.6	1.1
2. 관 세	54,997	53,095	96.5	9.3
3. 방 위 세	330	143	43.3	0.0
4. 교 통 세	47,704	48,239	101.1	8.5
합 계	566,110	570,581	100.8	100

3. 세출

가. 기능별

(단위 : 억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구성비
1. 방위비	127,360	134,245	129,450	96.4	22.2
2. 교육비	110,740	111,385	110,298	99.0	18.9
3. 사회개발	50,075	51,445	50,211	97.6	8.6
4. 경제개발	130,833	136,085	131,229	96.4	8.6
5. 일반행정	62,559	63,743	62,824	98.6	10.7
6. 지방재정교부금	63,777	63,777	63,777	100.0	10.9
7. 채무상환, 예비비 등	42,884	37,962	37,019	97.5	6.3
합 계	588,228	598,642	584,808	97.7	100.0

나. 성질별

(단위 : 억원, %)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B/A	구성비
1. 인건비	73,822	74,143	73,746	99.5	12.6
2. 물건비	75,263	78,163	76,085	97.3	13.0
3. 경상이전	228,039	228,998	228,728	99.9	39.1
4. 자본지출	72,027	82,528	75,518	91.5	12.9
5. 융자·출자	-	-	-	-	-
6. 보전재원	744	676	676	100.0	0.1
7. 정부내부지출	128,729	129,565	126,429	97.6	21.6
8. 예비비 및 기타	9,604	4,569	3,626	79.4	0.6
합 계	588,228	598,642	584,808	97.7	100.0

V. 특별회계 세입·세출

(단위 : 억원, %)

	예산액 (A)	세입		세출		세계잉여금 (B-C)
		금액(B)	B/A	금액(C)	C/A	
재정투융자	123,042	118,978	96.7	118,752	96.5	226
국유재산관리	15,662	18,644	119.0	14,785	94.4	3,859
농어촌구조개선	54,173	56,580	104.4	54,454	100.5	2,126
농어촌특별세	15,900	15,678	98.6	14,864	93.5	814
교통시설	65,310	72,539	111.1	65,114	99.7	7,425
등기	792	844	106.6	745	94.1	99
지방양여금관리	25,511	26,043	102.1	24,056	94.3	1,987
교도작업	330	327	99.1	230	69.7	97
군인연금	9,208	8,870	96.3	8,857	96.2	13
지방교육양여금	41,136	41,040	99.8	35,228	85.6	5,812
에너지 및 자원사업	17,587	18,654	106.1	16,816	95.6	1,838
환경개선	6,101	6,281	103.0	5,960	97.7	321
국립의료원	535	467	87.3	455	85.0	12
토지관리 및 지역	3,305	5,856	177.2	3,485	105.4	2,371
체신보험	1,415	1,328	93.9	1,314	92.9	14
자동차교통관리	978	934	95.5	917	93.8	17
특허관리	509	698	137.1	513	100.8	185
교육환경개선	4,000	4,000	100.0	4,000	100.0	-
소 계	385,494	397,761	103.2	370,545	96.1	27,216
양곡관리	15,927	22,939	144.0	14,734	92.5	8,205
철도사업	31,729	30,972	97.6	27,474	86.6	3,498
통신사업	21,866	29,555	135.2	21,711	99.3	7,844
조달	1,097	1,284	117.0	1,126	102.6	158
소 계	70,619	84,750	120.0	65,045	92.1	19,705
합 계	456,113	482,511	105.8	435,590	95.5	46,921

1996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

* 이 자료는 재정경제원 국고국 재정투융자과에서 3월 26일에 발표한 「1996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의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

○ 결산개황

- 1996 회계연도 18개 정부투자기관의 결산이 1997년 3월 14일 한국전력공사의 정기 주주총회를 끝으로 확정되었음.
- 1996년도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과를 보면 총 43조 5,33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며 이 중 비용과 법인세 등을 제외한 당기순이익은 1조 6,711억원임.

(단위 : 억원)

수익	비용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435,333	407,209	11,413	16,711

○ 정부배당

- 18개 정부투자기관 중 한국담배인삼공사 등 8개 기관으로부터 2,178억원의 정부배당을 결정함.

I. 1996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 확정

- 1996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결산내용을 승인하는 주주총회가 1997년 3월 14일 한국전력공사를 끝으로 종결되어 18개 정부투자기관의 결산이 확정되었음.
 - 1995년도에는 정부투자기관이 19개 기관이었으나, 한국주택은행이 정부투자기관에서 제외(1996년 2월 7일)되어 1996년도에는 결산종료일 기준으로 정부투자기관은 18개 기관임.

II. 1996 회계연도 정부투자기관 경영성과

- 1996년중 정부투자기관은 총 43조 5,333억원의 수익을 올렸으나 이 중 비용으로 40조 7,209억원, 법인세 등으로 1조 1,413억원이 지출되어 당기순이익은 1조 6,711억원임.
- 1996년도 당기순이익은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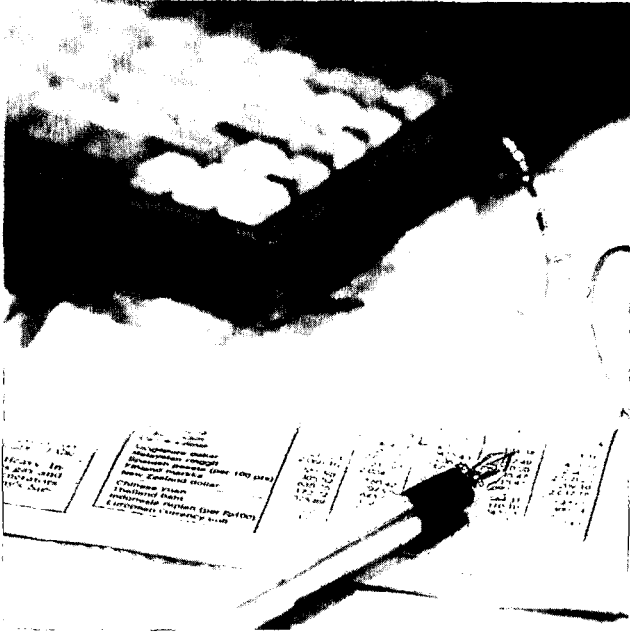
평가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 및 토지공사의 신도시 학교용지 무상공급 등에 따라 전년도보다 6,918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특수요인을 제외하면 순이익이 감소되었다고 할 수는 없음.

- 산업은행 및 담배인삼공사 등 10개 기관은 순이익이 증가하였으나
- 한국전력공사의 자산재평가(1996년)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4,365억원), 한국토지공사의 5개 신도시 학교용지 무상공급(4,642억원) 등 특수한 요인이 발생하여 전체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것임.

<경영성과>

(단위 : 억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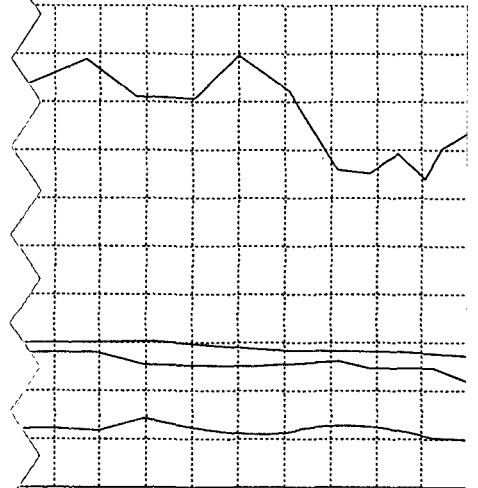
	1996(A)	1995(B)	증감(A-B)	(A-B)/B
수익	435,333	381,090	54,243	14.2
비용	407,209	344,246	62,963	18.3
세공제전이익	28,124	36,844	-8,720	-23.7
법인세 등	11,413	13,215	-1,802	-13.6
당기순이익	16,711	23,629	-6,918	-29.3



재정통계

부가가치세 관련 통계

1. 부가가치세 과산 및 정수
2. 부가가치세 신고연월 및 과세표준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액액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
5. 업태별 부가가치율
6. 부가가치세 면제사업자 업태별 연월(개인)
7. 부가가치세 국제실사 사무처리 : 의의신청분
8. 부가가치세 국제실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분
9. 부가가치세 소송사건
10. 부가가치세 감사실적



1. 부가가치세 예산 및 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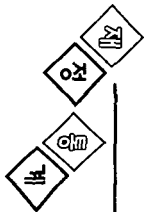
(단위: 명, 백만원, %)

	납세자수	예산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미수납액	비율	
							(B/A)	(C/A)
1977	824,192	218,224	247,238	241,573	642	5,023	113.3	110.7
1978	908,127	817,115	846,942	838,907	4,709	3,326	103.7	102.7
1979	933,475	1,006,946	1,103,417	1,088,675	4,963	9,779	109.6	108.1
1980	980,376	1,472,163	1,507,150	1,471,194	9,244	26,712	102.4	99.9
1981	1,104,922	1,890,413	1,899,076	1,804,760	16,106	78,210	100.5	95.5
1982	1,128,330	2,142,931	2,251,111	2,094,383	26,621	130,107	105.0	97.7
1983	1,168,672	2,513,658	2,759,183	2,559,277	37,997	161,909	109.8	101.8
1984	1,221,161	2,737,860	2,945,555	2,704,272	44,571	196,712	107.6	98.8
1985	1,269,342	3,031,074	3,154,923	2,901,197	50,691	203,035	104.1	95.7
1986	1,341,398	3,138,132	3,605,941	3,272,210	65,962	267,769	114.9	104.3
1987	1,420,082	3,579,790	3,949,942	3,650,479	76,742	222,721	110.3	102.0
1988	1,472,424	3,995,152	4,382,836	4,205,215	72,457	105,164	109.7	105.3
1989	1,654,553	4,686,836	5,463,006	5,260,229	71,990	130,787	116.6	112.2
1990	1,834,240	6,714,058	7,187,670	6,964,419	68,159	155,092	107.1	103.7
1991	1,988,821	8,752,203	8,588,360	8,252,627	62,689	273,044	98.1	94.3
1992	2,102,203	10,383,796	10,610,992	10,076,296	101,703	432,993	102.2	97.0
1993	2,253,105	12,003,846	12,287,114	11,687,506	152,562	447,046	102.4	97.4
1994	2,388,044	13,478,700	13,762,576	13,057,973	170,144	534,459	102.1	96.9
1995	2,526,198	14,522,400	15,754,211	14,636,893	365,278	752,040	108.5	100.8

주: 1. 징수기준이며 징수액은 수입분을 포함.

2. 납세자수는 각 연도 2기 확정 신고 인원이며 1989년 이후는 소액부징수자를 포함한 인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 부가가치세 신고인원 및 과세표준

(단위: 명, 억원)

	신 고 인 원				과 세 표 준			
	계	법인	개인일반	과세특례	계	법인	개인일반	과세특례
1983	1,168,672	37,525	252,273	878,874	1,434,211	1,122,819	245,963	65,429
1984	1,221,161	40,645	281,786	898,730	1,548,835	1,193,717	286,950	68,168
1985	1,269,342	43,712	310,883	914,747	1,649,959	1,270,472	310,788	68,699
1986	1,341,398	47,523	345,143	948,732	1,896,456	1,462,464	365,506	68,486
1987	1,420,082	53,088	388,894	978,100	2,270,977	1,765,903	438,102	66,972
1988	1,472,424	59,934	410,269	1,002,221	2,654,569	2,065,858	518,390	70,321
1989	1,654,553	69,511	468,771	1,116,271	2,965,561	2,293,451	594,378	77,732
1990	1,834,240	81,402	550,780	1,202,058	3,632,349	2,806,283	738,178	87,888
1991	1,988,821	94,579	626,974	1,267,268	4,456,882	3,453,829	905,849	97,204
1992	2,102,203	107,073	672,723	1,322,407	5,048,362	3,952,451	988,039	107,872
1993	2,253,105	117,374	778,854	1,356,877	5,778,181	4,522,435	1,135,498	120,248
1994	2,388,044	133,911	933,335	1,320,798	6,903,037	5,402,193	1,373,072	127,772
1995	2,526,198	150,023	1,103,567	1,272,608	8,383,692	6,635,042	1,618,249	130,4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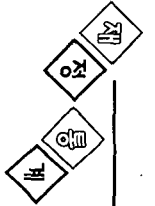
주: 연도별 인원은 소액부징수자를 포함한 각 연도 2기 확정 신고 인원임.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

(단위: 억원, %)

	유형	납 부 세 액			환 급 세 액						실 세 수	
		계	국내분	수입분	계	일반환급	조기환급			세 액	점 유 비	
							소 계	수 출	시설투자			
1983	계	35,095	19,755	15,340	10,106	914	9,192	8,286	906	24,989	100.0	
	법인	28,434	13,094	15,340	8,807	582	8,225	7,621	604	19,627	78.5	
	개인일반	5,395	5,395	-	1,299	332	967	665	302	4,096	16.4	
	특례	1,266	1,266	-	-	-	-	-	-	1,266	5.1	
1984	계	40,668	22,277	18,391	13,287	983	12,304	11,094	1,210	27,381	100.0	
	법인	32,945	14,554	18,391	11,623	620	11,003	10,245	758	21,322	77.9	
	개인일반	6,401	6,401	-	1,664	363	1,301	849	452	4,737	17.3	
	특례	1,322	1,322	-	-	-	-	-	-	1,322	4.8	
1985	계	43,750	24,340	19,410	14,045	763	13,282	11,762	1,520	29,705	100.0	
	법인	35,517	16,107	19,410	12,318	487	11,831	10,815	1,016	23,199	78.1	
	개인일반	6,901	6,901	-	1,727	276	1,451	947	504	5,174	17.4	
	특례	1,332	1,332	-	-	-	-	-	-	1,332	4.5	
1986	계	50,565	29,339	21,226	18,132	708	17,424	15,528	1,896	32,433	100.0	
	법인	41,013	19,787	21,226	15,922	444	15,478	14,140	1,338	25,091	77.4	
	개인일반	8,222	8,222	-	2,210	264	1,946	1,388	558	6,012	18.5	
	특례	1,330	1,330	-	-	-	-	-	-	1,330	4.1	
1987	계	62,854	33,783	29,071	26,715	699	26,016	23,468	2,548	36,139	100.0	
	법인	51,652	22,581	29,071	23,945	422	23,523	21,750	1,773	27,707	76.7	
	개인일반	9,907	9,907	-	2,770	277	2,493	1,718	775	7,137	19.7	
	특례	1,295	1,295	-	-	-	-	-	-	1,295	3.6	
1988	계	74,002	40,696	33,306	29,422	918	28,504	24,805	3,699	44,580	100.0	
	법인	60,516	27,210	33,306	26,250	589	25,661	23,092	2,569	34,266	76.9	
	개인일반	12,121	12,121	-	3,172	329	2,843	1,713	1,130	8,949	20.1	
	특례	1,365	1,365	-	-	-	-	-	-	1,365	3.1	
1989	계	84,015	48,834	35,181	29,063	1,465	27,598	22,306	5,292	54,952	100.0	
	법인	68,342	33,161	35,181	24,766	965	23,801	20,411	3,390	43,576	79.3	
	개인일반	14,185	14,185	-	4,297	500	3,797	1,895	1,902	9,888	18.0	
	특례	1,488	1,488	-	-	-	-	-	-	1,488	2.7	



3. 부가가치세 납부 및 환급세액(계속)

(단위: 억원, %)

	유형	납부세액			환급세액						실세수	
		계	국내분	수입분	계	일반환급	조기환급			세액	점유비	
							소계	수출	시설투자			
1990	계	105,009	61,827	43,182	35,370	1,901	33,469	23,111	10,358	69,639	100.0	
	법인	85,429	42,247	43,182	28,770	1,173	27,597	20,935	6,662	56,659	81.4	
	개인일반	18,022	18,022	-	6,600	728	5,872	2,176	3,696	11,422	16.4	
	특례	1,558	1,558	-	-	-	-	-	-	1,558	2.2	
1991	계	130,034	78,009	52,025	42,320	2,937	39,383	28,108	11,275	87,714	100.0	
	법인	104,878	52,853	52,025	34,267	1,817	32,450	25,778	6,672	70,611	80.5	
	개인일반	23,398	23,398	-	8,053	1,120	6,933	2,330	4,603	15,345	17.5	
	특례	1,758	1,758	-	-	-	-	-	-	1,758	2.0	
1992	계	144,496	90,650	53,846	41,285	3,214	38,071	28,446	9,625	103,211	100.0	
	법인	115,995	62,149	53,846	34,085	2,052	32,033	26,001	6,032	81,910	79.4	
	개인일반	26,505	26,505	-	7,200	1,162	6,038	2,445	3,593	19,305	18.7	
	특례	1,996	1,996	-	-	-	-	-	-	1,996	1.9	
1993	계	160,738	102,984	57,754	41,396	4,336	37,060	27,657	9,403	119,342	100.0	
	법인	129,840	72,086	57,754	33,234	2,751	30,483	25,025	5,458	96,606	80.9	
	개인일반	28,641	28,641	-	8,162	1,585	6,577	2,632	3,945	20,479	17.2	
	특례	2,257	2,257	-	-	-	-	-	-	2,257	1.9	
1994	계	187,923	117,816	70,107	50,879	4,555	46,324	33,453	12,871	137,139	100.0	
	법인	151,650	81,543	70,107	40,695	2,408	38,287	30,528	7,759	110,955	80.9	
	개인일반	34,130	34,130	-	10,184	2,147	8,037	2,925	5,112	23,946	17.5	
	특례	2,143	2,143	-	-	-	-	-	-	2,238	1.6	
1995	계	225,403	136,535	88,868	72,431	6,462	65,969	48,498	17,471	152,972	100.0	
	법인	182,921	94,053	88,868	60,408	4,021	56,387	45,342	11,045	122,513	80.1	
	개인일반	41,090	41,090	-	12,023	2,441	9,582	3,156	6,426	29,067	19.0	
	특례	1,392	1,392	-	-	-	-	-	-	1,392	0.9	

주: 1. 납부, 환급, 실세수액은 신고기준임.

2. 수입분은 법인의 납부세액에 가산함.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

(단위: 명, %, 백만원)

	유형	경정인원			적출과표			추징세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1983. 1	계	102,431	83,821	18,610	772,437	332,228	440,209	77,412	28,166	49,246
	법인	7,827	4,140	2,687	291,683	80,338	211,345	31,654	8,806	22,848
	개인일반	56,790	42,762	14,028	370,023	148,450	221,573	43,445	17,220	26,225
	특례	37,814	36,919	895	110,731	103,440	7,291	2,313	2,140	173
1983. 2	계	94,562	70,829	23,733	999,805	222,516	777,289	98,398	18,878	79,520
	법인	9,231	3,465	5,766	546,909	55,736	491,173	54,398	6,493	48,340
	개인일반	54,635	36,601	17,034	368,936	94,156	274,780	41,702	10,790	30,912
	특례	30,696	29,763	933	83,960	72,624	11,336	1,863	1,595	268
1984. 1	계	101,847	87,642	14,205	788,404	328,642	459,762	78,191	29,316	48,875
	법인	6,197	3,327	2,870	357,918	104,959	252,959	37,725	11,968	25,757
	개인일반	55,791	44,783	11,008	336,769	136,863	199,906	38,391	15,431	22,960
	특례	39,859	39,532	327	93,717	86,820	6,897	2,075	1,917	158
1984. 2	계	72,181	66,774	5,407	487,163	302,752	184,411	53,834	35,542	18,292
	법인	5,089	4,243	846	205,715	69,224	136,491	26,692	14,234	12,458
	개인일반	39,128	34,621	4,507	218,167	172,214	45,953	25,696	19,913	5,783
	특례	27,964	27,910	54	63,281	61,314	1,967	1,446	1,395	51
1985. 1	계	69,747	64,390	5,357	500,346	323,432	176,914	51,394	31,735	19,659
	법인	5,009	3,685	1,324	193,124	87,922	105,202	21,923	10,655	11,268
	개인일반	42,258	38,338	3,920	234,971	166,078	68,893	27,995	19,662	8,333
	특례	22,480	22,367	113	72,251	69,432	2,819	1,486	1,418	68
1985. 2	계	58,361	51,131	7,230	547,804	331,324	216,480	58,478	33,783	24,695
	법인	6,065	4,556	1,509	235,055	115,999	119,056	27,165	13,740	13,425
	개인일반	36,804	31,135	5,669	257,456	162,866	94,590	30,259	19,061	11,198
	특례	15,492	15,440	52	55,293	52,459	2,834	1,054	982	72
1986. 1	계	355,444	349,496	5,948	680,189	442,923	237,266	148,414	120,675	27,739
	법인	10,563	9,172	1,391	184,941	62,160	122,781	39,796	24,940	14,856
	개인일반	147,056	142,932	4,124	417,403	308,396	109,007	99,689	86,930	12,759
	특례	197,825	197,392	433	77,845	72,367	5,478	8,929	8,805	124
1986. 2	계	328,615	322,628	5,987	640,845	325,482	315,363	142,198	107,472	34,726
	법인	10,322	9,117	1,205	248,042	83,839	164,203	42,774	24,492	18,282
	개인일반	123,907	119,479	4,428	334,718	190,312	144,406	91,790	75,520	16,270
	특례	194,392	194,038	354	58,085	51,331	6,754	7,634	7,460	174
1987. 1	계	364,655	358,753	5,902	963,794	599,339	364,455	189,777	149,806	39,971
	법인	11,883	10,611	1,272	305,116	116,687	188,429	55,658	34,755	20,903
	개인일반	163,402	159,062	4,340	526,980	361,786	165,194	124,660	105,922	18,738
	특례	189,370	189,080	290	131,698	120,866	10,832	9,459	9,129	330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계속)

(단위: 명, %, 백만원)

	유형	경 정 인 원			적 출 과 표			추 정 세 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1987. 2	계	342,039	340,185	1,854	495,869	312,882	182,987	155,610	135,259	20,351
	법인	11,040	10,620	420	130,749	23,224	107,525	46,899	34,648	12,251
	개인일반	140,258	138,911	1,347	311,516	238,532	72,984	101,360	93,320	8,040
	특례	190,741	190,654	87	53,604	51,126	2,478	7,351	7,291	60
1988. 1	계	377,595	375,249	2,346	888,569	657,499	231,070	204,526	175,505	29,021
	법인	10,391	9,694	697	342,854	182,650	160,204	63,311	44,365	18,946
	개인일반	158,376	156,734	1,642	471,167	401,215	69,952	132,599	122,545	10,054
	특례	208,828	208,821	7	74,548	73,634	914	8,616	8,595	21
1988. 2	계	371,702	368,361	3,341	811,028	499,438	311,590	199,799	166,016	33,783
	법인	11,138	10,307	831	265,609	130,279	135,330	60,688	42,233	18,455
	개인일반	143,931	141,740	2,191	478,303	311,572	166,731	129,945	114,828	15,117
	특례	216,633	216,314	319	67,116	57,587	9,529	9,166	8,955	211
1989. 1	계	426,843	423,712	3,131	1,081,729	696,211	385,518	237,405	203,882	33,523
	법인	13,271	12,586	685	440,826	255,781	185,045	75,007	56,142	18,865
	개인일반	178,319	176,347	1,972	533,298	343,179	190,119	152,384	137,964	14,420
	특례	235,253	234,779	474	97,605	87,251	10,354	10,014	9,776	238
1989. 2	계	439,287	436,366	2,921	918,215	462,157	456,058	213,241	175,024	38,217
	법인	11,997	11,347	650	326,022	115,458	210,564	56,195	36,962	19,233
	개인일반	157,304	155,586	1,718	521,368	292,963	228,405	146,696	128,159	18,537
	특례	269,986	269,433	553	70,825	53,736	17,089	10,350	9,903	447
1990. 1	계	453,308	451,139	2,169	1,060,990	620,977	440,013	265,000	227,723	37,277
	법인	12,955	12,497	458	389,245	185,911	203,334	71,503	55,154	16,349
	개인일반	166,020	164,862	1,158	574,055	357,798	216,257	181,141	160,691	20,450
	특례	274,383	273,830	553	97,690	77,268	20,422	12,356	11,878	478
1990. 2	계	345,362	342,954	2,408	1,007,145	591,098	416,047	257,259	221,204	36,055
	법인	11,988	11,506	482	327,525	160,055	167,470	68,846	52,795	16,051
	개인일반	146,672	145,521	1,151	562,447	339,454	222,993	176,442	157,005	19,437
	특례	187,152	186,377	775	117,173	91,589	25,584	11,971	11,404	567
1991. 1	계	387,190	384,878	2,312	1,079,471	610,015	469,456	247,020	208,066	38,954
	법인	11,199	10,893	306	340,418	164,878	175,540	85,973	69,283	16,690
	개인일반	151,165	150,202	963	551,564	322,273	229,291	196,310	175,385	20,925
	특례	224,826	223,783	1,043	187,489	122,864	64,625	14,737	13,398	1,339
1991. 2	계	425,659	421,915	3,744	1,289,410	709,087	580,323	364,213	311,261	52,952
	법인	14,232	13,522	710	474,226	213,871	260,355	122,690	98,367	24,323
	개인일반	158,865	156,867	1,998	659,383	389,545	269,838	227,244	199,736	27,508
	특례	252,562	251,526	1,036	155,801	105,671	50,130	14,279	13,158	1,121

4.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 경정현황(계속)

(단위: 명, %, 백만원)

	유형	경 정 인 원			적 출 과 표			추 징 세 액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계	당연	선별
1992. 1	계	473,355	470,136	3,219	1,574,512	1,032,727	541,785	497,406	447,623	49,783
	법인	15,943	15,441	502	505,964	277,711	228,253	179,633	157,203	22,430
	개인일반	182,774	181,245	1,529	796,707	545,834	250,873	299,273	273,697	25,576
	특례	274,638	273,450	1,188	271,841	209,182	62,659	18,500	16,723	1,777
1992. 2	계	544,072	540,035	4,037	2,306,783	1,496,645	810,138	545,169	491,072	54,097
	법인	17,203	16,549	654	1,176,570	729,026	447,544	202,939	178,938	24,001
	개인일반	174,115	171,852	2,263	812,535	506,604	305,931	318,936	290,090	28,846
	특례	352,754	351,634	1,120	317,678	261,015	56,663	23,294	22,044	1,250
1993. 1	계	599,783	593,258	6,525	3,459,653	2,430,766	1,028,887	616,781	535,806	80,975
	법인	19,464	18,781	683	1,657,542	1,090,500	567,042	248,932	202,461	46,471
	개인일반	208,527	206,074	2,453	1,190,586	852,074	338,512	339,742	307,976	31,766
	특례	371,792	368,403	3,389	672,525	549,192	123,333	28,152	25,369	2,783
1993. 2	계	631,059	621,160	9,899	3,175,528	1,702,686	1,472,842	668,393	524,760	143,633
	법인	22,508	20,864	1,644	1,168,813	445,654	723,159	266,743	194,914	71,829
	개인일반	229,578	223,861	5,717	1,466,240	813,869	652,371	374,659	305,042	69,617
	특례	378,973	376,435	2,538	540,975	443,663	97,312	26,991	24,804	2,187
1994. 1	계	510,224	502,837	7,387	2,894,434	1,364,202	1,530,232	636,701	487,061	149,640
	법인	21,750	20,179	1,571	1,290,673	454,443	836,230	272,924	193,351	79,573
	개인일반	186,793	181,580	5,213	1,206,547	553,285	653,262	339,104	269,937	69,167
	특례	301,672	301,078	594	397,214	356,474	40,740	24,673	23,773	900
1994. 2	계	525,952	518,594	7,358	3,171,147	1,408,485	1,762,662	669,335	512,942	156,393
	법인	24,071	22,563	1,508	1,359,441	424,410	935,031	277,332	203,442	73,890
	개인일반	211,736	206,148	5,588	1,351,112	538,097	813,015	362,816	280,650	82,166
	특례	290,145	289,883	262	460,594	445,978	14,616	29,187	28,850	337
1995. 1	계	485,897	481,642	4,255	3,981,436	2,520,895	1,460,451	899,521	774,865	124,656
	법인	25,565	24,613	952	1,285,817	585,954	699,863	352,723	299,048	53,675
	개인일반	223,193	220,166	3,027	1,950,332	1,229,235	721,097	513,424	443,318	70,106
	특례	237,139	236,863	276	745,287	705,706	39,581	33,374	32,499	875
1995. 2	계	518,052	513,438	4,614	3,970,448	2,351,898	1,618,550	956,055	821,763	134,292
	법인	32,107	31,166	941	1,552,000	693,584	858,416	406,336	341,124	65,212
	개인일반	313,813	310,507	3,306	1,677,056	952,437	724,619	525,852	457,591	68,261
	특례	172,132	171,765	367	741,392	705,877	35,515	23,867	23,048	819

주: 1. 특례(과세특례)인원에는 소액부징수자가 제외되었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5. 업태별 부가가치율

(단위: %)

	계	농·수 임·어업	광업	제조	전기·가스 ·수도	도매	소매	부동산 매매	건설	음식	숙박	운수·창고 ·통신	부동산 임대	대인·중개 주선·위탁 도급	기타
1983. 1(기)	29.7	74.7	36.1	28.0	15.3	11.6	10.6	-	76.7	58.8	51.8	61.3	36.8	50.2	49.7
1983. 2	30.0	67.4	35.0	26.7	20.3	11.5	7.9	-	69.3	56.3	47.4	62.6	7.7	54.4	48.7
1984. 1	27.8	56.9	19.4	19.8	32.5	22.3	13.2	-	65.9	57.7	53.5	63.2	30.3	52.8	50.7
1984. 2	29.1	69.0	37.6	20.4	32.0	25.0	13.4	-	64.9	56.4	49.7	59.7	8.6	55.0	45.9
1985. 1	27.3	62.1	14.7	19.2	40.3	21.3	16.1	-	66.3	54.7	55.7	64.7	42.0	50.5	50.3
1985. 2	29.3	56.8	43.8	22.6	36.1	22.7	14.5	42.4	61.8	54.2	37.2	60.1	31.1	50.1	47.7
1986. 1	27.0	55.3	43.1	21.8	48.5	20.6	16.9	44.8	54.4	54.2	44.1	60.9	40.9	49.3	50.1
1986. 2	28.4	50.2	45.7	22.5	51.1	22.4	15.5	5.9	57.9	52.5	21.4	59.7	22.3	53.8	45.8
1987. 1	25.2	55.0	43.2	19.6	54.6	20.8	16.6	24.9	47.2	52.8	36.2	63.9	47.0	55.7	49.4
1987. 2	24.4	44.8	42.7	17.3	49.3	21.9	15.7	21.9	51.6	48.5	16.4	63.6	26.3	50.4	44.4
1988. 1	23.2	51.4	40.4	18.1	51.4	20.2	15.8	30.2	38.7	49.6	6.7	64.3	39.6	56.6	41.1
1988. 2	25.8	35.6	41.2	21.4	51.4	20.4	14.5	31.4	47.9	49.1	22.1	62.8	25.7	50.9	44.8
1989. 1	23.7	51.1	36.2	18.6	54.0	20.8	15.8	35.7	36.0	49.7	46.3	62.4	42.5	48.0	46.4
1989. 2	24.8	33.1	37.8	19.8	39.0	22.1	14.5	22.2	42.9	48.6	44.6	61.0	23.0	44.6	43.1
1990. 1	22.8	43.1	32.7	18.5	44.7	21.2	15.1	7.2	30.1	49.1	45.3	59.4	28.6	49.2	39.7
1990. 2	23.4	21.6	26.7	18.9	28.8	21.7	13.7	-	41.9	50.0	44.3	56.5	11.8	44.2	38.0
1991. 1	21.3	38.0	31.1	16.7	31.6	20.6	13.6	-	27.8	41.0	52.8	61.7	18.4	45.5	37.2
1991. 2	24.0	42.8	28.5	20.4	20.6	19.3	13.4	-	39.6	49.1	52.9	59.0	7.2	42.3	36.6
1992. 1	23.5	48.9	12.9	20.9	16.0	20.1	12.5	-	32.3	49.2	60.6	60.8	23.2	46.5	35.3
1992. 2	25.8	50.0	30.6	22.4	10.8	20.2	6.8	-	41.6	48.6	53.0	58.6	18.9	25.5	39.1
1993. 1	24.9	23.2	9.3	20.9	18.8	19.5	14.3	-	32.7	47.6	54.1	60.3	31.7	36.1	40.1
1993. 2	26.4	58.4	3.2	23.4	26.6	19.9	15.3	-	42.3	50.2	50.8	62.8	12.0	41.9	43.5
1994. 1	24.3	28.1	11.2	21.7	30.4	19.7	16.2	13.1	30.4	54.8	59.0	60.0	25.2	49.0	42.3
1994. 2	25.1	44.9	18.7	23.2	16.3	19.8	13.3	-	39.8	52.3	49.9	45.5	19.1	48.6	34.7
1995. 1	22.6	25.8	19.3	19.0	21.6	19.2	13.5	-	32.7	54.3	49.4	59.3	29.5	47.7	39.1
1995. 2	21.0	33.9	19.3	14.5	7.3	19.9	12.6	-	37.9	52.9	49.8	60.5	25.8	40.8	36.3

주: 법인 및 개인일반과세자를 기준으로 작성하였음.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6.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업태별 인원(개인)

(단위: 명)

	합계	농업·임업·어업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	소매업
1987	746,419	51,339	2,101	4,906	4,699	25,852	415,459
1988	755,144	51,367	1,676	5,242	4,741	25,026	430,048
1989	777,720	53,606	1,681	5,689	4,988	24,410	418,659
1990	838,922	55,346	1,596	6,197	6,038	26,623	424,421
1991	881,048	59,044	1,546	6,489	7,566	29,782	414,717
1992	990,379	60,951	1,708	7,142	8,418	32,004	405,937
1993	1,080,462	64,130	1,629	7,735	9,343	36,036	420,300
1994	1,121,705	65,790	1,588	8,445	10,664	39,912	416,332
1995	1,265,931	65,275	1,368	8,384	11,298	44,778	425,581

	운수창고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기타서비스업	부동산임대업	기타
1987	190	21,733	19,093	192,134	1,865	7,048
1988	181	24,699	20,227	180,014	2,645	9,278
1989	231	27,522	21,765	205,321	2,792	11,056
1990	234	39,457	23,539	238,891	2,773	13,807
1991	300	45,034	25,908	270,654	2,770	17,238
1992	302	48,133	27,762	371,842	3,167	23,013
1993	317	53,000	29,433	428,516	3,524	26,499
1994	335	54,658	31,568	461,350	3,843	27,220
1995	285	56,869	33,225	580,610	4,694	33,564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7.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이의신청분

(단위: 건, 백만원)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77	549	-	549	353	63	219	71	490	196
1978	3,410	196	3,214	3,390	707	1,987	696	625	20
1979	1,169	20	1,149	1,153	310	554	289	299	16
1980	947	16	931	885	303	412	170	183	62
1981	1,284	62	1,222	1,125	484	480	161	367	159
1982	1,555	159	1,396	1,440	589	643	208	721	115
1983	1,450	115	1,335	1,351	503	669	179	1,152	99
1984	1,145	99	1,046	1,040	437	491	112	521	105
1985	1,004	105	899	933	428	450	55	891	71
1986	924	71	853	864	347	466	51	314	60
1987	516	60	456	511	210	275	26	398	5
1988	280	5	275	268	89	161	18	374	12
1989	270	12	258	264	80	157	27	172	6
1990	292	6	286	275	76	172	27	197	17
1991	282	17	265	272	96	155	21	155	10
1992	276	10	266	265	84	163	18	332	11
1993	515	11	504	487	127	314	46	1,089	28
1994	362	28	334	347	27	285	35	1,128	15
1995	640	15	625	624	105	426	93	1,993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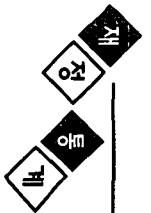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8. 부가가치세 국세심사 사무처리 : 심사청구분

(단위: 건, 백만원)

	요처리건수			처리건수				감세액	이월건수
	계	전년이월	당년접수	계	각하	기각	경정		
1977	117	-	117	56	4	38	14	94	61
1978	1,976	61	1,915	1,911	93	1,449	369	1,213	65
1979	706	97	609	642	19	444	179	473	64
1980	546	64	482	470	56	293	121	648	76
1981	734	76	658	580	62	369	149	1,041	154
1982	1,175	154	1,021	999	109	647	243	5,721	176
1983	1,204	176	1,028	1,122	101	859	162	2,334	82
1984	819	82	737	737	81	584	72	1,280	82
1985	699	82	617	641	67	535	39	1,213	58
1986	850	58	792	748	86	624	38	378	102
1987	728	102	626	674	45	587	42	335	54
1988	499	54	445	449	31	389	29	480	50
1989	542	50	492	478	38	412	28	889	64
1990	529	64	465	470	32	410	28	301	59
1991	744	59	685	654	28	595	31	865	90
1992	714	90	624	648	37	583	28	770	66
1993	955	66	889	854	64	730	60	1,809	101
1994	1,042	101	941	940	61	751	128	5,019	102
1995	1,099	102	997	1,004	64	854	86	2,408	95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9. 부가가치세 소송사건

(단위: 건)

	처리대상건수			당년도종결건수				계류건수		
	계	전년도이월	당년도제기	계	국승	국패	기타	계	고등법원	대법원
1978	14	-	14	-	-	-	-	14	-	-
1979	72	14	58	33	10	13	10	39	-	-
1980	80	40	40	35	13	12	10	45	-	-
1981	116	45	71	45	19	13	13	71	-	-
1982	146	71	75	37	19	14	4	109	-	-
1983	272	109	163	83	30	35	18	189	-	-
1984	374	189	185	135	56	48	31	239	-	-
1985	468	239	229	218	55	135	28	250	-	-
1986	425	250	175	132	41	66	25	293	-	-
1987	574	293	281	251	89	122	40	323	192	131
1988	466	323	143	198	31	128	39	268	131	137
1989	397	268	129	188	86	102	-	209	139	70
1990	330	209	121	117	80	37	-	213	159	54
1991	350	213	137	117	82	35	-	233	177	56
1992	397	201	196	150	104	46	-	247	178	69
1993	429	248	181	212	142	70	-	217	169	48
1994	429	217	212	162	124	38	-	267	215	52
1995	480	267	213	194	165	29	-	286	216	70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10. 부가가치세 감사실적

(단위: 천, 백만원)

	건수	세액
1977	2	14
1978	2,027	634
1979	2,595	1,030
1980	2,232	1,706
1981	2,213	2,434
1982	2,780	4,347
1983	2,109	3,681
1984	3,257	3,794
1985	2,005	4,282
1986	2,513	5,997
1987	1,838	8,943
1988	2,732	22,591
1989	2,874	14,359
1990	1,742	15,554
1991	1,476	27,328
1992	1,455	20,589
1993	1,856	37,902
1994	1,896	23,826
1995	2,605	43,466

자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